#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





# 연 구 진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연구 요약

#### 1. 연구의 배경

- 감소 추세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대는 생산 가능 인 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노령자 부양률, elderly dependency ratio, DR)은 2013년 23.53%에서 2050년 46%로 증가함(OECD, 2004; Marchiori, 2011)
- 감소한 출산율은 장기적인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의 지속적인 감소를 유발시킴으로써, 양적인 인구감소를 통한 지방의 소멸 과 함께 질적인 지방의 소멸 역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소멸가능한 지방에 대한 예측을 통해 저출산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생활여건개선, 인구유입, 생산성증대, 교육증대 등 상쇄 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따라서, 향후 예측가능한 소멸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기준의 파악이 필요함

## 2. 연구의 목적 및 대상

-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구분 기준에 대한 사전적인 선행 연구를 파악하고, 지정기준 설정안 제시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더불어 선정된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안별 인구감소지역을 파악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함
-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세종시, 서귀포시, 제주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

# 3. 지표의 구성 배경

- 1) 기초 대안 설정
  - O 인구감소지역 추출을 위한 대안은 4개로 구성
  - 1차적으로 자치구의 유무에 따라 지역을 구분한 후 자치구를 제외하고 시 군을 대상으로 대안 설정
  - 2차적으로 인구 및 소득재정을 고려하여 지역에 반영하여 대안 설정
  - 분석을 위한 기준은 2015년 기준 과거 10년간의 자료 변화를 반영
  - 모든 지표는 증가율을 기초로 활용하며, 이중 출생, 사망, 유입, 유출에 대한 인구변화는 연평균을 적용
  - O 가중치는 동등 가중치를 적용
  - 가중치설정으로 인한 자위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등 가중치를 전제로 분석
  - 인구감소의 지표는 인구변화를 기본으로 하며, 1인당 소득세, 재정자립도를 통해 보정
  - 과거 10년치 증가율을 적용
  - 시군별 평균과 부(-)적 인구변화를 적용
  - 출생자수, 전입인구, 15세미만인구, 경제인구비율, 인당소득세, 20-39젊은여 성인구비율은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하향 지역일수록 인구감소지역에 근접 한 것을 의미
  - 사망자수, 전출인구, 65세이상인구는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상향 지역일수록 인구감소지역에 근접한 것을 의미
  - 인구변화는 부(-)적 성장을 나타내는 지역일수록 인구감소지역에 근접한 것을 의미

# 2) 추가 대안 설정

- O 인구 및 소득재정으로 구분
- 인구변화율은 지역의 총량적 인구증감을 제시

- 소득재정은 지역의 경제적 능력을 제시
- 2015년 기준 과거 15년 자료 증감, 3년 평균을 활용
- 과거의 지표 흐름을 증가율로 반영
- 청주, 청원, 마산, 창원, 진주는 통합기준을 적용하여 반영
- 세종시,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분석에서 제외
- 과거 낙후지역의 선정 방식은 지수환산점수를 종합하여 산출된 결과치를 평균이하인 지역 등의 방식을 고려하여 낙후지역을 산정
- 성장촉진지역 지정 기준
- 1기 선정: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재정력지수, 소득세할주민세를 적용한 낙후도 상위 30% 이내 70개 선정
- 2기 선정: 낙후도+사업집행상황, 사업성과, 기대가능성 종합평가 후 70개 지역 선정
  - 반면,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수환산점수의 도출이 아닌 개별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분석을 위한 지표 변화는 최장 기간 변화 및 최단기간 평균을 종합 하여 고려
  - 인구증감률은 15년간 최장기간 증감변화를 적용
- ※ 1996년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2000년~2015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 고령화율, 생산가능인구비율, 젊은여성인구비율, 소득 및 재정은 3년 평균을 적용
- ※ 고령화율은 고령사회(14%)가 전체의 72%로, 초고령화율(20%, 전체의 46%)적용
- ※ 인구이동 등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최근 3년 변화율을 적용
  - 인구감소의 지표는 인구부문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인당 주민세, 재정자립 도를 통해 보정

- 5안 : 인구부문 + 소득·재정부문
- 인구감소위험지역
- (충족) 인구감소율 5% 이상
- (충족) 노령인구비율 20% 이상,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68.1%), 젊은여성 인구비율 하위 50%(11.8%), 인당 주민세 하위 50%(105.4천원), 재정자 립도 하위 50%(22.3%)
- 인구감소우려지역
- (충족) 인구감소율 5% 이상
- (1개 이상 충족) 노령인구비율 20% 이상,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68.1%), 젊은여성인구비율 하위 50%(11.8%), 인당 주민세 하위 50% (105.4천원), 재정자립도 하위 50%(22.3%)
  - 6안 : 인구부문
- 인구감소위험지역
- (충족) 인구감소율 5% 이상
- (충족) 노령인구비율 20% 이상,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68.1%), 젊은여성 인구비율 하위 50%(11.8%)
- 인구감소우려지역
- (충족) 인구감소율 5% 이상
- (1개 이상 충족) 노령인구비율 20% 이상,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68.1%), 젊은여성인구비율 하위 50%(11.8%)

# 4. 대안별 시뮬레이션 결과

# 1) 1안 분석결과

<표 1> 인구감소지역 구분(대안: 전체 변수 고려)

구분	지역
인구감소우려 (19)	강원 삼척시, 강원 홍천군, 강원 영월군, 강원 고성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진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곡성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천시, 경북 의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도군, 경북 예천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인구감소위험 (40)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제천시, 충북 옥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충남 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여수시, 전남 구례군, 전남 고흥군, 전남 보성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함평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주시,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덕군, 경북 울진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 2) 2안 분석결과

<표 2> 인구감소지역 구분(대안: 인구변화)

구분	지역
인구감소우려 (35)	경기 의정부시, 경기 부천시, 경기 시흥시, 경기 이천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홍천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옥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장수군, 전북 고창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전남 담양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해남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송군, 경북 고령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진군,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남해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인구감소위험 (28)	경기 안양시, 경기 구리시, 강원 강릉시, 강원 태백시,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남 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북 무주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함평군, 전남 영광군, 경북 영주시, 경북 군위군, 경북 영덕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 3) 3안 분석결과

<표 3> 인구감소지역 구분(대안: 인구변화+1인당소득세)

구분	지역
인구감소우려 (34)	인천 강화군, 경기 부천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시흥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가평군, 강원 삼척시,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보은군, 충남 태안군, 전북 전주시, 전북 진안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순천시, 전남 담양군, 전남 곡성군, 전남 장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릉군, 경남 사천시,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인구감소위험 (51)	경기 의정부시, 경기 안양시, 경기 구리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홍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제천시, 충북 옥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충남 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구례군, 전남 고흥군, 보성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함평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주시,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덕군, 경북 울진군, 경남 통영시, 경남 의령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 4) 4안 분석결과

<표 4> 인구감소지역 구분(대안: 인구변화+재정자립도)

구분	지역
인구감소우려 (36)	경기 성남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시흥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의왕시, 경기 이천시, 경기 안성시, 강원 홍천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전주시, 전북 장수군, 전북 고창군, 전남 순천시, 전남 담양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해남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구미시, 경북 영천시, 경북 의성군, 경북 고령군,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인구감소위험 (38)	경기 의정부시, 경기 안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포천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남 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구분	지역
	전북 무주군, 전북 부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함평군, 전남 영광군, 경북 영주시,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진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 5) 5안 분석결과

- 인구감소 우려 및 위험지역은 전체 226개 시군구(제주시 및 서귀포시 제외) 중 79(20/59)개로 도출
- 강원(7/7), 경북(1/13), 전남(1/11)이 전체 인구감소 지역 중 44.3%를 차지하며, 인구감소위험지역의 52.5% 차지
- 반면, 대전시와 울산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5> 인구감소지역(5안)

7 Н	O 크리카	이렇게서	소	계	첫나게	성촉중복	
구분	우려지역	위험지역	우려	위험	합계	우려	위험
서울	노원구		1	0	1	0	0
부산	영도구, 사하구		2	0	2	0	0
대구	서구, 남구		2	0	2	0	0
대전			0	0	0	0	0
광주	북구		1	0	1	0	0
인천	강화군		1	0	1	0	0
울산			0	0	0	0	0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	1	1	2	0	0
강원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성), 횡성군(성),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릉시, 삼척시(성), 영월군(성), 평창군(성),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성)	7	7	14	2	4
충북	증평군	제천시, 보은군(성), 옥천군(성), 영동군(성), 괴산군(성)	1	5	6	0	4
충남	홍성군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성), 서천군(성), 청양군(성), 예산군(성)	1	6	7	0	4

구분	० २१ गोल	이처기여		소계		성촉중복	
干证	1년 우려지역 위험지역			위험	합계	우려	위험
경북	울릉군(성)	안동시, 영주시(성), 상주시(성), 문경시(성), 군위군(성), 의성군(성), 청송군(성), 영양군(성), 영덕군(성), 청도군(성), 성주군(성), 예천군(성), 봉화군(성)	1	13	14	1	12
경남	통영시	밀양시(성), 의령군(성), 남해군(성), 하동군(성), 산청군(성), 함양군(성), 거창군(성), 합천군(성)	1	8	9	0	8
전북		정읍시(성), 남원시(성), 진안군(성), 장수군(성), 임실군(성), 순창군(성), 고창군(성), 부안군(성)	0	8	8	0	8
전남	무안군	담양군(성), 구례군(성), 고흥군(성), 보성군(성), 장흥군(성), 강진군(성), 해남군(성), 함평군(성), 완도군(성), 진도군(성), 신안군(성)	1	11	12	0	11
제주			0	0	0	0	0
		계	20	59	79	3	51

# 6) 6안 분석결과

-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제외한 226개 시군구 중 소득·재정 부문을 제외한 인구부문만 고려
- 인구부문은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젊은여성인구비율로 구성
- 인구감소우려지역은 인구감소율 감소 5% 이하를 충족하며, 노령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젊은여성인구비율 중 1~2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 인구감소위험지역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 <표 6> 인구감소지역(6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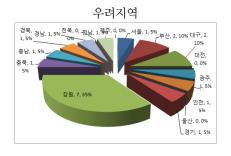
			소계 기 기 성		성촉	중복	
구분	우려지역	위험지역		위험	합계	우려	위험
서울			0	0	0	0	0
부산	중구, 서구, 영도구	동구	3	1	4	0	0
대구	중구, 남구		2	0	2	0	0
대전			0	0	0	0	0
광주	동구		1	0	1	0	0
인천	동구		1	0	1	0	0
울산			0	0	0	0	0
경기		연천군	0	1	1	0	0
강원	동해시, 태백시(성), 속초시	강릉시, 삼척시(성), 영월군(성), 평창군(성), 정선군,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성)	3	8	11	1	4
충북		제천시, 보은군(성), 옥천군(성), 영동군(성), 괴산군(성), 단양군(성)	0	6	6	0	5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성), 부여군(성), 서천군(성), 청양군(성), 예산군(성)	0	8	8	0	5
경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성), 영천시(성), 상주시(성), 문경시(성), 군위군(성), 의성군(성), 청송군(성), 영양군(성), 영덕군(성), 청도군(성), 성주군(성), 예천군(성), 봉화군(성), 울진군(성)	0	17	17	0	14
경남		밀양시(성), 의령군(성), 창녕군(성), 고성군(성), 남해군(성), 하동군(성), 산청군(성), 함양군(성), 거창군(성), 합천군(성)	0	10	10	0	10
전북	익산시	정읍시(성), 남원시(성), 김제시(성), 진안군(성), 무주군(성), 장수군(성), 임실군(성), 순창군(성), 고창군(성), 부안군(성)	1	10	11	0	10
전남	여수시	나주시(성), 담양군(성), 곡성군(성), 구례군(성), 고흥군(성), 보성군(성),	1	17	18	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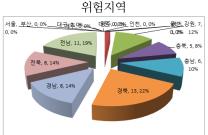
구분	O 크리카(A	위험지역 -		소계		성촉중복	
干世	우려지역			위험	합계	우려	위험
		화순군(성), 장흥군(성), 강진군(성), 해남군(성), 영암군, 함평군(성), 영광군(성), 장성군(성), 완도군(성), 진도군(성), 신안군(성)					
제주			0	0	0	0	0
		12	78	90	1	64	

# 5. 인구감소지역 특성

○ 인구부문 및 소득·재정부문을 적용한 결과 인구감소 우려 및 위험 지역은 전체 226개 시군구(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외) 중 79개로 34.9%의 시 군구가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7> 시도별 인구감소지역





- 인구부문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의 도출 결과 전체 226개의 시군구 중 90 개의 시군구가 도출됨
- 인구감소우려지역은 총 12개로 부산(3), 강원(3), 대구(2) 순으로 나타나 자 치구의 인구감소 성향이 반영됨
- 인구감소위험지역은 총 78개로 경북(17), 전북(10), 전남(10) 순으로 3개 도 가 인구감소위험지역 전체의 47.4%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우려지역은 인구변화를 제외한 경제인구비율, 고령화율, 젊은여성 인구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에서 인구감소위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구감소우려지역의 인구변화는 인구감소위험지역보다 다소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인구변화 (%)	경제인구 비율 (%)	고령화율 (%)	젊은여성 인구비율 (%)	인당주민세 (천원)	재정자립도 (%)
İ	우려지역	-14.62	68.43	20.14	11.64	195.30	22.30
	위험지역	-14.37	58.23	32.03	8.01	92.02	14.51

<표 8> 인구부문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 인구부문과 소득·재정부문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의 도출 결과 전체 226개 의 시군구 중 79개의 시군구가 도출됨
- 인구감소우려지역은 총 20개로 강원(7), 부산(2), 대구(2) 순으로 나타나 자 치구의 인구감소 성향이 반영됨과 동시에 소득·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추가됨
- 인구감소위험지역은 총 59개로 경북(13), 전남(11), 경남(8), 전북(8) 순으로 4개 도가 인구감소위험지역 전체의 67.8%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우려지역은 모든 지표(인구변화, 경제인구비율, 고령화율, 젊은여성 인구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에서 인구감소위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인구부문, 소득·재정부문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구분	인구변화 (%)	경제인구 비율 (%)	고령화율 (%)	젊은여성 인구비율 (%)	인당주민세 (천원)	재정자립도 (%)
우려지역	-1.58	67.14	20.60	10.88	73.33	17.01
위험지역	-14.35	57.52	33.00	7.77	67.53	13.50

- 인구부문만 고려한 인구감소지역의 선정과 인구부문 외에 추가적으로 소 득·재정부문을 모두 고려한 인구감소지역을 비교할 경우 소득·재정부문의 고려는 인구감소우려지역에서 인구변화율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짐
- 인구감소우려지역의 경우 소득·재정부문을 고려함으로써 인구변화율이 다소 감소하여 인구부문만을 고려한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경제인구비율, 고령화율, 젊은여성인구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는 보다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구감소위험지역은 소득·재정부문을 고려한 경우에도 인구변화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인구변화 (%)	경제인구 비율 (%)	고령화율 (%)	젊은여성 인구비율 (%)	인당주민세 (천원)	재정자립도 (%)
우려지역	13.04	-1.29	0.46	-0.76	-121.97	-5.29
위험지역	0.02	-0.72	0.97	-0.25	-24.49	-1.01

<표 10> 인구감소지역간 특성 비교

# 6. 非인구감소지역과의 비교

- 인구부문 외에 소득·재정부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과 非인 구감소지역을 지역의 평균과 비교할 경우 경제인구비율, 젊은여성인구비율 은 인구부문만을 고려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는 전체 지역 평균에 못미치는 감소성향이 큰 것 으로 나타남
-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인당주민세는 非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약 36%로 소득부문에 대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구부문만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과 추가적으로 소득·재정을 고려한 경우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당주민세 및 재정자립도는 소득·재정부문으로

필터링을 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소득·재정상태가 보다 열악한 정도를 의미함

<丑 11> ま	<b>투인구감소지역과의</b>	특성 비교(5안:	인구.	소득·재정부문	고려)
----------	------------------	-----------	-----	---------	-----

구분	인구변화 (%)	경제인구 비율 (%)	고령화 <u>율</u> (%)	젊은여성 인구비율 (%)	인당주민세 (천원)	재정자립도 (%)
인구감소	-11.12	59.95	29.86	8.56	68.99	14.39
非인구감소	15.43	69.72	16.66	12.78	259.62	32.60
평균	6.2	66.3	21.2	11.3	192.4	26.3

- 인구감소지역은 非인구감소지역을 지역의 평균과 비교할 경우 경제인구비율, 젊은여성인구비율은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인구변화,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큰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지표는 인당 주민세로 인구감소지역의 인당주민세는 평균 대비 약 55%인데 반해, 非인 구감소지역의 인당주민세는 평균 대비 약 130%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12> 非인구감소지역과의 특성 비교(6안: 인구부문 고려)

구분	인구변화 (%)	경제인구 비율 (%)	고령화율 (%)	젊은여성 인구비율 (%)	인당주민세 (천원)	재정자립도 (%)
인구감소	-14.41	59.59	30.45	8.50	105.79	15.55
非인구감소	19.75	70.75	15.20	13.16	250.69	33.31
평균	6.2	66.3	21.2	11.3	192.4	26.3

#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5
2. 연구의 방법5
3. 연구의 수행체계 7
제2장 현황 및 이론적 검토 9
제1절 인구현황11
제2절 인구감소의 이론적 고찰 20
제3절 기존 지역구분 방안 28
1. 지역구분 방안 28
2. 기존 지역분류의 한계 32
제3장 국내외 사례 35
제1절 국내사례
1.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연구(2015) 37
2.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2012) 3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지역발전지수에 기반한 지역간 발전격차
분석(2006)42
4.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과 활용(2011)45
5.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2013)47
6.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쇠퇴
특성 분석(2015)48
7.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향(2012)50
8. 도시쇠퇴 수준 및 특성 유형화(2010) 53
9. 도시재생 지역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연구(2015)54
10.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2015)55
11.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2016) 58
12. 지방소멸 가능성에 따른 지역공공서비스
개선방안 :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2016)
60
제2절 해외사례62
1. 일본, 지방소멸론(2016)62



#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



7
9
9
1
3
7
7
80
3
86
9
93
7
9
9
1
)3
)3
)4
6
5

# 표 차 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2-l> 지역별 인구 변화······12
<표 2-2> 광역시와 광역도의 연령별 장래인구 추이 … 13
<표 2-3> 기대수명 변화 추이15
<표 2-4> 지역별 15-64, 65+ 인구 추계16
<표 2-5> 연령별, 평균연령별, 지역별 인구비 17
<표 2-6> 지역별 유년·노인·노인-유년 비율 ····· 19
<표 2-7>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측면의 지역구분 29
<표 2-8> 지구지정 분류의 기준29
<표 2-9> 신활력지역 지표 32
<표 3-1> 지표의 선정(안) 38
<표 3-2> 지표의 선정(안)41
<표 3-3> 지표의 선정(안)43
<표 3-4> 지표의 선정(안)45
<표 3-5> 지표의 선정(안)47
<표 3-6> 대표지표 변환
<표 3-7> 지표의 선정(안)49
<표 3-8> 지표의 선정(안) 50
<표 3-9> 주요 선행연구의 지역쇠퇴지표 52
<표 3-10> 지표의 선정(안)53
<표 3-11> 지표의 선정(안)54
<표 3-12> 지표의 선정(안) 56
<표 3-13> 주거 안정성 현황 관련 검토 지표
(1990~2010) 58
<표 3-14> 지자체 소멸위험지표 59
<표 3-15> 광주전남 소멸 예상 지역 선정 조건 61
<표 4-l> 발전에 대한 지표 정의······70
<표 4-2> 발전정도개념의 종합························70



#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



<표 4-3> 지표구성(안)	. 72
<표 4-4> 지표구성 선정사유	. 72
<표 4-5> 대안별 지표구성	· 74
<표 4-6> 지정기준	
<표 4-7> 인구감소지역 적용 기준	
(대안. 전체 변수 고려)	. 78
<표 4-8> 인구감소지역 구분(대안. 전체 변수 고려)…	· 78
<표 4-9> 인구감소지역별 특성	
(대안. 전체 변수 고려)	· 79
<표 4-10> 인구감소지역 적용 기준(대안: 인구변화)…	· 81
<표 4-11> 인구감소지역 구분(대안: 인구변화)	· 81
<표 4-12> 인구감소지역별 특성(대안: 인구변화)	. 82
<표 4-13> 인구감소지역 적용 기준	
(대안. 인구변화+1인당소득세)	· 84
<표 4-14> 인구감소지역 구분	
(대안: 인구변화+1인당소득세)	· 84
<표 4-15> 인구감소지역별 특성	
(대안: 인구변화+1인당주민세)	· 85
<표 4-16> 인구감소지역 적용 기준	
(대안: 인구변화+재정자립도)	. 87
<표 4-17> 인구감소지역 구분	07
(대안: 인구변화+재정자립도)	. 8/
<표 4-18> 인구감소지역별 특성	. 00
(대안: 인구변화+재정자립도) ····································	
<표 4-19> 적용기준 ····································	
<표 4-20> 인구감소지역(5안) ····································	
<표 4-21> 낙후지역과의 중복지역······	
<표 4-22> 적용기준	. 9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4-23> 인구감소지역(6안)94
<표 <b>4-24</b> > 인구감소지역(6안) ····································
<표 5-l> 시도별 인구감소지역 ······ 99
<표 5-2> 인구부문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100
<표 5-3> 인구부문, 소득·재정부문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100
<표 5-4> 인구감소지역간 특성 비교······101
<표 5-5> <b>非</b> 인구감소지역과의 특성 비교
(6안. 인구부문 고려)
<표 5-6> <b>非</b> 인구감소지역과의 특성 비교
(5안: 인구, 소득·재정부문 고려) ······ 102
<표 5-7> 인구감소지역별 생활여건 격차 분석결과 … 108
<표 5-8> 인구감소지역 및 일반지역간 생활여건 격차
분석결과111



#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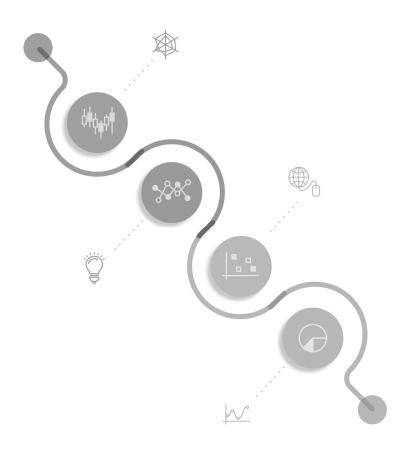
# 그 림 차 례



<그림	1-1>	수행체계
<그림	2-1>	오지30
<그림	2-2>	개발대상도서
<그림	2-3>	접경지역 3
<그림	2-4>	개발촉진지구 3
<그림	3-1>	고령화 대응지수 산출 절차4
<그림	3-2>	지역발전지수 지표체계4
<그림	3-3>	복합쇠퇴지수의 개념 44
<기리	4-1>	이구간소지역(아) 9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감소 추세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대<sup>1)2)</sup>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3)로 이어지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노령자 부양률, elderly dependency ratio, DR)은 2013년 23.53%에서 2050년 46%로 증가함(OECD, 2004; Marchiori, 2011)
- 급격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이러한 부담은 출산 율의 감소를 초래함
- 감소한 출산율은 장기적인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생산가능인구 의 지속적인 감소를 유발시킴으로써, 양적인 인구감소를 통한 지방의 소멸 과 함께 질적인 지방의 소멸 역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소멸가능한 지방에 대한 예측을 통해 저출산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 는 생활여건개선, 인구유입, 생산성증대, 교육증대 등 상쇄 방안에 대한 대 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sup>1)</sup> 출산율의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대는 현재 인구 통계학의 경향으로 간주되고 성장에 경제적 영 향을 미친다. 현 상황에 따르면 청년층세대의 중가는 느린 반면, 노년층세대의 매년 증가추세 이다.

<sup>2)</sup> 고령화 사회에는 자녀를 적게 갖는 경향이 있어 인구 구조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일반적으 로 고령화 사회는 젊은층 혹은 20-39세 여성의 부재로 출산율이 장기간에 걸쳐 감소한다.

<sup>3)</sup> 노년층은 생산 비율에 종속적으로 작용하기에 고령화의 증가는 생산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 다. 즉, 노동은 자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소해질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임금은 증가할 것 이며, 자본은 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Krueger and Ludwig, 2007).

○ 따라서, 향후 예측가능한 소멸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기준의 파악이 필요함

# 2. 연구의 목적

- 지역구분 기준의 문제점 제시
- 지정기준 수립 고려 요소 파악
- 지정기준 설정안 제시
- 지정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 대안별 장단점 및 향후 방향 제시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1) 공간적 범위
  - O 시군구
  - 특광역시도를 제외한 226개 시군구 적용
  -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인구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배제 필요 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상대적인 감소지역 추적을 위해 포함하여 지역구 분을 적용

#### 2) 시간적 범위

- 인구감소 지역 지정기준의 기준년도는 2015년말로 한정
- 장기추정을 위해서는 시군구 지역통계가 존재하는 시점부터 활용

### 2. 연구의 방법

- □ 본 연구는 구성은 다음 세가지 요인에 대한 고려를 통해 구분
  - O 문헌연구
  -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
  - 지정기준 설정 및 시뮬레이션

# □ 문헌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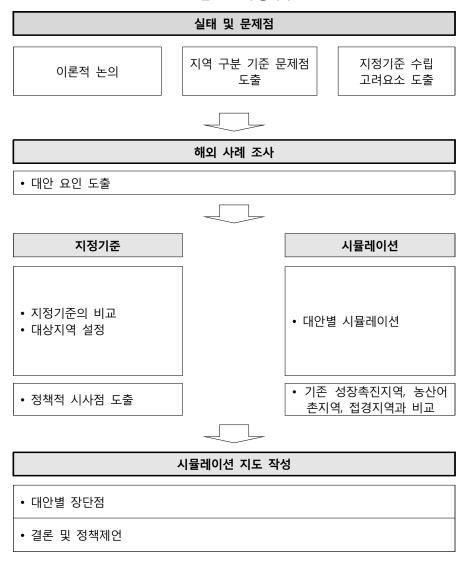
- 기존 연구보고서 및 선행연구 1차 검토
- 문헌연구는 실태 분석 및 분석에 대한 이론 연구, 관련 주제에 대한 사전 연구로 구성

### □ 사례분석

- O 유사 사업 및 해외 사례 조사
  - ※ 과거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지표 측면에서 조사
- 지정기준 지표의 설정은 광의의 지표 설정을 기준으로 설정
  - ※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기준 선정을 위해 고려되어야할 사회, 경제, 인구 측 면의 지표를 파악
- □ 지정기준 설정 및 시뮬레이션
  - 양적인 변화 및 질적인 변화를 고려
    - ※ level 및 slope를 동시에 고려
  -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지역이 구분되는 측면을 인구측면, 경제적 측면, 재정 측면, 복지 및 인프라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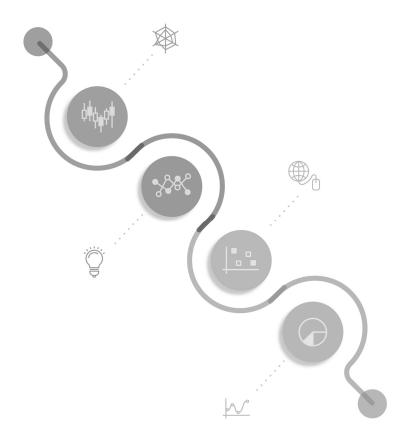
# 3. 연구의 수행체계

<그림 1-1> 수행체계



# 제2장 현황 및 이론적 검토

제1절 인구현황 • 제2절 인구감소의 이론적 고찰 제3절 기존 지역구분 방안



# 제 2 장

# 현황 및 이론적 검토

# 제1절 인구현황

- 인구의 변화는 발전의 추동체 역할을 하며, 출생, 사망, 순이동(전입-전출)로 구성
- 한국 인구 변화의 일반적 경향은 출생과 사망이 역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
- 출생과 사망의 수는 2025년에 유사해지며, 이후 사망이 출생을 초과함
- 더불어 2010년부터 2040년까지 사망이 120.7% 만큼 증가하는 반면 출생의 수는 33.0% 감소
- 그러나 순이동의 수는 2010년 이후 안정된 모습을 나타냄
- 출생율, 사망률과 순이동을 총 인구와 비교할 경우 연간 stock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냄
- 즉, 출생수가 순이동과 함께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해당 지역에서 고 령화를 가속화 시킴
- 특히 지역이 고령화 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지역의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순이동은 감소 경향을 나타냄
- 광역시도, 출생율, 사망률, 순이동으로 인구의 구성을 구분하여 고려할 경우 2010년 광역시의 인구변화가 광역도에 비해 1.2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0년 출생율은 1.38배에 이를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순이동을 제외한 출생과 사망 수의 추세는 같은 형태를 보이며, 이는 순이동의 수가 두 지역에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광역시의 감소는 약 35.5%, 광역도는 약 31.0%이지만, 두 지역에서의 사망수는 증가할 것이며, 광역시와 광역도는 각각 121.4%, 12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시와 광역도의 인구 변화 비중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출생, 사망, 순이동의 변화가 총인구 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임
- 출생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망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 존재함
- 출생과 사망의 이 비중은 2025년에 교차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광역시에서의 출생과 사망 비율은 2010년 약 0.89%, 2040년 약 0.98% 낮은 반면, 광역도 의 순이동 비율은 광역시에 비해 2010년 4.04배, 2040년 2.56배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40년 인구 추세가 광역도에서 광역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함

<표 2-1> 지역별 인구 변화

(단위 : 천명, 천명당)

구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대한민국	출생	485	456	451	442	409	358	325
	사망	261	308	357	403	453	507	576
	순이동	145	37	36	31	30	31	32
광역시	출생	211	203	196	187	172	151	136
	사망	103	119	139	160	181	202	228
	순이동	-57	-95	-64	-54	-50	-40	-30
광역도	출생	274	254	256	255	237	208	189
	사망	157	188	216	244	272	305	348
	순이동	202	131	101	87	79	69	64
대한민국	출생률	9.8	9	8.8	8.5	7.8	6.9	6.4
	사망률	5.3	6.1	6.9	7.8	8.7	9.8	11.3
	순이동률	2.9	0.7	0.7	0.6	0.6	0.6	0.6
광역시	출생률	9.3	8.9	8.6	8.2	7.6	6.8	6.3
	사망률	4.5	5.2	6.1	7.1	8.1	9.1	10.6
	순이동률	-2.5	-4.2	-2.8	-2.4	-2.2	-1.8	-1.4
광역도	출생률	10.3	9.1	8.9	8.7	8	7	6.4
	사망률	5.9	6.8	7.5	8.3	9.2	10.2	11.8
	순이동률	7.6	4.7	3.5	3	2.7	2.3	2.2

- 연령 집단별 장래 인구는 0~9세 인구와 10~19세 인구가 좌편향된 감소 경향을 나타냄
- 0~9세 인구는 1970년 대비 2040년 약 60.5% 감소하며, 같은 기간 10~19세 인구는 45.4% 감소함
- 반면, 20~29세 인구는 0~9세, 10~19세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성장률은 0%로 정체현상을 나타내 인구에 변화가 크게 없다는 것을 의미함
- 30~39세 장래인구의 경향은 거의 정규 분포 모양을 나타내고, 2000년부터 2040년까지의 성장률은 16.2%를 나타냄
- 40~49세 인구로부터 장래인구의 성장률은 우편향 모형으로 변했으며, 이는 장래인구가 증가할 것을 의미함
-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장래인구의 경우, 성장률이 각각 272.1%, 626.5%, 2,101.1%임
- 즉 젊은 세대 수가 감소하는 반면, 노년 세대들은 증가하는 것의 입증하는 것으로써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결과로 나타남
- 따라서 젊은계층이 부정적 성장률을 가지는 반면, 노년층 장래인구의 성장률이 커지는 것을 나타냄
- 또한 연령별로 성장률은 기하급수적인 모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표 2-2> 광역시와 광역도의 연령별 장래인구 추이

(단위 : 천명)

3	구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1970	2,827	2,861	2,198	1,590	923	531	268	115
	1975	3,344	3,504	2,669	1,982	1,214	694	358	167
	1980	3,759	3,908	3,741	2,482	1,698	905	474	240
광	1985	3,735	4,247	4,439	3,011	2,155	1,176	608	334
역 시	1990	3,527	4,191	4,574	3,835	2,497	1,575	771	451
'	1995	3,274	3,920	4,703	4,279	2,904	1,905	980	579
	2000	3,095	3,403	4,348	4,117	3,518	2,187	1,287	719
	2005	2,526	3,099	3,963	4,048	3,938	2,559	1,559	968

3	구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2010	2,049	3,014	3,528	3,829	3,937	3,235	1,860	1,345
	2015	1,928	2,443	3,294	3,600	3,786	3,730	2,255	1,752
	2020	1,910	1,981	3,169	3,288	3,548	3,728	2,910	2,200
	2025	1,861	1,870	2,648	3,144	3,322	3,639	3,436	2,736
	2030	1,787	1,852	2,170	3,102	3,043	3,439	3,513	3,544
	2035	1,649	1,809	2,059	2,606	2,923	3,231	3,476	4,331
	2040	1,466	1,746	2,040	2,163	2,906	2,965	3,310	4,955
	1970	6,351	4,940	2,707	2,515	1,816	1,333	820	448
	1975	5,675	5,426	2,940	2,473	2,004	1,428	889	512
	1980	4,734	5,071	3,425	2,323	2,237	1,551	986	592
	1985	4,078	4,652	3,933	2,631	2,227	1,769	1,114	696
	1990	3,519	4,178	4,095	3,342	2,147	2,037	1,286	843
	1995	3,439	3,801	3,989	4,109	2,510	2,114	1,557	1,030
광	2000	3,687	3,569	3,859	4,404	3,424	2,185	1,912	1,287
역	2005	3,252	3,500	3,624	4,486	4,271	2,578	2,050	1,704
도	2010	2,728	3,652	3,474	4,299	4,570	3,441	2,188	2,261
	2015	2,635	3,208	3,511	4,054	4,680	4,383	2,607	2,725
	2020	2,633	2,718	3,633	3,747	4,490	4,708	3,546	3,182
	2025	2,618	2,613	3,116	3,652	4,219	4,765	4,439	3,831
	2030	2,568	2,604	2,616	3,679	3,892	4,562	4,728	4,967
	2035	2,405	2,578	2,502	3,131	3,775	4,294	4,783	6,211
	2040	2,156	2,515	2,491	2,604	3,783	3,969	4,591	7,283

- 기대수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진전 심화
- 고령화의 대리변수 중 하나인 기대수명의 경우 2010년 80.3세에서 2040년 83.4세로 예측됨
- 2040년의 여성 기대수명은 88.2세로 남성 기대수명인 83.4세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의 격차는 2010년 6.9세였지만, 2040년 4.8세로 줄 어드는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일반적인 기대수명의 증가는 남성의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여성보다 빠르게 진행 되는 것을 나타냄

- 광역시와 광역도로 구분할 경우, 2010년 두 지역의 기대수명은 거의 유사하지만, 2010년 대비 2040년 광역시의 기대수명이 80.3세에서 86.1세로 7.3% 증가하고, 광역도의 경우 광역시보다 약간 낮은 80.3세에서 86.6세로 7.7%의 증가를 나타냄
- 2010년 대비 2040년 기대수명의 일반 증가율은 7.5%로, 광역도의 경우 일반 증가율보다 높으며 광역시의 경우 일반 증가율보다 낮음
- 이는 광역도의 고령화 세대 수가 광역시보다 많은 것에 기인함

<표 2-3> 기대수명 변화 추이

(단위 : 년)

구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남성	77.2	78.2	79.3	80.4	81.4	82.5	83.4
여성	84.1	85	85.7	86.4	87	87.6	88.2
광역시	80.3	81.6	82.7	83.6	84.6	85.4	86.1
광역도	80.3	81.6	82.8	83.9	84.8	85.7	86.6
대한민국	80.3	81.6	82.8	83.8	84.7	85.6	86.4

- 저출산으로 인한 효과는 미래의 생산가능인구와 연동이 되어 지역경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파생됨
- 광역시와 광역도의 인구수 추세는 15~64세와 65세 이상 인구로 구분할 경우 젊은 세대의 수는 2020년까지는 증가하는 패턴과 2040년부터 하락하는 굴곡이 심한 형태를 나타냄
- 이는 2010년 대비 25% 감소할 것이지만, 노년 인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2040년까지 38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15~64세와 65세 이상 인구의 변화는 2040년 후 수렴 후 교차할 것 으로 예상됨
- 15~64세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 추세를 지역으로 구분한다면 일반적으로 두 지역의 16~64세 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 생산인구인 15~64세 인구는 2000년 기준 광역시가 더 많지만 2005년부터 는 반대가 되는 것으로 추계됨
- 특히, 광역시와 광역도의 이 격차는 2040년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15~64세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광역시의 15~64세 인구 감소(-25.4%)가 광역도(-3.3%)보다 급격한 것으로 추계됨
- 또한, 광역시의 노년인구의 증가는 광역도와 비교시 적은 편이지만, 2040년 광역시의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약 440.7%이고, 광역도의 경우 354.3% 인 것으로 추계됨

<표 2-4> 지역별 15-64, 65+ 인구 추계

(단위 : 십만명)

7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 (4) )]	15~64	169	169	172	171	165	155	145	135	126
광역시	65+	12	16	22	27	34	44	53	61	67
과서도	15~64	169	176	188	199	201	194	184	174	163
광역도	65+	22	27	33	39	47	60	74	87	98
15~64		337	345	360	370	366	349	329	309	289
65+		34	44	55	66	81	103	127	148	165

- 0~14세와 15~64세 인구의 비중은 출산율에 따라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0~14세 인구 비중은 21.1%이고, 이는 2040년 9.9%p 감소한 11.2%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동일하게 15~64세의 비중은 2000년 71.7%에서 2040년 15.2%p 감소 한 56.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인구감소의 영향은 인구감소 이전에 고령화사회로의 직면을 의미함
- 2000년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31.8세이었지만, 2040년에는 이는 65.4% 증가한 52.6세로 증가됨

- 이는 2040년 평균 연령이 54.7세가 되는 여성에서 더 심하며(2010년 대비 67.3% 증가), 남성의 경우 50.7세(2010년 대비 64.6%)임
- 연령별 인구의 비중은 지역과 비교할 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0~14세 광역시 인구와 광역도의 인구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두 지역 모두 0~14세 인구의 부족에 직면함
- 광역도(-10.4%p)의 경우 광역시(-9.5%p)의 감소율보다 급격하며, 2000년 대비 2040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즉, 15~64세 인구 비중은 두 지역 모두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며, 광역시의 15~64세 인구 비중의 감소는 -16.2%p로 광역도의 -13.9%p보다 급격함
- 광역시 및 광역도의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으며, 광역 시 인구 비중의 경우 2000년 5.5%에서 2040년 31.1%로 광역도의 경우 8.8%에서 33.2%로 증가함

<표 2-5> 연령별, 평균연령별, 지역별 인구비

(단위 : %)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0	~14	21.1	19.2	16.1	13.9	13.2	13	12.6	12	11.2
15	5~64	71.7	71.7	72.8	73	71.1	67.2	63.1	59.5	56.5
65	이상	7.2	9.1	11	13.1	15.7	19.9	24.3	28.4	32.3
	0~14	20.2	18.2	15.2	13.1	12.5	12.3	12	11.5	10.7
광역시	15~64	74.3	74.5	75.4	74.9	72.5	68.3	64.3	61	58.2
	65 이상	5.5	7.3	9.5	12	15	19.3	23.7	27.5	31.1
	0~14	21.9	20.1	17	14.6	13.8	13.5	13.1	12.4	11.5
광역도	15~64	69.3	69.2	70.6	71.4	70	66.2	62.1	58.5	55.3
	65 이상	8.8	10.7	12.4	14	16.3	20.3	24.8	29.1	33.2
11	합계	31.8	34.8	37.9	40.8	43.4	45.9	48.5	50.8	52.6
평균 연령	남성	30.8	33.8	36.8	39.5	41.9	44.4	46.8	48.8	50.7
4.9	여성	32.7	35.8	39	42.1	45	47.5	50.1	52.6	54.7
광역시	평균연령	30.8	33.9	37.2	40.1	42.9	45.5	47.9	49.9	51.6
성격시	남성	30	33	36.1	38.8	41.4	43.9	46.1	48	49.8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여성	31.6	34.9	38.2	41.4	44.3	47	49.5	51.6	53.4
	평균연령	33.1	36.4	39.5	42	44.9	47.6	50.2	52.6	54.9
광역도	남성	31.6	34.9	38	40.5	43.2	45.9	48.4	50.7	52.7
	여성	34.7	38	41.1	43.6	46.6	49.4	52.1	54.6	57.1

- 저출산으로 이한 문제는 향후 미래 세대에 대한 젊은층의 부담정도를 의미 하는 것으로써 지방인구감소의 실질적인 문제를 나타냄
- 유년부양비율(young dependency ratio)은 15~64세 인구수에 대한 0~14세 인구수를 의미하며, 노인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수에 대한 15~64세 인구수를 나타냄
- 유년부양비율은 2000년 29.4%에서 2040년 19.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노인부양비는 2000년 10.1%에 2040년 57.2%로 증가함으로써 향후 15~64세의 생산인구는 젊은 세대에 비해 노인 세대에 대해 보다 많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함
- 2000년 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34.3%이며, 2040년 288.6%로 증가함
- 따라서 현저히 적게 증가하는 유아비율에 따르면, 미래 젊은 세대들은 노년 세대를 지원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게 됨
- 광역시와 광역도의 경우 두 지역 모두 15~64세에 의한 인구 0~14세 인구비와 65세 이상 인구비는 유사한 추세를 지니며, 오직 다른 점은 연령별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대비 2040년 광역도의 유년부양비율은 20.9%로 광역시 18.4%보다 크게 나타남
- 유년부양비율은 두 지역 모두에서 감소하지만 광역시의 -8.8%보다 광역도 의 -10.8%가 낮음
- 2040년 광역도의 노인비율은 12.8%로 광역시의 7.4%보다 크며, 2040년 두 지역에서 노인비율은 광역도가 60.0%로 광역시의 53.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표 2-6> 지역별 유년·노인·노인-유년 비율

(단위 : %)

	구분	-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L	보양비율	청년	29.4	26.8	22.2	19	18.6	19.3	20	20.2	19.8
٦	-오미포	노인	10.1	12.6	15.2	17.9	22.1	29.6	38.6	47.8	57.2
	광역시	청년	27.2	24.4	20.1	17.5	17.2	18.1	18.7	18.9	18.4
	정역시	노인	7.4	9.8	12.6	16	20.7	28.3	36.8	45.2	53.5
	광역도	청년	31.6	29	24	20.4	19.7	20.3	21	21.3	20.9
	정역도	노인	12.8	15.4	17.5	19.6	23.3	30.7	40	49.8	60
1	노인-유년비율		34.3	47.3	68.4	94.1	119.1	153.3	193	236.1	288.6
	광역	취	27.1	40.1	62.4	91.7	120.1	156.6	196.9	239.5	290.3
	광역도		40.4	53	72.9	95.9	118.3	151	190.3	233.8	287.4

# 제2절 인구감소의 이론적 고찰

- 인구감소의 궁극적인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설정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하게 되는 경제 상태를 의미함
- 즉, 지역의 경제상태를 지탱할 수 있는 가용노동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구감소로 인한 결과는 경제학적인 산식 결과로 도출이 가능함
- 이때 활용가능한 모형식은 한 사람의 생을 청년층과 노년층 두 기간으로 가 정하여 도출이 가능
- 모든 시간적 범위에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두 종류의 연령층이 존재하고 두 개의 연령계층 중 청년층은 두 기간을, 노년층은 한 기간을 대상으로 동태 적 결정을 수행
- 오직 청년층에만 일하고 노년층에는 은퇴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인구가  $N_t$ 라고 하면, 청년층이  $N_{1,t}$ , 노년층이  $N_{2,t}$ 을 의미하며, 각 연령층 의 합은 총 인구를 나타냄

$$N_t = N_{1,t} + N_{2,t} \tag{1}$$

- $oldsymbol{O}$  또한, t기의 노년층은 마지막 기간의 청년층을 의미하기 때문에  $N_{2,t}=N_{1,t-1}$ ,  $N_t=N_{1,t}+N_{1,t-1}$ 로 전환이 가능함
- 이때의 인구  $N_{1,t}=(1+n)N_{1,t-1}$ 는 고정 비율인  $n^4$ )에 의해 성장한다고 가정함
- 따라서, t기의 총 인구는 식 (2)로 제시 가능함

$$N_t = N_{1,t} + \frac{1}{1+n} N_{1,t} = \frac{2+n}{1+n} N_{1,t}$$
 (2)

<sup>4)</sup> n의 성장은 출산율, 사망률, 인구의 유입 및 유출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화 인구, 연령을 고려한 인구의 경우 n으로 고려가 된다.

 $oldsymbol{O}$  만약 t기간의 청년층과 노년층의 총 소비를  $C_t$ 라고 가정하면, 이는 청년층 과 노년층으로 구분됨

$$C_t = C_{1,t} + C_{2,t} \tag{3}$$

 $\bigcirc$  각 세대의 각 1인당 소비는  $C_{i,t}$ 이므로, 식 (3)은 식 (4)로 전환이 가능함

$$C_t = c_{1,t} N_{1,t} + c_{2,t} N_{2,t} (4)$$

O 이는  $N_{2,t}=N_{1,t-1}$ 와  $N_{1,t}=(1+n)N_{1,t-1}$ 에 의하여 식 (5)로 전환이 가능함

$$C_t = (c_{1,t} + \frac{1}{1+n}c_{2,t})N_{1,t}$$
(5)

 ${f O}$   $I_t$ 의 투자를 고려할 경우의 국민 소득 균형식 식 (6)과 같음

$$Y_t = C_t + I_t \tag{6}$$

○ 또한, 자본 축적에 대한 조건식은 식 (7)과 같으며, 경제의 자원 제약은 식 (8)로 제시가 가능함

$$K_{t+1} = (1 - \delta)K_t + I_t \tag{7}$$

$$Y_{t} = (c_{1,t} + \frac{1}{1+n}c_{[2,t})N_{1,t} + K_{t+1} - (1-\delta)K_{t}$$
(8)

 $\mathbf{O} \frac{Y_t}{N_t} = y_t$ 와  $\frac{K_t}{N_{1,t}} = k_t$ , 1인당 자원 제약식은 식 (9)와 같음

$$\begin{split} \frac{Y_t}{N_t} &= (c_{1,t} + \frac{1}{1+n}c_{2,t})\frac{N_{1,t}}{N_t} + \frac{N_{t+1}}{N_t} - (1-\delta)\frac{K_t}{N_t} \\ &= (c_{1,t} + \frac{1}{1+n}c_{2,t})\frac{N_{1,t}}{N_t} + \frac{N_{1,t}}{N_t}\frac{N_{1,t+1}}{N_{1,t}}\frac{K_{t+1}}{N_{1,t+1}} - (1-\delta)\frac{N_{1,t}}{N_t}\frac{K_t}{N_{1,t}} \\ &= \frac{N_{1,t}}{N_t}[(c_{1,t} + \frac{1}{1+n}c_{2,t}) + \frac{N_{1,t+1}}{N_t}\frac{K_{t+1}}{N_{1,t+1}} - (1-\delta)\frac{K_t}{N_{1,t}}] \\ &= \frac{1+n}{2+n}[(c_{1,t} + \frac{1}{1+n}c_{2,t}) + \frac{N_{1,t+1}}{N_t}\frac{K_{t+1}}{N_{1,t+1}} - (1-\delta)\frac{K_t}{N_{1,t}}] \\ &= \frac{1+n}{2+n}[(c_{1,t} + \frac{1}{1+n}c_{2,t}) + (1+n)k_{t+1} - (1-\delta)k_t] \end{split}$$
(9)

○ 오직 청년층만 일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생산 기능은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됨

$$Y_t = F(K_t, N_{1,t}) (10)$$

 $oldsymbol{O}$  따라서, 1인당 산출은  $\dfrac{K_t}{N_{1,t}} = k_t$  식 (11)로 제시가 가능함

$$y_t = \frac{Y_t}{N_t} = \frac{N_{1,t}}{N_t} F(\frac{K_t}{N_{1,t}}, 1) = \frac{1+n}{2+n} f(k_t)$$
(11)

○ 따라서, 1인당 자원 제약은 식 (9)에서 식 (12)로 전환됨

$$f(k_t) = c_{1,t} + \frac{1}{1+n}c_{2,t} + (1+n)k_{t+1} - (1-\delta)k_t$$
 (12)

Ο 이윤 극대화  $Max(\pi) = F(K_t, N_{1,t} - (r_t + \delta)K_t - W_tN_{1,t})$ 는 자본의 순 한 계 생산 식 (13)과 동일한 자본 수익률  $r_t$ 를 내포하며, 임금률은 식 (14)로 제시됨

$$\frac{\partial \pi}{\partial K_t} = r_t = f'(K_t) - \delta \tag{13}$$

$$\frac{\partial \pi}{\partial N_{1,t}} = W_t = f(k_t) - k_t f'(k_t) \tag{14}$$

 $oldsymbol{O}$  이때 청년층은  $c_{1,t}$ 를 소비하고 저축하며, 노년층은 저축으로 오직 인해 수 입이 발생함

$$s_t = w_t - c_{1,t} (15)$$

$$c_{2,t+1} = (1 + r_{t+1})(w_t - c_{1,t}) = (1 + r_{t+1})s_t \tag{16}$$

○ 그러므로 두 기간의 동태적 예산 제약은 식 (17)로 전환되며, t기의 경제 자원 제약과  $\delta = f'(k_t) - r_t$ 로 인하여 순투자는 식 (18)과 같음

$$c_{1,t} + \frac{c_{2,t+1}}{1 + r_{t+1}} = w_t \tag{17}$$

$$\Delta K_{t+1} = Y_t - c_{1,t} N_{1,t} - c_{2,t} N_{1,t-1} - \delta K_t$$

$$= w_t N_{1,t} + r_t K_t - c_{1,t} N_{1,t} - c_{2,t} N_{1,t-1}$$
(18)

O 자본투자  $\Delta K_{t+1} = K_{t+1} - K_t$ ,  $s_t = w_t - c_{1,t}$ ,  $c_{2,t+1} = (1+r_{t+1})s_t$ 를 고려하면 식 (18)은 식 (19)가 되며,  $K_t$ 가  $s_{t-1}N_{1,t-1}$ 과 동일하기 때문에 차분방정식 식 (19)는 식 (20)으로 전환됨

$$K_{t+1} - K_t = w_t N_{1,t} + r_t K_t - c_{1,t} N_{1,t} - c_{2,t} N_{1,t-1}$$

$$K_{t+1} = w_t N_{1,t} + (1+r_t) K_t - (w_t - s_t) N_{1,t} - (1+r_t) s_{t-1} N_{1,t-1}$$

$$= s_t N_{1,t} + (1+r_t) (K_t - s_{t-1} N_{1,t-1})$$

$$= s_t N_{1,t} + (1+r_t) (K_t - s_{t-1} N_{1,t-1})$$

$$= s_t N_{1,t}$$

$$(20)$$

○ 따라서, 식 (20)의 1인당 방정식은 식 (21)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때의 노년 층의 소비 식은 식 (22)과 같음

$$s_t = \frac{K_{t+1}}{N_{1,t}} = (1+n)k_{t+1} \tag{21}$$

$$c_{2,t+1} = (1 + r_{t+1})(1+n)k_{t+1}$$
(22)

○ 청년층이 두 기간(청년층, 노년층)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효용은 식 (23)와 같음

$$U(c_{i,t}) = U(c_{1,t}) + \beta U(c_{2,t+1})$$
(23)

○ 따라서, 젊은 세대는 그들의 동태적 제약으로 인해 효용이 극대화 되며, 이 극대화 문제에 대한 Lagrangian 식은 식 (24)과 같으며, 두세대의 소비에 대한 1계 조건은 식 (25)와 (26)같음

$$L = U(c_{1,t}) + \beta U(c_{2,t+1}) + \lambda [c_{2,t+1} - (1 + r_{t+1})(w_t - c_{1,t})]$$
 (24)

$$\frac{\partial L}{\partial c_{1,t}} = U_{c1,t} + \lambda (1 + r_{t+1}) = 0$$
 (25)

$$\frac{\partial L}{\partial c_{2t+1}} = \beta U_{C_{2t+1}} + \lambda = 0 \tag{26}$$

이 따라서, 오일러방정식(Euler equation)은 식 (27)의  $\beta = \frac{1}{1+\theta}$ 와 할인율  $\theta$ 의 경우와 같음

$$\frac{\beta U_{c_{2,t+1}}(1+r_{t+1})}{U_{c_{1,t}}} = 1 \tag{27}$$

○ 일정 상대위험회피(CRRA)를 가정하면 효용은 식 (28)로 전환되며, 이에 대한 편도함수는 식 (29)와 같음

$$U(c_{i,t}) = \frac{c_{i,t}^{1-\sigma}}{1-\sigma}$$
 (28)

$$U'(c_{i,t}) = U_{c_{1,t}} = c_{i,t}^{-\sigma}$$
(29)

O 따라서 식  $(27), \frac{c_{2,t+1}}{c_{1,t}} = \left(\frac{1+\theta}{1+r_{t+1}}\right)^{-\frac{1}{\sigma}}$ 에 의하여 노년층의 소비는 식 (30) 와 같음

$$c_{2,t+1} = \left(\frac{1+r_{t+1}}{1+\theta}\right)^{\frac{1}{\sigma}} c_{1,t} \tag{30}$$

 $\mathbf{O} \ s_t = w_t - c_{1,t}$  식 (15)을 고려한 경제의 동적 행태는 (31)식과 같음

$$s_t = w_t - \left(\frac{1 + r_{t+1}}{1 + \theta}\right)^{-\frac{1}{\sigma}} c_{2,t+1} \tag{31}$$

 ${f O}$  또한 노년층의 소비는  $c_{2,t+1}=(1+r_{t+1})s_t$ 이므로, 이는 식 (32)와 같음

$$c_{2,t+1} = (1 + r_{t+1})[w_t - (\frac{1 + r_{t+1}}{1 + \theta})^{-\frac{1}{\sigma}} c_{2,t+1}]$$
(32)

○ 따라서, 식 (13)과 식 (14)을 고려한 (32)식이 자본의 동적 행태는 식(33)과 (34)와 같음

$$k^{1-a} = \frac{1-a}{(1+n)\left[1 + \frac{(1+r_{t+1})^{1-\frac{1}{\sigma}}}{(1+\theta)^{-\frac{1}{\sigma}}}\right]}$$
(33)

$$k = \left[\frac{1-a}{(1+n)\left[1 + \frac{(1+r_{t+1})^{1-\frac{1}{\sigma}}}{(1+\theta)^{-\frac{1}{\theta}}}\right]}\right]^{\frac{1}{1-a}}$$
(34)

 $oldsymbol{\circ}$  또한 식 (31)은 식 (30),  $c_{2,t+1}=(\frac{1+r_{t+1}}{1+ heta})^{\frac{1}{\sigma}}c_{1,t}$ , 으로부터 도출하는 저축의 균제상태를 의미하며, 식 (35)은 식 (36)으로 변화됨

$$(1+r^*)s^* = (\frac{1+r^*}{1+\theta})^{\frac{1}{\sigma}}(w^*-s^*)$$
(35)

$$s^* = \frac{w^*}{(1+r^*)^{1-\frac{1}{\sigma}}(1+\theta)^{\frac{1}{\sigma}} + 1}$$
 (36)

○ 따라서 청년층과 노년층의 소비는 식 (37) 및 식 (38)과 같음

$$c_{1t}^* = w^* - \frac{w^*}{(1+r^*)^{1-\frac{1}{\sigma}}(1+\theta)^{\frac{1}{\sigma}} + 1} = \frac{\left[(1+r^*)^{1-\frac{1}{\sigma}}(1+\theta)^{\frac{1}{\sigma}}\right]w^*}{(1+r^*)^{1-\frac{1}{\sigma}}(1+\theta)^{\frac{1}{\sigma}} + 1}$$
(37)

$$c_{2t}^{*} = \left(\frac{1+r^{*}}{1+\theta}\right)^{\frac{1}{\sigma}} \frac{\left[\left(1+r^{*}\right)^{1-\frac{1}{\sigma}}\left(1+\theta\right)^{\frac{1}{\sigma}}\right]w^{*}}{\left(1+r^{*}\right)^{1-\frac{1}{\sigma}}\left(1+\theta\right)^{\frac{1}{\sigma}}+1} = \frac{\left(1+r^{*}\right)w^{*}}{\left(1+r^{*}\right)^{1-\frac{1}{\sigma}}\left(1+\theta\right)^{\frac{1}{\sigma}}+1} (38)$$

O 또한, 식 (34) 
$$k^* = \left[\frac{1-a}{(1+n)[1+\frac{(1+r_{t+1})^{1-\frac{1}{\sigma}}}{(1+\theta)^{-\frac{1}{\theta}}}]}\right]^{\frac{1}{1-a}}$$
의 경제적 산출물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고려할 경우 생산은 식(39)로 도출됨

$$y^* = \left[ \frac{1-a}{(1+n)[1+\frac{(1+r_{t+1})^{1-\frac{1}{\sigma}}}{(1+\theta)^{-\frac{1}{\theta}}}]} \right]^{\frac{a}{1-a}}$$
(39)

# 제3절 기존 지역구분 방안

## 1. 지역구분 방안

#### 1) 수도권기준 분류

- 수도권의 정의: 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광역대도시권을 일컫는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
-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 즉 인천 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구분은 구체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권역이 구분 되었다기보다는 법적 범위인 수도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비수도권 상정
- 지역간 격차를 인구, 지역경제(GRDP, 100대기업의 본사수, 제조업수, 벤처기업수, 예금액), 주요 기능(공공시설수, 대학수, 의료기관수, 자동차수) 측면에서 측정하고 있음

## 2) 재정적 측면의 분류

-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에서 중앙의 교부세를 지원하기 위 한 지역부류
-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재정을 지원
- 보통교부세 형태로 지원이 되며, 지원총액은 국세수입의 19.6%을 차지
- 재정 부족액에 따라 시군을 대상으로 재정교부 단체와 재정불교부 단체로 구분하여 재정교부단체를 지원
- 자치구는 재정 교부, 불교부 단체에서 제외
- 구체적으로 재정력 지수에 의해 지역을 구분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 정 수요액으로 나눈 값으로 판정
- 1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를 제외한 '역재정력 지수' 값이 마이너스(-) 면 불교부 단체, 플러스(+)이면 교부단체

- 보통교부세 지원에 의한 자치단체는 교부자치단체, 불교부 자치단체로 구분
- 교부자치단체는 광역 13개, 기초 154개이며, 불교부 자치단체는 광역 3개, 불교부 7개(수원, 성남, 안산, 고양, 과천, 용인, 화성)로 구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부터 특별법에 따라 재정부족액을 별도로 산정하 지 않고 보통교부세 재원의 3% 정액을 교부

구 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계 시·도 13 16 3 시·군 154 7 161 167 10 177 계

<표 2-7>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측면의 지역구분

## 3) 지구지정 측면의 분류

- 지역의 발전도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지 정 차원의 지역분류
- 특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지정에 의한 지역구분이 있음
- 오지, 도서, 접경, 개촉지구 등이 지구지정의 대표적인 지역분류에 해당
- 오지, 도서, 접경, 개촉지구 등은 사업에 따라 일정한 지정요건을 달리 적용 하고 있음

<표 2-8> 지구지정 분류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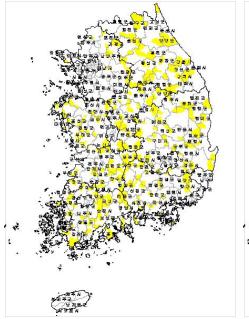
구 분	지정기준
오지	· 10개 지표 : 인구증감율, 제조업종사자비율, 농가율, 법정도로율, 법정도로포장율, 상수도 보급율, 하수도보급율, 문화복지시설비율, 1인당 지방세 부과액
도서	· 10인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 · 지자체에서 개발도서로 신청하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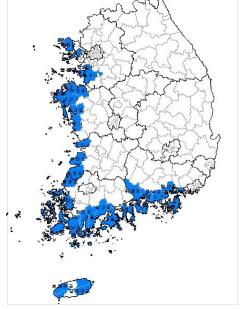
구 분	지정기준
접경지역	<ul> <li>· 민통선 이남 20km 이내 시·군의 읍,면,동으로 최근 5년간 인구증감률, 도로포 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지역</li> <li>· 민통선 이북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지구 및 남북한교류협력사업 추진지역</li> <li>·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와 그 주변 도서</li> </ul>
개발촉진 지구	· 인구밀도, 연평균인구변화율, 소득할 주민세, 재정력 지수, 고령화지수,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도로율, 지역 접근성 등

○ 오지 391개 면, 도서 410개, 접경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 개촉지구 31 개, 49개시·군을 지정

<그림 2-1> 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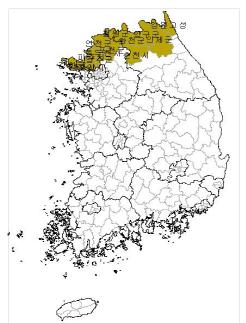
<그림 2-2> 개발대상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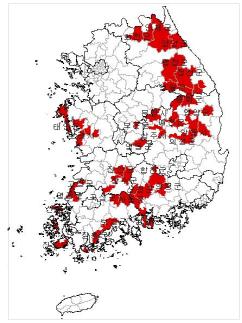




<그림 2-3> 접경지역

<그림 2-4> 개발촉진지구





## 4) 낙후지역 관련 제한된 범위의 지역분류

- 대표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위 30%를 지원하기 위한 신활력 지역과 비 신활력지역의 구분이 있음
- 신활력 지역은 지역의 발전도에 의해 70개 지역을 선정하여 연간 20여 억 워의 지역개발재원을 지원
- 신활력지역의 선정은 국기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3년마다 선정·고시하 도록 규정
-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지역이 신활력지역임
- 신활력지역은 인구, 산업경제, 재정 등 4개의 지표에 의해 선정

<丑	2-9>	신활력지역	지표

구분	지표	적용자료
인구	① 인구변화율(70~00) ② 인구밀도(03년기준 주민등록인구)	<ul><li>인구주택총조사</li><li>30년간 인구변화율 자료</li><li>03년말 주민등록 인구현황</li></ul>
산업·경제	③ 소득세할주민세 (00~02년 평균)	· 지방세정연감
재정	④ 재정력지수(00~02년 평균)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2. 기존 지역분류의 한계

## 1) 개별사업 기반적 지역분류

- 기존 지역개발 지원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한 정책지원의 틀과 그에 기반한 지역분류가 정립되어 있지 못함
- 동시에 국가 전체적인 틀에 기반하지 않아 부처별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분류를 하고 있음
- 발전도 등에 의한 지역의 구분이 아니라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구지 정' 차워에 머무르고 있음
- 중복된 지표나 유사한 지표를 사용하여 선정지역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 도 노출
-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편의적 접근에 의해 체계성이 결여
- 지역의 구분이 정책적 자율성이 적은 면 단위에서 그렇지 못한 시군단위까 지 다양
-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 등은 마을단위, 오지개발 등은 면단위, 소도읍 은 읍단위, 신활력 사업은 시군의 공간적 단위로 지역이 분류되고 있음
- 서로 다른 공간적 차원에서 개별 사업별로 지역을 지정, 분류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동일한 지역이 서로 다른 사업에 의해 중첩적으로 지정되는 결 과를 초래

○ 따라서 지역분류에 대한 정책의 틀 뿐 아니라, 실제 지역분류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구지정 차원의 지역을 분류함으로 써 지역분류의 체계성 결여

#### 2) 분류지표의 체계성 결여

- 지역정책의 토대가 되는 지역분류에 대한 국가 통일적이고 객관적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못함
-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표의 경우 낙후지역의 국가 최저생활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에서 개발된 지표이다 보니 특정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포괄성과 대표성이 결여
- 접근성, 도로율, 도로기반 등 생활환경 정비나 개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의 지표가 다수
- 종래의 개별사업에 의한 지표는 당초 겨냥했던 생활환경개선 사업에서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사업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신활력 사업의 경우 지역발전도에 의한 지역분류지표에 의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복지, 인프라 등을 감안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
- 따라서 종래의 지역분류에 대한 지표는 소관 부처의 개별 사업을 원할히 추 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개발된 한계를 표출
- 포괄성, 객관성에 기반한 지역정책 수립과 추진의 토대가 되는 지역분류의 근간으로서의 지표에는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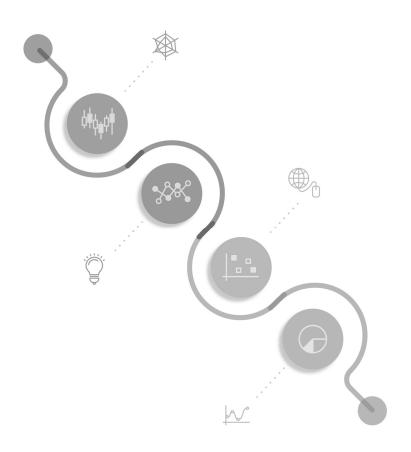
## 3) 지역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 지역분류의 포괄성, 대표성 결여로 인해 특정한 부처의 제한된 사업과 연계 하여 지역분류를 활용하고 있음

- 공간적 차원에서의 지역분류가 난립 및 중첩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정 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체계를 형성
- 지역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정책적 자율성이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지역의 발전도를 감안한 지표에 의한 지역의 분류가 필요
- 특히, 인구, 산업, 복지, 재정 등의 측면에서 지역의 발전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합리성 높은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의 발전수준 및 특성에 따라 지역정 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지역분류가 필요
- 이를 토대로 분류한 지역유형에 따라 정책대상의 우선지역을 선정함과 동 시에 개발보조금 지원 등의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

# 제3장 국내외 사례

제1절 국내사례 **네** 제2절 해외사례



# 제 3 장

# 국내외 사례

# 제1절 <sup>1</sup> 국내사례

1.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연구(2015)

#### □ 개요

- 출산율 및 사망률 감소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및 인구고령화의파급효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므로 그만큼 대응 영역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도 매우 다양함
- 따라서 정책과제들의 범위나 개수도 방대하며, 정책과제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복잡성 등의 특성을 지님
- 핵심과제들은 각각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 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일정 주기(가급적 단기간)로 측정하여 평가하고 환류(feedback)하는 강도 높은 평가-관리 과정을 거치도록 함
- 지표는 단순한 투입(input) 대비 산물(output)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실 질적으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 및 고령화 준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효과(outcome)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과제는 투입(input)-과정(processing)-성과(outcome)를 주기적으로 측정 하여 일관성 있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는 지여부 등을 관리

## □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전략의 추진의 효과성은 경제활동인구 규모 및 고 용률로 측정 - 해당 전략은 세부적으로 여성 고용, 노인 고용,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등 양적인 접근과 더불어 인적자원 개발 등 질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괄하는 효과성은 대표적으로 경제활동인구 규모 및 고용률로 통합하여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

## □ 인구고령화 대응 노후 삶의 질 제고

- 인구고령화 대응 노후 삶의 질 제고 전략의 추진의 효과성은 노후 삶의 질 만족도로 측정
- 해당 전략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 만족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세부 전략들로서 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참여, 안 전생활 등을 포괄하는 개념

## □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지속발전

-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지속발전 전략의 추진의 효과성은 대표적으로 경 제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유지할 것인가로 측정
- 세부 전략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기저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구 분	지표	내용			
		- 여성의 경제활동 저해요인 해소			
		- 고용 및 근무형태의 다양화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			
생산가능인구	- 노인고 <del>용률</del>	- 동일직장 계속 고용 활성화			
		- 중고령자 재취업 지원 활성화			
		- 고령기준 재정립			
		- 해외우수인재 유치기반 강화			
	- 취업외국인 중 전문인력 비중	- 취업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10	- 다문화사회 대비 사회통합 노력 강화			

<표 3-1> 지표의 선정(안)

구 분	지표	내용
		- 학습과 일의 연계 강화
	- 평생교육 참가율	- 성인/지역 친화적 대학 시스템 구축
		- 평생학습체계 구축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 노인빈곤율	- 사적연금 활성화
		- 고령화 대비 금융인프라 개선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인구고령화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 노인의료체계 강화
대응		- 노인 돌봄·요양 기능 강화
노후 삶의 질		- 고령자 여가활동 지원
제고	- 여가활동참여 노인비율	-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세대통합 사회분위기 조성
	- 노이교토 등 아저사고	-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자 생활안전 및 권익보장
	· 1 o ਦ	-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
	CDD에 리칭 지미지어이	-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고령친화산업·서비스 육성
	- GDP에 대한 실버산업의 기여도	- 수요자 중심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지원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지속발전	,	- 고령친화 R&D종합지원체계 구축
	- 국방인력 과부족 교원수급 수준	- 국방인력 구조 개편
		- 교육시스템 구조 조정
	ሢ	- 지방행정체계 개선 및 농어촌 활성화
		- 공적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재정건정성 관리 강화

# 2.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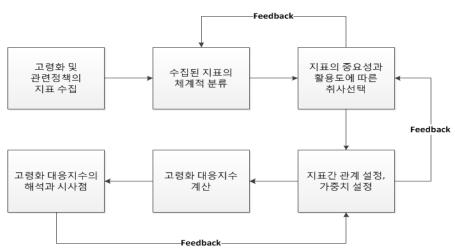
# □ 개요

○ 고령화 대응지수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 정책집행의 결과와 사회적 상황을 숫자로 표현한 것

- 고령화 대응이란 인위적인 그리고 의도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고령화 대응 지수는 인구고령화의 정도 혹은 고령화 현상 자체를 설명하는 지표를 포함 하는 것은 부적절
- 따라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변화 가능한 그리고 정책의 노력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

### ○ 고령화 대응지수 산출 절차

- 우선 인구고령화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는 다양한 지표(indicator)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 수집된 지표들의 내용과 의미를 해석하고 영역·분야, 대상, 활용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한 지표를 취사선택
- 분류와 선택을 거친 지표는 개별지표들간의 관계 설정을 통하여 체계화함 으로써 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체계를 구성
- 체계적인 분류와 지표간 관계 설정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하여 고령화 대응지수(ARI: aging response index)를 개발
- 즉,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표간 관계, 개별 지표의 우선순위와 비중을 도출 하여 지표의 조합방식을 도출하고, 지표 합산을 위한 가중치를 설정
- 가중치의 설정은 델파이 유형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방식의 설문을 통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
- 마지막으로 지표의 조합과 가중치를 근거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고령화 대응 지수를 계산
- 계산된 대응지수의 의미를 해석하고, 시계열적 측면의 변동추세와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고령화 대응지수의 의미를 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그림 3-1> 고령화 대응지수 산출 절차

## □ 고령화 대응지수 지표 선정

<표 3-2> 지표의 선정(안)

구 분	지표		내용
	공적	총급여수준	- GDP 대비 공적급여 비율(2040)
	부담	급여변화	- GDP 대비 공적급여 비율의 변화(2007~2040)
	اد اداد	조세여유	- GDP 대비 정부수입의 비중(2040)
재정적	재정적 여유	예산여유	- 정부지출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급여 비율(2040)
지속가능성	- 1111	채무여유	- GDP 대비 국가 순채무 비율(2040)
	급여 의존성	급여비중	- 평균 노인소득 중 공적급여의 비율(2007~2040)
		급여삭감	- 공적급여를 10% 삭감할 경우 빈곤상태가 되는 노인가구의 비율(2007)
	총 소득	소득수준	-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가처분소득 비율(2040)
こをとこの		소득추세	-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가처분 소득의 비율의 변화 (2007~2040)
노후소득의 적절성	소득의 취약성	중위소득	-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중위 가처분소득의 비율 변화 (2040), 공공의료급여 제외
		중위소득 추세	-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중위 가처분소득의 비율 변화 (2007~2040), 공공의료급여 제외

구 분	지표		내용
		빈곤수준	-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가구의 비율(2007)
	가족	가족결합	-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의 비율(2007)
	지원	가족규모	- 노인세대와 동거하는 평균 자녀 수의 변화(2007~2040)

## 3. 지역발전지수에 기반한 지역간 발전격차 분석(2006)

#### □ 개요

-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 : RDI)란 지역의 경제력과 생활 여건 등 지역발전을 구성하는 제반 요인을 포괄하여 지역의 발전 정도를 종 합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
- 지역의 발전 정도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총체적 경제력뿐만 아 니라 지역주민의 주요 생활활동 영역과 연관된 삶의 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 따라서 지역발전지수를 지역경제력지수와 주민활력지수로 구분함으로써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종합적 접근
- 지역경제력지수는 지역별 특성화발전을 통한 역동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조에 맞추어 지역의 경제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체계로서, 지역의 소득수준 지표, 혁신역량 지표, 인력기반 지표, 산업발전 지표, SOC와 지자체의 재정력 지표로 구성
- 지역의 소득수준 지표는 지역경제의 산출지표로서 지역경제력을 반영하는 가장 일반적인 대표지표
- 혁신역량 지표는 지식기반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투입지표임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토대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지식자원의 부존 정도, 지식활동에 대한 투자, 지식자원 및 투자의 성과로 평가
- 지역의 인력기반 지표는 지역경제의 노동투입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인력투입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지역인구의 변화율, 인구의 경제활동참여 정도, 인력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수준으로 평가

- 산업발전 지표는 지역의 산업발전 수준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의 발전 정도와 산업구조로 평가
- 지역의 SOC 시설은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정도를 평가하며, 지역산업의 발 전여건을 반영
- 지자체의 재정력은 지역의 산업발전 지원과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원의 공급능력을 반영

## □ 지역발전지수의 부문별 세부지표

<표 3-3> 지표의 선정(안)

구 분		지표	내용
	소득수준	지역 생산	-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22.4)	주민 소비	- 1인당 연간소비자출액
	구 기사가	지식 자원	- 총취업자 대비 고급인력 비중
	혁신역량     (12.9)	지식 투자	-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비중
	(12.7)	지식성과	- 인구대비 산업재산권 등록건수
		인구변화	- 전년대비 인구성장률
-1.41	인력기반	ماتات	- 총인구 중 14~64세 인구 비중
지역 경제력지수	(6.0)	인구구조	- 노령화지수(= 65세이상 인구/15세미만 인구)
(72.6)		교육정도	- 15세이상 인구 중 고졸이상 취업자 수 비중
	산업발전 (18.9)	산업발전 정도	- 총인구 대비 총사업체종사자 수 비중
			- 총취업자 대비 제조업종사자 수 비중
		산업구조	- 취업자 중 지식기반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 스업 종사자 수 비중
	gog -11-1-1	기비 기 1	- 도로율
	SOC·재정력 (12.4)	기반시설	- 총인구 대비 자동차등록대수
		지자체 재정력	- 재정자립도
주민 활력지수 (27.4)	주거생활	주택수급	- 주택보급률
		주거의 질	- 주거면적 기준 저급주택 비중
	(5.5)	생활기반 시설	- 1인당 상수도급수량

구 분		지표	내용
	그 그 시기	경제활동 참여 정도	- 경제활동참가율
	근로여건 (5.9)	고용현황	- 실업률
	(3.7)	취업기회	- 구인배수(= 구인자 수/구직자 수)
	= 0 Al=1	교육왕동	- 총인구 대비 전문대학 이상 학생 수
	교육여건 (9.1)		- 총인구 대비 전문대학 이상 교원 수
		교육시설	- 총인구 대비 사설학원 수
	의료·복지 (4.7) 문화·환경	의료수순	- 총인구 대비 의료인력 수
			- 총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
		복지시설	- 총인구 대비 사회복지시설 수
		문화 및 여가 시설	- 총인구 대비 도서관 및 체육문화 시설 수
	(2.2)	환경여건	- 총인구 대비 오염물질배출시설 수

<그림 3-2> 지역발전지수 지표체계



### □ 특이성

- 개별지표들은 서로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부문별 통합을 위해 척도를 통일하였고, 이를 위해 개별지표들을 표준화하여 사용하며, 지역경제력지수의 5개 부문과 주민활력지수의 5개 부문별로 표준화된 지표값을 종합함에 있어서는 부문내 가중치를 적용
- 또한, 지역경제력의 5개 부문별 지표와 주민활력의 5개 부문별 지표를 종합 하여 각각 지역경제력지수와 주민활력지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조 사를 통해 종합화를 위한 가중치를 산정하고 적용

## 4.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과 활용(2011)

## □ 개요

-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의 발전 정도 및 잠재역량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부문별로도 진단·평가가 가능한 실용적 지표 개발을 위해 4개 영역 20개 변수를 기준으로 지역발전지수를 도출
- 지역발전지수는 생활서비스지수, 지역경제력지수, 삶의여유공간지수, 주민 활력지수의 합으로 구성되며, 어떤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인지를 객 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간 비교할 수 있는 종합지수

## □ 지역발전지수의 부문별 세부지표

<표 3-4> 지표의 선정(안)

구 분		지표	내용
	기초 생활여건	주택신규화	20년 미만 주택비율
		식수보급현대화	상수도보급률
생활		하수처리현대화	하수도보급률
서비스	그 0 서기	공교육기반	1k㎡당 학교수(초·중·고)
_	교육여건	사교육기반	인구 1천명당 사설학원 수
	보건・	의료서비스 질	인구 1천명당 의료인 수

구 분		지표	내용
		의료시설기반	인구 1천명당 병상수
	복지여건	아동복지기반	영유아(6세미만) 1천명당 보육시설 수
	국시의신	노인복지기반	고령인구(65세 이상) 1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시어기바	사업체기반	총 사업체수
지역	산업기반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대비 사업체 종사자수
경제력	소득수준	소득수준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지자체 재정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녹색휴양기 반	녹색휴양공간	1인당 공원면적
삶의	녹지기반	녹지확보율	녹지율(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면적/토지면적)
여유 공간	문화체육 기반	문화시설	인구 1천명당 영화관, 공연장, 전시실, 시·군민회관, 도서관수
		체육시설	인구 1천명당 체육시설 수
주민 활력	인구변화	인구증가율	연평균 인구증가율(최근25년간)
	인구구조	고령화율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인구활력	출생률	해당연도 중앙인구 1천명 대비 출생자비율(組出生率) * 중앙인구는 7월인구기준 사용

#### □ 특이성

- 각 영역별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객관적 통계자료를 토대로 변수를 선정하고 지수를 구성하되, 다공선성 및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각 영역별 지수를 구성하는 20개 세부변수를 채택하여 활용하였으며, 변수의 값은 Z-score로 표준화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가조사를 통해 영역별 지수의 가중치를 반영
- 지역발전지수(RDI) = (0.352×생활서비스지수) +(0.324×지역경제력지수) + (0.130×삶의여유공간지수) + (0.194×주민활력지수)
- 또한 지역발전지수 개발과 함께 정책현안 측정을 위한 특수지수로서 '창조 지역지수', '생활편의기반지수', '녹생성장기반지수'를 산출, 비교하여 기초 지자체의 종합적 지역진단이 가능하도록 함

## 5.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2013)

## □ 개요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충실한 지표를 선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대상지역 4가지 선정기준을 따른 지표를 선정

## □ 지역발전지수의 산출지표

<표 3-5> 지표의 선정(안)

구 분	지표	내용
이그하려	인구증가율	-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증가율
인구활력	고령화율	-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도시 경제기반	15세 이상 인구대비 2·3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	- 15세 이상 인구대비 2·3차산업 종사자 수 비율
	1인당 지방소득세	- 1인당 지방소득세
도시재정	재정력지수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최 근 5개월 평균
도시 기반시설	상·하수도 평균보급률	- 상수도보급률과 하수도보급률의 평균
	도로율	- 행정구역면적 대비 도로 점유면적
	행정구역면적 대비 전철역 수	- 행정구역면적 대비 수도권전철, 광역철도, 도시 철도 역 수

## □ 특이성

- 지역발전지수를 하나의 통합지표(aggregate indicator)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선정한 8개의 지표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
- 선정된 8개의 지표는 각각 측정단위(scale)와 분포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일 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표가 지역발전도 측정 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가 상이하고 시대별, 경제·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 할 수 있음

○ 따라서 부문별 통합을 위한 척도의 통일이 필요하므로 정규화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개별지표들을 표준화

$$Z_i = rac{X_i - \overline{X}}{S}$$
, (S=표준편차,  $\overline{X}$ =표본평균)

## 6.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쇠퇴 특성 분석(2015)

## □ 개요

○ 인천시를 대상으로 기성가지내 120개 행정동 단위로 쇠퇴진단지표를 구축 하여 쇠퇴실태 및 특성을 진단하고, 복합쇠퇴지수를 산출하여 인천의 복합 적 쇠퇴특성을 분석

지표1 지표2 지표3 ··· 지표12 지표13

가중치
(요인분석)

인구사회
부문

+ 산업경제
부문

부문

복합쇠퇴지수

<그림 3-3> 복합쇠퇴지수의 개념

## □ 복합쇠퇴지수 쇠퇴진단지표

<표 3-6> 대표지표 변환

변환유형	변환방법
① 구성비치환	- 변환값 = 100% - 원래값% - 긍정적 의미의 구성비를 나머지 요소의 구성비로 전환 예) A비율 → 비A비율
② 상대감소지수	- 변환값 = (최대값-원래값) / (최대값-최소값) × 100 - 원래값이 긍정적 추세를 의미할 때 쇠퇴추세로 바꾸면서 음수제거예) 증가율 → 상대감소지수
③ 역입지계수 (R-LQ) *Reverse LQ	- 변환값 = (최대값-원래값) / 최대값 × 100 - 긍정적 총량 지표를 쇠퇴의미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로 전환 지표값 범위 : 100 ≥ R-LQ ≥ 0 R-LQ = 100 : 원래값 = 0 R-LQ = 0 : 원래값 = 최대값

## <표 3-7> 지표의 선정(안)

구 분	대표지표		변환	쇠퇴진단지표
	1	인구10년 증가율	2	인구상대감소지수(10년간)
이기기체	2	독거노인가구수		독거노인가구수
인구사회	3	1인가구비율		1인가구비율
	4	1천인당수급자수		1천인당수급자수
	5	전산업종사자증감률	2	종사자상대지수(4년간)
	6	지식기반산업종사자수	3	지식기반산업종사자수 R-LQ
시아카케	7	제조업종사자증감률	2	제조업종사자상대감소지수(4년간)
산업경제	8	도소매종사자증감률	2	도소매종사자상대감소지수(4년간)
	9	음식숙박종사자증감률	2	음식숙박종사자상대감소지수(4년간)
	10	문화소비종사자수	3	문화소비종사자수 R-LQ
	11	노후건축물비율		노후건축물비율
물리환경	12	소형주택비율		소형주택비율
	13	신규주택비율	1	비신규주택비율

- 지역쇠퇴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각의 쇠퇴지표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쇠태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지표의 쇠퇴실태 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지역 간 쇠퇴실태를 통해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하지만, 한 가지 속성만을 보기 때문에 지표 간 영향을 가지는 복합적 쇠퇴 특성을 살펴보기 어려운 점과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 어떠한 지표가 지역쇠 퇴를 파악하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
- 따라서, 개별 지표간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복합 지수(composite indices) 산출방식을 채택

### 7.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향(2012)

### □ 개요

○ 지역 전반에서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지역쇠퇴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전반 의 쇠퇴실태 및 관련 지역재생정책 분석으로 통하여 쇠퇴지역의 재활성화 를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쇠퇴지표를 고안

## □ 지역쇠퇴지표

<표 3-8> 지표의 선정(안)

구 분	세부지표	산출식	단위
	연평균인 <del>구증</del> 감률	-	%
	순이동률	순이동자수 / 총인구 × 100	%
	노령화지수	65세이상 인구 / 15세미만 인구	%
인구사회	평균교육연수	재학생 제외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	년
	독거노인가구비율	65세이상 1인가구 / 총가구수 × 100	%
	천명당 기초생활수급자수	-기초생활수급자수 / 총인구 × 100	명/천인
	천명당 소년소녀가장수	소년소녀가장 수 / 총인구 × 100	명/천인

구 분	세부지표	산출식	단위	
	재정자립도	-	%	
	1인당지방세	-	천원	
	지가변 <del>동률</del>	-	%	
사이거게	천명당종사자수	총종사자수/ 총인구수 × 100	명/천인	
산업경제	사업체당종사자수	총종사자수 / 총사업체수	명/개소	
	제조업종사자비율	제조업종사자수 / 총종사자수 × 100	%	
	고차서비스업종사자비율	고차서비스업종사자수 / 총종사자수 × 100	%	
	천명당도소매업종사자수	도소매업종사자수 / 총인구수 × 1000	명/천인	
	노후주택비율	1980년도 이전 건축주택수 / 총주택수 × 100	%	
민 <u></u> 기치.거	신규주택비율	최근 5년간 건축주택수 / 총주택수 × 100	%	
물리환경	770	공가율 공가수/ 총주택수 × 100		
	6/1팔			
	2010년의 경우 : (2010년 값 - 2005년 값) / 2005년 값 × 100			
노령자수 변화, 평균교육연수 변화, 독거노인가구비율 변화, 천명당 기초생활수급자수 변화, 재정자립도 변화, 1인당 지방세 변화, 천명당 종사자수 변화, 사업체당 종사자수 변화, 제조업 종사자 비율 변화, 고차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변화, 천명당 도소매업 종사자수 변화, 신규주택비율 변화, 공가율 변화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쇠퇴 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각 영역별로 대표적인 지 표를 선정하되, 가능한 간소화된 지표 체계를 수립
- 각 영역별로 다양한 지표들 가운데 상관관계가 높으면서 대표성이 강하고 지표별 측정방법과 측정과정이 단순하고 명료한 지표들을 5가지 기준을 통 해 선정
- 대표성을 확보한 지표 : 지역간 쇠퇴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영역의 지표 가 중복되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영역별 유형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대표성을 지닌 지표를 선정

- 지표의 방향성: 지표별 쇠퇴순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을 방향성이라고 하며, 쇠퇴를 나타내는 지표는 일정한 패턴이 있으나 지표별 쇠퇴한 영역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향성이 일치할 필요성은 없음
- 측정의 단순성 : 선정 지표는 수치화가능성을 전제로 측정방법 및 측정과 정, 측정식이 간단하고 단순명료한 지표로 선정
- 이론적 근거 : 기존의 쇠퇴지표와 관련한 해외 및 국내 연구 논문 검토에서 지역 쇠퇴지표로서 중요도가 높다고 언급하는 지표를 선정
- 자료취득 가능성 : 선정된 지표는 시군구 단위로 자료취득이 용이해야 하며, 변화율을 보기 위해서 최소 10년 이상 축적된 자료를 사용

<표 3-9> 주요 선행연구의 지역쇠퇴지표

구분	영역	쇠퇴지표
	인구	- 노령화지수, 순이동률, 01-05 평균성장률, 1인 독거노인가구비율, 천명당 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
국토해양부	사회	- 평균교육년도, 천명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천명당 병상수
도시재생 사업단 (2009)	경제	- 천명당 종사자수, 사업체수당 종사자수, 제조업종사자비율, FRE 종사자 비율,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징수액, 지가변동율(주거), 지가 변동율(상업), 1인당 지역가입자보험료, 천명당 도소매종사업자수
	물리	-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공가율
3 2 0 A	인구사회	- 연평균 인구 증감률, 노령화 지수
김 <del>준용</del> 외 (2009)	산업경제	- 천명당 종사자수, 사업체당 종사자수, 제조업체 증감률
(2007)	보건복지	- 천명당 병상수, 의료인원 증감률, 복지기관 증감률
	인구사회	- 노령화지수, 노령화지수 증감률, 인구 증감률, 독거노인가구비율, 독거노인가구 증감률
이희연 외 (2010)	산업경제	<ul> <li>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종사자수 증감률, 사업체당 종사자수, 사업체 증감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소형주택가구 비율, 상업활력지수(인구 천명당 음식숙박·도소매업 종사자수), 상업활력지수 증감률</li> </ul>
	물리환경	-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바버중 이	인구사회	- 연평균인구 증감률, 고령화 지수
박병호 외 (2010)	산업경제	- 총사업체수 증감률,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사업체당 종사자수, 취업기회,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제조업체 증감률

구분	영역	쇠퇴지표	
문화복지		- 인구 천명당 도서관 좌석수, 인구 천명당 병상수, 의료인원 증감률,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증감률, 소년소녀가장 세대 증감률	
	물리환경	- 도로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농가비율	
	인구사회	- 인구증가율, 순이동률, 노령화지수, 평균교육연수, 독거노인가구비율, 인구 천명당 소년소녀가장가구원 수, 인구 천명당 기초생활보급자 수	
이영성 외 (2010)	산업경제	-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사업체당 종사자수, 제조업 종사자 비율, 고차 서비스 산업 종사자 비율, 1인당 건강 보험료, 인구 천명당 도소매업 종사자수,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지가변동률(주거, 상업)	
	물리환경	-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공가율	
	변화율	- 인구증가율, 순이동률, 지가(주거, 상업) 변화율, 1인당 보험료를 제외한 15개 지표의 변화율	

## 8. 도시쇠퇴 수준 및 특성 유형화(2010)

## □ 개요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쇠퇴지표를 분석하여 쇠퇴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쇠퇴평가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유형화모델 구축 및 적용을 통해 쇠퇴도시의 유형화 및 현황 파악

## □ 도시쇠퇴 평가지표

<표 3-10> 지표의 선정(안)

구 분	평가지표	가중점수	0에 가까울수록 쇠퇴 <sup>5)</sup>	1에 가까울수록 쇠퇴 <sup>6)</sup>
인구	- 인구증감률	0.252	0	
친구	- 노령화지수	0.122		0
7]] 7-]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0.111	0	
재정	- 재정자립도	0.101	0	
산업	- 제조업종사자비율	0.065	0	
산립	- 천명당 총종사자수	0.115	0	
사회	- 천명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0.087		0
다취 H 크	- 천명당 공공도서관좌석수	0.059	0	
문화복지	- 천명당 의료병상수	0.088	0	

### 특이성

○ 도시쇠퇴를 도심쇠퇴, 산업쇠퇴, 재래시장쇠퇴, 도시차원의 쇠퇴로 구분하여 도시의 쇠퇴현상과 요소를 체계화하였으며, 도시쇠퇴 진단지표를 인구, 재정, 산업, 사회, 문화복지의 5가지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부여

## 9. 도시재생 지역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연구(2015)

### □ 개요

○ 순차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신청지역 평가를 위해 도시재생 지역선정 평가지표를 제시

## □ 도시재생 평가지표

<표 3-11> 지표의 선정(안)

구 분	영역	평가지표	
		노인인구비율	
	이기티셔	인구증감률	
	인구특성	전출입자 비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교육시설 수	
	교육·문화·복지	복지시설 수	
인구사회	□ 亚丑· 도对· <del>르</del> 기	문화시설 수	
		커뮤니티시설 수	
		지역 재해율	
	환경·위험·재해	지역 범죄율	
		교통사고율	
		공해 및 소음	
		주거환경 만족도	
		재정자립도	
	소득 및 경제활동	기초생활 대상자 비율	
산업경제	그득 옷 성계활동	자가 비율	
		실업률	
	부동산 가치	지가 상승률	

<sup>5)</sup> 표준화 값 산출방식 : 표준화함수 값

<sup>6)</sup> 표준화 값 산출방식 : 1.0 - 표준화함수 값

구 분	영역	평가지표
		지가수준
		주택가격 변동률
		사업체 수 증감률
	산업	종사자 수 증감률
		산업인구 종사자 비율
		주민동의율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추진 여건	총사업비 회수 소요시간
		수요(구매력)
		사업 NPV
		1인당 주거면적
	토지이용	주택밀도
		국공유지 비율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건축물 상태	건축물 유형
		무허가 건축물
물리환경		공가비율
	_	공공시설 개수
	공공성	기반시설 공급률
		공원녹지비율
		4m미만도로 비율
	접근성	대중교통체계
		시설접근성

○ 도시재생 지역선정 평가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을 분석하여 부문별 구성요인과 지표를 도출

## 10.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2015)

## □ 개요

○ 20년간 우리나라 시군구별 인구, 경제, 환경적 축소 및 주거안정성 지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축소 추이를 탐색하였으며, 그동안의 도시쇠퇴 지표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쇠퇴 혹은 축소의 양상을 분석

- 다양한 도시축소 지표들 중, 국내에서 구득가능하고 대표성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20년간의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광역시도 단위의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경향 파악을 시도하고 시군구, 읍면동 단위 자료 구축이 가 능한 지표들에 대하여 국소단위 파악도 시도
- □ 도시축소 현황 관련 검토 지표(1990~2010)

<표 3-12> 지표의 선정(안)

구 분	세부영역	자료내용	단위
		총인구수	명
		총내국인수	명
		총외국인수	명
		외국인비율	%
		면적	km²
		면적	m²
	인구 구조	인구밀도	명/km²
	ماع جما	1인가구수	호
이크기청		합계출산율	명
인구사회		가임여성비율	%
		15세미만 인구수	명
		65세이상 인구수	명
		노령화지수	%
		전입자수	명
	인구 추이	순이동자수	명
		대학생수	명
	사회 구조	독거노인가구수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명

구 분	세부영역	자료내용	단위
		일반기구수	호
		자가가구수	호
	소득 수준	자가비율	%
		자동차보유가구수	가구
		소득세할주민세	원
		경제활동 인구수	명
		종사자(취업자)수	명
경제산업	고용 수준	실업률	%
		사업체수	호
		사업체당 종사자수	명
	אומ סו	도소매업 종사자수	명
	산업 구조	상업활력지수	%
	재정 기반	지가변 <del>동률</del>	%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	-
		재정자립도	%
		전체 주택수	호
		노후 주택수	호
	7 -1 -1 -1	신규 주택수	<u>ই</u>
물리환경	주거 환경	노후주택비율	%
		신규주택비율	%
		공가수	호
	기반 시설	도로면적	m <sup>2</sup>
	기반 시설	도로율	%

○ 인구의 감소 및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도시축소가 반드시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간의 이용주체인 사람이 적어져서 이용할 공간의 범위가 적어졌다면 이에 맞게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유흥공간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도시축소 검토시 주거환경의 안정성, 지속성의 지표를 함께 검토

<표 3-13> 주거 안정성 현황 관련 검토 지표 (1990~2010)

구 분	평가지표	단위
	자가보유율	%
	전월세비율	%
	주택보급률	%
, 고기이나 서	노후주택비율	%
주거안정성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u>ই</u>
	단독주택비율	%
	주택지비율	%
	1인당 주거지역면적	km²
주거수준	인구 천명당 주택 수	호
조키시도 서	거주기간별 주택 수	가구
주거이동성	주거이 <del>동률</del>	%
조기 <b>기</b> 체하거	풍수해 피해액	백만원
주거저해환경	인구 천명당 범죄 발생건수	건
	인터넷 보급률	%
	노인복지시설 수	개
	아동 복지시설 수	개
기반시설	성인 복지시설 수	개
	교육시설 수	개
	장거리 통근비율	%
	1인당 공원면적	m²
커뮤니티	커뮤니티 등로자원봉사자수	

## 11.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2016)

## □ 개요

○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의 2014년 '지방소멸'(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라는 책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올 것이라고 예측

- 일본은 2008년부터 순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인구감소의 속도가 도쿄 보다 지방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에 주목
- 과거 산업화 시기의 청년층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 → 분수효과 → 지방
   의 동반성장 → 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으나,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 하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선순환이 어려움
- 매년 6~8만 명이 대도시권으로 유입될 경우 2040년 경 '20~39세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시구정촌이 무려 896개(전체의 49.8%)에 이를 것으로 추정
-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주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3.1%로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므로 '지방소멸'은 우리에게 별로 상관없는 미래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지방의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

### □ 지자체 소멸위험지표

<표 3-14> 지자체 소멸위험지표

구 분	평가지표	단위
	20~39세 여성인구비중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	%
	20~39세 여성인구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의 상대비	%
017	인구 순유출입	명
인구	여성인구 순유출입	명
	10년 대비 인구증감률	%
	10년 대비 여성인구증감률	%
	합계 출산율	

- 마스다 히로야가 사용한 접근방식과 지표들을 차용-변용하여 7가지 분석을 통하여 지방소멸이 한국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지를 살펴봄
- 특히 2004년과 2014년 동안 고령인구와 젊은 여성 인구 비율이 거의 1:1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두 지표 간의 상대비가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폭이 크면 클 수록 인구소멸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측
- 이것은 가임여성의 90% 이상이 이 연령대에 속하는 젊은 여성인구이므로 한 사회가 20~30년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는 핵심지표이기 때문
- 따라서,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사회-지역-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젊은 여성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생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젊은 여성들에 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 12. 지방소멸 가능성에 따른 지역공공서비스 개선방안 :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2016)

### □ 개요

○ 통계청이 발표한 2040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2040년 인구추계와 자연 중감만을 고려한 2040년 인구추계 결과와의 차이를 사회적 중감에 따른 인 구 변동 요인으로 가정하고, 이를 반영해 최종적인 광주전남지역의 읍면동 5세 간격별 2040년 인구를 추계

## □ 지방소멸 예상 지역 선정 지표

<표 3-15> 광주전남 소멸 예상 지역 선정 조건

행정구역	평가지표	소멸 예상 읍면동 선정 조건
	인구감소	인구 488명 이상 감소한 동 지역
광주광역시	가임여성 변화율	-44.75% 이상 동지역
	고령화율	2040년 고령화율 37.19% 이상 동지역
	인구감소	인구 505명 이상 감소한 읍면동 지역
전라남도	가임여성 변화율	-27.56% 이상 읍면동 지역
	고령화율	2040년 고령화율 45.47% 이상 읍면동 지역

## □ 특이성

○ 주로 시군단위 분석에 그치는 지방소멸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시군의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소멸 가능 분석 단위를 확대하여 2040년 소멸, 2040년 이후 소멸, 2040년 관리필요, 2040년 소멸안전지역 등으로 구분

## 제2절 해외사례

### 1. 일본, 지방소멸론(2016)

### □ 개요

- 일본창성회의는 2013년 11월부터 월간지「中央公論」에 게재한 일련의 원고 들을 정리하여 2014년 5월에「지방소멸-도쿄 일극 집중이 초래하는 인구급 감(표제: 896개의 시정촌이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 의 책을 출판
- 이 리포트는 젊은 여성인구(20-39세)의 감소에 주목하여 2040년에 일본 1,799개의 시구정촌 중에서 896개가 소멸될 것이라는 주장
- 마스다 리포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농촌지역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가속 화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을 발생시켜서 '지방소멸'을 초래하며, 동시에 의 료·보건서비스 공급(1인당의사수나 개호시설인력의 부족 등)가 크게 부족한 대도시권에서는 의료·개호인력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존재
- 둘째, 지방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마스다 리포트가 제시한 것은 핵심출산가능연령인 '20~39세' 젊은 여성인구로 마스다 리포트는 2005년~2010년에 발생한 지역별 인구변동이 204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시구정촌별 인구전망을 실시
- 이러한 인구전망에서 2040년에 20-39세 여성 수가 2010년 수준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896개 지역을 '소멸가능성도시'로 분류
- 이 중에서 523개 시구정촌은 인구가 1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셋째,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순유출은 일본의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보육·육아 환경이 열악하고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도시 로의 청년인구의 집중은 일본 전체의 출산율 수준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인구를 더욱 감소시킴

- 넷째, 이와 같은 지역 간 인구 양극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균형(평등)주의적 지역 발전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대신에 지역중 핵도시와 광역블록권(도주제의 실시)을 설정하고 기존 도시(지역)의 컨팩트시티화(compact city)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추구해야 함
- 다섯째, 인구감소에 의한 자치단체 존속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2013년에 1.41이었던 합계특수출생률을 2025년까지 1.80으로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업별로 사원의 출생률을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하여 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아동 양육가정에 보육시설이 구비된 아파트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
-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간 인구양극화, 특히, 도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지방의 인구감소 흐름을 저지하고 일본전체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창생의 필요성, 기존 지역정책 평가 및 향후 지방창생전 략 등을 포함한 「지방창생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발표

## □ 콤팩트시티 실현을 위한 지역공간구조 재편 : Compact

- 2015년 일본 정부는 인구감소와 거대재해 임박이라는 위기 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을 수립하여 '대류촉진형 국토'형성을 위한 국토·지역 공간구조의 기본구상으로 「콤팩트 네트워크」전략을 제시
- 대류촉진을 위한 국토·지역 공간형성전략에서는 필요 기능에 따른 권역인 구 확보를 위해 대도시, 지방도시, 중산간지역 등 도시계층별 발전방향과 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공간구조의 재편을 촉구
- 도시계층별로 콤팩트시티 실현을 위한 지역공간구조 재편을 살펴보면 대도 시권의 경우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일상생활 권역에서 적 절히 제공되는 콤팩트한 공간으로 조성
- 대도시 교외부를 중심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료·복지수요 급증으로 의료·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역활력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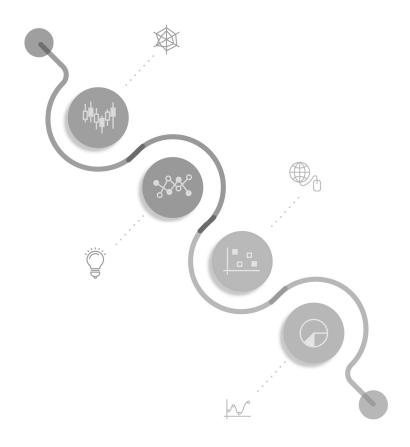
- 대도시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역포괄케어' 실현이 가능하도록 기존 스톡 (stock)을 활용하여 의료·복지기능을 적절히 배치
- 지방도시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간 전체의 관점에서, 다 극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로 조성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전개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콤팩트한 공간 조성이 요구
- 고령자와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실현하고, 재정·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을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해 시정촌별로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 중
- '입지적정화계획'은 도시전체 마스터플랜으로서, 도시계획과 공공교통의 일 체화를 통해 콤팩트시티와 네트워크화를 실현토록하며 지역 내 공공시설 활용 및 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목적으로 수립
- 도시공간구조의 콤팩트 수준(compactness) 측정을 위해 생활편리성, 보건복지, 안전·안심, 지역경제, 행정운영, 에너지·저탄소 등 6개 분야 평가지표· 측정기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
- 중산간지역의 경우 작은 거점과 주변집락 간 연계를 통해 '집락생활권'을 형성
- 소학교 등 다수의 집락을 포함한 지역에서, 생활서비스 기능과 지역활동거 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 모아 주민의 편리성을 증진
- 작은거점과 주변집락을 커뮤니티 버스 등 교통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람, 물품, 서비스 순환 등 교류거점 역할을 수행
- □ 지역간 연계 촉진과 지역공공교통체계 강화 : Network
  - 인구감소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증가하는 고령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생활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연계와 지역공공교통 네트워크 전략을 강화

- 의료, 복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서비스 공급이 원활하도록 인구 30만 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연계중추도시권 및 정주자립권 형성을 촉진
- 지방중소도시는 도시기능유도구역 및 거주유도구역을 거점으로, 중산간지역은 작은거점(compact village)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정비하고, 지역공공교통망 확충 및 수요관리형 교통체계 운영으로 주민생활의 편리를도모

- 2014년 발표된 마스다 리포트는 2040년에 일본 시군구 정의 49.2%가 소멸될 것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여 언론에 대서특별 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고, 또한 제 2기 아베정부의 지방정책인 지방창생전략수립에 반영되었으나, 마스다 리포트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부정적인 편
- 마스다 리포트는 2040년에 20-39세 여성 인구 수가 2010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거나 총 인구가 1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 지역을 소멸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두 기준 모두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비판이 일본 내 제기
- 즉, 젊은 여성인구 전망에 근거하여 30년 이내에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지역 이 소멸될 것으로 진단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도 사례를 찾기 어려움

# 제4장<sup>\*</sup> 지정기준 개발 및 분석

제1절 지정기준 개발 • 제2절 대안별 시뮬레이션 결과



# 제 4 장

## 지정기준 개발 및 분석

## 제1절 기정기준 개발

### 1. 지표개발 방향 설정

- □ 지역의 발전정도로의 인구 고려
  - 지역구분의 목표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지역구분이 차등화 지원의 토대가 됨을 고려할 때, 지역구분의 방향은 '지역의 발전정도'를 나 타내는 척도가 합당
  - 발전에 대해서는 모든 목적을 포괄할 수 있는 합치된 견해가 없으며 강조점 에 따라 정의가 다양함
  - O 가장 포괄적 관점에서 인구의 증가를 고려
  -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측면에서 생산력 증가와 지역사회의 복지수준 향상 으로 발전을 정의하기도 함
  - 양적인 변화 및 질적인 변화로 정의하는 관점
  - 양적 성장에 더해 경제구조에 있어서의 근본적 변화, 발전에의 참여와 편익 의 향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을 정의
  - 경제성장론자들은 발전을 기술의 발달에 의해 노동, 자본, 복지 등 생산요 소의 산출량의 증대로 정의
  - 발전의 개념을 성장으로 인식하여 산출량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 및 사회적 관점은 간과
  - 발전정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는 외국사례에서도 인구적 측면, 소득측면, 경제적 측면, 재정 측면, 복지 및 인프라 측면을 발전정도를 구성하는 요소 로 인식하고 있음

<₩	4-1>	박전에	내하	지표	저이
$\sim$ TT	4-1/	= '. ''\		$\mathcal{N}$ ITT	

구 분	해당지역	비고
인구 측면	-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핀란드, 포르투칼, 벨 기에, 스웨덴 등	- 낙후지역 및 차등 지원지역분류
소득·고용측면	-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네델란드, 오스트리 아,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	상동
산업·경제측면	-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벨기에, 핀란드, 포르투 칼 등	상동
재정측면	- 일본 등	상동
복지·인프라 측면	- 프랑스, 독일, 포르투칼 등	상동

- 지금까지 언급한 발전정도의 개념정의를 종합하면, 인구적 측면의 발전, 경제적 측면의 발전, 재정 측면의 발전, 사회적 측면의 발전, 물적 측면의 발전 전으로 지역발전정도를 정의하고 있음
- 인구적 측면에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소득·경제적 측면에서 소득 및 GRDP가 높을 뿐 아니라 실업율이 낮고, 산업적 측면에서는 고용자가 많음
- 재정적 측면에서는 발전투자 여력이 풍부하며, 복지수준이 높고, 인프라가 높음을 발전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4-2> 발전정도개념의 종합

구 분	내 용	중시요소
포괄적 관점	상향적 변화의 총체	- 인구요소
1 경제 빈 사이스며	생산력 증가, 복지수준향상 (소득, 생산증가, 복지향상)	- 소득 및 생산요소, 인적·물적 요소, 재정적 요소
양적 및 질적측면	성장에 더해 경제구조에 있어서의 근본 적 변화, 발전에의 참여와 편익의 향유	- 성장요소, 복지요소
생산력 증가측면	기술혁신에 의한 노동, 자본 등 투입요 소의 생산성 증가	- GDP 등 생산성 증가요소

○ 지역의 발전정도는 발전정도에 지역의 개념이 추가된 것으로 발전정도를 지역별로 구획

- 발전정도를 구획하는 지역의 범위는 발전정도를 측정 혹은 비교하고자 하는 공간적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군구를 단위로 하면 시군구별 지역발 전도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면 광역자치단체별 발전정도가 됨
- 지역의 발전정도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발전정도가 높은 지역은 발전지역, 낮은 지역은 낙후지역이 됨
- 지역의 발전정도는 낙후정도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으로 발전정도가 높으면 낙후정도가 낮고, 발전정도가 낮으면 낙후정도가 높은 속성을 지니고 있음

### □ 지역인구변화의 재구성

- 지역인구변화에 대한 개념정의의 측면은 지역구분의 준거인 '지역의 인구 변화'를 설정하는 토대가 됨
- 지역의 인구에 기반한 지역구분을 인구변화에 근간을 두되, 재정건정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인구변화 상쇄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
- 따라서, 인구 측면, 소득재정적 측면으로 구분이 가능

### 2. 지표의 구성

- O 인구 및 소득재정으로 구분
- 인구는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및 젊은여성인구비율 로 구성
- 2015년 기준 과거 15년 자료 증감, 3년 평균을 활용
- 과거의 지표 흐름을 증가율로 반영
- 청주, 청원, 마산, 창원, 진주는 통합기준을 적용하여 반영
- 세종시,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분석에서 제외

## <표 4-3> 지표구성(안)

구분	세부영역	지표	비고
	인구증감률	총인구 변화율	인구추이
017	노령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수/총인구수	
인구	생산가능인구비율	15~64세 인구수/총인구수	인구구조
	젊은여성인구비율	20~39세 여성인구수/총인구수	
소득재정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재정기반

## <표 4-4> 지표구성 선정사유

구분	세부 영역	산식	필요성	근거
	인구 증감률	총인구 변화율	● 인구 변화 총량 반영	<ul> <li>개별 인구구성 요인 변화의 최종 결과</li> <li>지역 인구변화의 토대로 활용</li> <li>EU, 미국, 일본</li> </ul>
인구	노령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수/총인구수	● 정체 인구 고려 ● 지역 기대연령 고려요인 ● 생산인구의 부담정도의 고려	<ul><li>65세 이상 인구의 정체 정도 반영</li><li>EU</li></ul>
	생산가능 인구비율		<ul> <li>지자체 유지를 위한 고용 근원 대리지표</li> <li>과거 인구증가요인(출산) 변화의 반영 정도</li> </ul>	<ul> <li>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반영</li> <li>지역생산 원동력 및 경제 운영 중심체</li> <li>프랑스, 벨기에, 영국</li> </ul>
	젊은여성 인구비율	20~39세 여성인구수 /총인구수	• 미래 가용인구의 반영 필요	<ul><li>미래 가용인구 확보 근원</li><li>일본</li></ul>
소득재정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 지역의 소득 공급 파악 을 위한 대리지표	<ul><li>소비 및 부가가치 생산 근원</li><li>EU, 일본, 독일</li></ul>
		재정자립도	● 지역의 지자체 유지능력 제고	<ul><li>지역 유지 근원</li><li>일본</li></ul>

### 3. 지정기준 설정

- O 인구감소지역 추출을 위한 대안은 4개로 구성
- 1차적으로 자치구의 유무에 따라 지역을 구분한 후 자치구를 제외하고 시 구을 대상으로 대안 설정
- 2차적으로 인구 및 소득재정을 고려하여 지역에 반영하여 대안 설정
- 분석을 위한 기준은 2015년 기준 과거 10년간의 자료 변화를 반영
- 모든 지표는 증가율을 기초로 활용하며, 이중 출생, 사망, 유입, 유출에 대한 인구변화는 연평균을 적용
- O 가중치는 동등 가중치를 적용
- 가중치설정으로 인한 자위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등 가중치를 전제로 분석
- 인구감소의 지표는 인구변화를 기본으로 하며, 1인당 소득세, 재정자립도를 통해 보정
- 과거 10년치 증가율을 적용
- 시군별 평균과 부(-)적 인구변화를 적용
- 출생자수, 전입인구, 15세미만인구, 경제인구비율, 인당소득세, 20-39젊은여 성인구비율은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하향 지역일수록 인구감소지역에 근접 한 것을 의미
- 사망자수, 전출인구, 65세이상인구는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상향 지역일수 록 인구감소지역에 근접한 것을 의미
- 인구변화는 부(-)적 성장을 나타내는 지역일수록 인구감소지역에 근접한 것을 의미

<₩	4-5>	대아벽	지표구성

구분	지표
1안	출생자수+사망자수+전출인구+전입인구+고령화지수+경제활동인구비율 +인당소득세+재정자립도+20-39젊은여성인구비율
2안	출생자수+사망자수+전출인구+전입인구
3안	출생자수+사망자수+전출인구+전입인구+인당소득세
4안	출생자수+사망자수+전출인구+전입인구+재정자립도

- 과거 낙후지역의 선정 방식은 지수환산점수를 종합하여 산출된 결과치를 평균이하인 지역 등의 방식을 고려하여 낙후지역을 산정
- 성장촉진지역 지정 기준
- 1기 선정: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재정력지수, 소득세할주민세를 적용한 낙후도 상위 30% 이내 70개 선정
- 2기 선정: 낙후도+사업집행상황, 사업성과, 기대가능성 종합평가 후 70개 지역 선정
  - 반면,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수환산점수의 도출이 아닌 개별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분석을 위한 지표 변화는 최장 기간 변화 및 최단기간 평균을 종합 하여 고려
  - 인구증감률은 15년간 최장기간 증감변화를 적용
- ※ 1996년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2000년~2015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 고령화율, 생산가능인구비율, 젊은여성인구비율, 소득 및 재정은 3년 평균을 적용
- ※ 고령화율은 고령사회(14%)가 전체의 72%로, 초고령화율(20%, 전체의 46%)적용
- ※ 인구이동 등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최근 3년 변화율을 적용

- O 가중치는 동등 가중치를 적용
- 가중치설정으로 인한 자위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등 가중치를 전제로 분 석
- 인구감소의 지표는 인구부문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인당 주민세, 재정자립 도를 통해 보정
- 5안 : 인구부문 + 소득·재정부문
- 인구감소위험지역
- (충족) 인구감소율 5% 이상
- (충족) 노령인구비율 20% 이상,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68.1%), 젊은여성 인구비율 하위 50%(11.8%), 인당 주민세 하위 50%(105.4천원), 재정자 립도 하위 50%(22.3%)
- 인구감소우려지역
- (충족) 인구감소율 5% 이상
- (1개 이상 충족) 노령인구비율 20% 이상,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68.1%), 젊은여성인구비율 하위 50%(11.8%), 인당 주민세 하위 50% (105.4천원), 재정자립도 하위 50%(22.3%)
  - 6안 : 인구부문
- 인구감소위험지역
- (충족) 인구감소율 5% 이상
- (충족) 노령인구비율 20% 이상,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68.1%), 젊은여성 인구비율 하위 50%(11.8%)
- 인구감소우려지역
- (충족) 인구감소율 5% 이상
- (1개 이상 충족) 노령인구비율 20% 이상,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68.1%), 젊은여성인구비율 하위 5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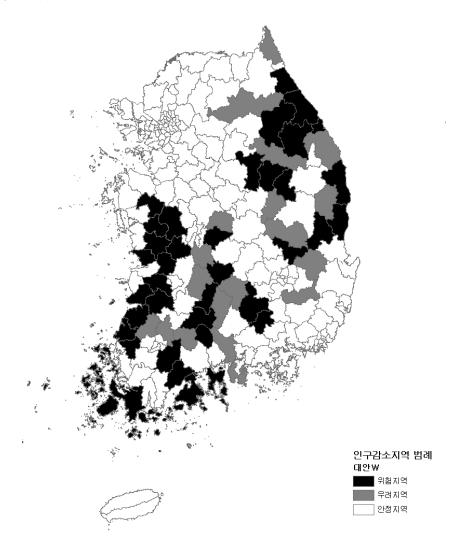
## <표 4-6> 지정기준

인구감소우려지역	인구감소위험지역
■다음 요건 중 마), 바)를 모두 만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군구
가)~라)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시군구	
가) 2000~2015년간 인구감소율이 5% 이상	가) 2000~2015년간 인구감소율이 5% 이상
인 지역	인 지역
나) 2013~2015년 평균 노령인구비율 20%이	나) 2013~2015년 평균 노령인구비율 20%이
상인 지역	상인 지역
다) 2013~2015년 평균 생산가능인구비율 하	다) 2013~2015년 평균 생산가능인구비율 하
위 50%(68.1%)인 지역	위 50%(68.1%)인 지역
라) 2013~2015년 평균 20~39세 젊은여성인	라) 2013~2015년 평균 20~39세 젊은여성인
구비율 하위 50%(11.8%)인 지역	구비율 하위 50%(11.8%)인 지역
마) 2013~2015년 평균 인당 주민세 하위 50%	마) 2013~2015년 평균인당 주민세 하위
(105.4천원)인 지역	50% (105.4천원)인 지역
바) 2013~2015년 평균 재정자립도 하위 50%	바) 2013~2015년 평균재정자립도 하위 50%
(22.3%)인 지역	(22.3%)인 지역

# 제2절 대안별 시뮬레이션 결과

## 1. 1안 분석결과

## 1) 지역구분



## <표 4-7> 인구감소지역 적용 기준(대안: 전체 변수 고려)

구분	지역
하향	출생자수, 전입인구, 15세미만인구, 경제인구비율, 1인당소득세, 20-39 젊은여성인구비율
상향	사망자수, 전출인구, 65세이상인구
(-) 증가	인구변화(출생, 사망, 전입, 전출 합의 연평균 변화)

## <표 4-8> 인구감소지역 구분(대안: 전체 변수 고려)

구분	지역
인구감소우려 (36) → 19	강원 삼척시, 강원 홍천군, 강원 영월군, 강원 고성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진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곡성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천시, 경북 의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도군, 경북 예천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인구감소위험 (80) → 40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제천시, 충북 옥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충남 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여수시, 전남 구례군, 전남 고흥군, 전남 보성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함평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주시,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덕군, 경북 울진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 2) 주요 영향변수 특성

○ 인구변화 중위평균 대비 하위 2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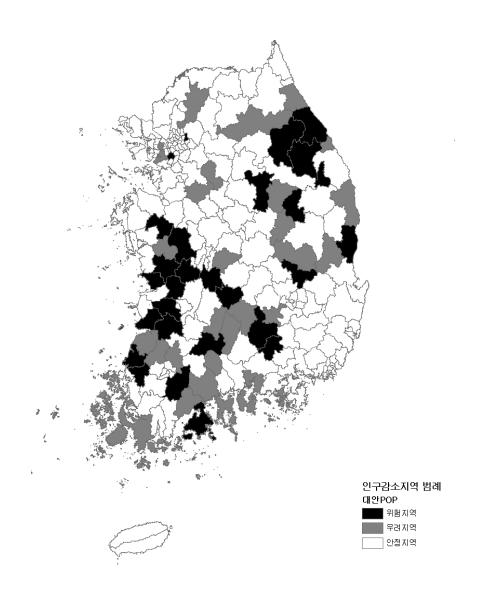
<표 4-9> 인구감소지역별 특성(대안: 전체 변수 고려)

(단위: 개, 천원, %)

구분	우려지역	위험지역
개수	19	40
출생자수	-11.22	-19.98
사망자수	3.20	-1.27
전입자수	-5.60	-14.38
전출자수	-14.10	-24.81
15세미만인구	-30.74	-36.94
65세이상인구	44.40	35.85
15-64세비율	-6.23	-8.61
인당주민세	120.48	93.09
재정자립도	7.71	9.56
20-39여성인구	-3.84	-4.48
인구변화	-1.30	-2.47

# 2. 2안 분석결과

# 1) 지역구분



## <표 4-10> 인구감소지역 적용 기준(대안: 인구변화)

구분	지역
하향	출생자수, 전입인구
상향	사망자수, 전출인구

## <표 4-11> 인구감소지역 구분(대안: 인구변화)

구분	지역
인구감소우려 (34) → 35	경기 의정부시, 경기 부천시, 경기 시흥시, 경기 이천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홍천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옥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장수군, 전북 고창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전남 담양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해남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송군, 경북 고령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진군,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남해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인구감소위험 (2) → 28	경기 안양시, 경기 구리시, 강원 강릉시, 강원 태백시,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남 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북 무주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함평군, 전남 영광군, 경북 영주시, 경북 군위군, 경북 영덕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 2) 주요 영향변수 특성

○ 인구변화 중위평균 대비 하위 35%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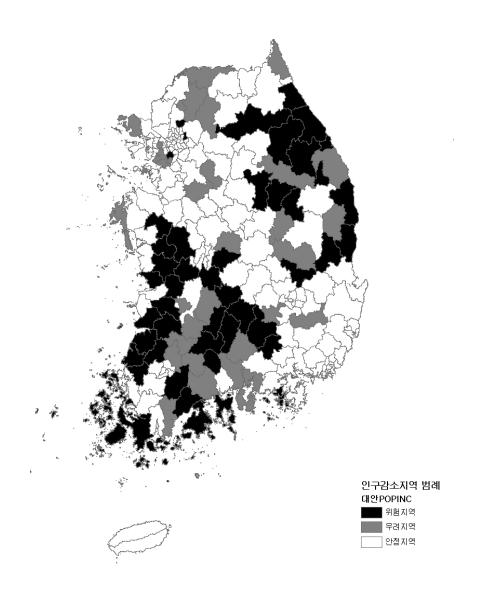
<표 4-12> 인구감소지역별 특성(대안: 인구변화)

(단위: 개, 천원, %)

구분	우려지역	위험지역
개수	35	28
출생자수	-11.00	-26.45
사망자수	3.88	-2.41
전입자수	-15.47	-23.19
전출자수	-23.27	-28.33
15세미만인구	-32.23	-37.55
65세이상인구	42.99	39.38
15-64세비율	-6.04	-7.48
인당주민세	112.13	105.21
재정자립도	7.42	1.69
20-39여성인구	-3.73	-3.82
인구변화	-2.34	-3.22

# 3. 3안 분석결과

# 1) 지역구분



## <표 4-13> 인구감소지역 적용 기준(대안: 인구변화+1인당소득세)

구분	지역
하향	출생자수, 전입인구, 1인당 소득세
상향	사망자수, 전출인구

### <표 4-14> 인구감소지역 구분(대안: 인구변화+1인당소득세)

구분	지역
인구감소우려 (89) → 34	인천 강화군, 경기 부천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시흥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가평군, 강원 삼척시,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보은군, 충남 태안군, 전북 전주시, 전북 진안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순천시, 전남 담양군, 전남 곡성군, 전남 장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릉군, 경남 사천시,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인구감소위험 (34) → 51	경기 의정부시, 경기 안양시, 경기 구리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홍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제천시, 충북 옥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충남 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구례군, 전남 오흥군, 전남 보성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함평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주시,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덕군, 경남 합천군

## 2) 주요 영향변수 특성

○ 인구변화 중위평균 대비 하위 3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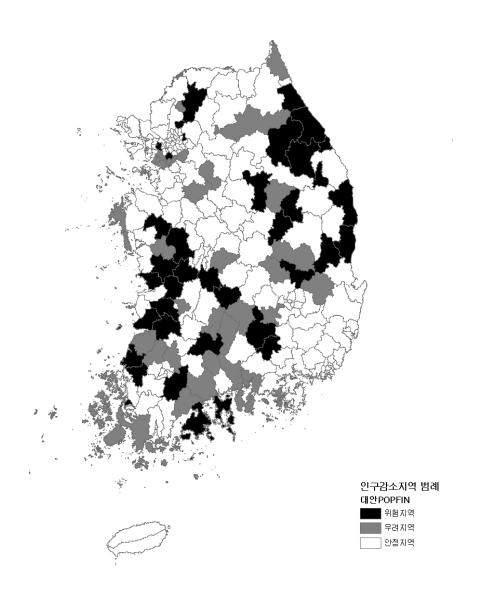
<표 4-15> 인구감소지역별 특성(대안: 인구변화+1인당주민세)

(단위: 개, 천원, %)

구분	우려지역	위험지역
개수	34	51
출생자수	-12.84	-19.83
사망자수	4.03	-0.13
전입자수	-5.93	-18.85
전출자수	-11.79	-27.02
15세미만인구	-32.00	-35.53
65세이상인구	46.36	40.02
15-64세비율	-5.01	-7.44
인당주민세	107.52	95.31
재정자립도	5.46	6.30
20-39여성인구	-4.00	-3.87
인구변화	-1.24	-2.84

# 4. 4안 분석결과

# 1) 지역구분



## <표 4-16> 인구감소지역 적용 기준(대안: 인구변화+재정자립도)

구분	지역
하향	출생자수, 전입인구, 1인당 소득세
상향	사망자수, 전출인구

## <표 4-17> 인구감소지역 구분(대안: 인구변화+재정자립도)

구분	지역
인구감소우려 (52) → 36	경기 성남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시흥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의왕시, 경기 이천시, 경기 안성시, 강원 홍천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전주시, 전북 장수군, 전북 고창군, 전남 순천시, 전남 담양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해남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구미시, 경북 영천시, 경북 의성군, 경북 고령군,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인구감소위험 (22) → 38	경기 의정부시, 경기 안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포천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남 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북 무주군, 전북 부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함평군, 전남 영광군, 경북 영주시,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진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 2) 주요 영향변수 특성

○ 인구변화 평균 대비 하위 16% 이하

## <표 4-18> 인구감소지역별 특성(대안: 인구변화+재정자립도)

(단위: 개, 천원, %)

구분	우려지역	위험지역
개수	36	38
출생자수	-9.69	-23.53
사망자수	5.09	0.49
전입자수	-12.61	-22.00
전출자수	-19.88	-27.08
15세미만인구	-31.22	-36.62
65세이상인구	46.33	43.05
15-64세비율	-5.06	-6.53
인당주민세	112.77	105.25
재정자립도	8.43	-5.52
20-39여성인구	-3.65	-3.56
인구변화	-1.98	-3.06

## 5. 5안 분석결과

- 인구감소 우려 및 위험지역은 인구 및 소득·재정부문을 고려하여 도출
- 인구부문은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젊은여성인구비율로 구성
- 소득·재정부문은 주민세, 재정자립도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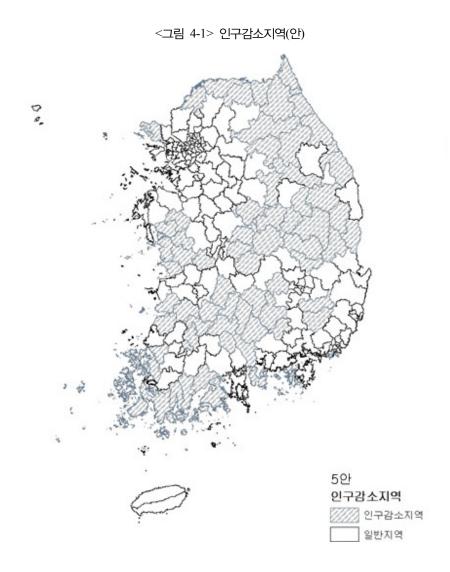
구분	기준
인구증감률	2000년-2015년 인구감소율 5% 이하
노령인구비율	노령인구비율 20%이상
생산가능인구비율	2013년-2015년 3년 평균 68.1% 이하
젊은여성인구비율	2013년-2015년 3년 평균 68.1% 이하11.8% 이하
소득	2013년-2015년 3년 평균 인당 주민세 105.4천원 이하
재정	2013년-2015년 3년 평균 재정자립도 22.3% 이하

<표 4-19> 적용기준

- 인구감소 우려 및 위험지역은 전체 226개 시군구(제주시 및 서귀포시 제외) 중 79(20/59)개로 도출
  - 강원(7/7), 경북(1/13), 전남(1/11)이 전체 인구감소 지역 중 44.3%를 차지하며, 인구감소위험지역의 52.5% 차지
- 반면, 대전시와 울산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표 4-20> 인구감소지역(5안)

그님 이러기어		이렇게		계	순) 네	성촉중복	
구분	우려지역	위험지역	우려	위험	합계	우려	위험
서울	노원구		1	0	1	0	0
부산	영도구, 사하구		2	0	2	0	0
대구	서구, 남구		2	0	2	0	0
대전			0	0	0	0	0
광주	북구		1	0	1	0	0
인천	강화군		1	0	1	0	0
울산			0	0	0	0	0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	1	1	2	0	0
강원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성), 횡성군(성),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릉시, 삼척시(성), 영월군(성), 평창군(성),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성)		7	14	2	4
충북	증평군	제천시, 보은군(성), 옥천군(성), 영동군(성), 괴산군(성)	1	5	6	0	4
충남	홍성군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성), 서천군(성), 청양군(성), 예산군(성)	1	6	7	0	4
경북	울릉군(성)	안동시, 영주시(성), 상주시(성), 문경시(성), 군위군(성), 의성군(성), 청송군(성), 영양군(성), 영덕군(성), 청도군(성), 성주군(성), 예천군(성), 봉화군(성)	1	13	14	1	12
경남	통영시	밀양시(성), 의령군(성), 남해군(성), 하동군(성), 산청군(성), 함양군(성), 거창군(성), 합천군(성)	1	8	9	0	8
전북		정읍시(성), 남원시(성), 진안군(성), 장수군(성), 임실군(성), 순창군(성), 고창군(성), 부안군(성)	0	8	8	0	8
전남	무안군	담양군(성), 구례군(성), 고흥군(성), 보성군(성), 장흥군(성), 강진군(성), 해남군(성), 함평군(성), 완도군(성), 진도군(성), 신안군(성)	1	11	12	0	11
제주			0	0	0	0	0
		계	20	59	79	3	51



○ 인구감소 우려 및 위험 지역(79개)는 성장촉진지역과는 54개 지역, 특수상 황지역과는 12개가 중복되어 선정

<표 4-21> 낙후지역과의 중복지역

713	성장촉진		특수상황	
구분	중복지역	개수	중복지역	개수
서울		0		0
부산		0		0
대구		0		0
대전		0		0
광주		0		0
인천		0	강화군	1
울산		0		0
경기		0	동두천시, 연천군	2
강원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6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5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4	也相正, 平 6 世	0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4	보령시, 홍성군	2
ОП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		
경북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13		0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밀양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8	통영시	1
전북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8		0
전남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1	무안군	1
제주		0		0
소계		54		12





## 6. 6안 분석결과

-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제외한 226개 시군구 중 소득·재정 부문을 제외한 인구부문만 고려
- 인구부문은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젊은여성인구비율로 구성
- 인구감소우려지역은 인구감소율 감소 5% 이하를 충족하며, 노령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젊은여성인구비율 중 1~2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 인구감소위험지역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표 4-22> 적용기원
---------------

구분	기준	비고
인구증감률	2000년-2015년 인구감소율 5% 이하	
노령인구비율	노령인구비율 20%이상	E Ol
생산가능인구비율	2013년-2015년 3년 평균 68.1% 이하	동일
젊은여성인구비율	2013년-2015년 3년 평균 11.8% 이하	
소득	2013년-2015년 3년 평균 인당 주민세 105.4천원 이하	ᆀ이
재정	2013년-2015년 3년 평균 재정자립도 22.3% 이하	제외

- 소득·재정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의 분석결과 67개 지역이 부가적으로 도출
- 인구감소우려지역 : 20개 → 18개
- 인구감소위험지역 : 59개 → 78개
- 반면, 성장촉진지역과의 중복성은 51개로 소득·재정부문을 제외해도 동일 한 결과 도출

## <표 4-23> 인구감소지역(6안)

7 11	0 =1=164	이라라라		계 계	111	성촉중복	
구분	우려지역	위험지역	우려	위험	합계	우려	위험
서울			0	0	0	0	0
부산	중구, 서구, 영도구	동구	3	1	4	0	0
대구	중구, 남구		2	0	2	0	0
대전			0	0	0	0	0
광주	동구		1	0	1	0	0
인천	동구		1	0	1	0	0
울산			0	0	0	0	0
경기		연천군	0	1	1	0	0
강원	동해시, 태백시(성), 속초시	강릉시, 삼척시(성), 영월군(성), 평창군(성), 정선군,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성)	3	8	11	1	4
충북		제천시, 보은군(성), 옥천군(성), 영동군(성), 괴산군(성), 단양군(성)	0	6	6	0	5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성), 부여군(성), 서천군(성), 청양군(성), 예산군(성)	0	8	8	0	5
경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성), 영천시(성), 상주시(성), 문경시(성), 군위군(성), 의성군(성), 청송군(성), 영양군(성), 영덕군(성), 청도군(성), 성주군(성), 예천군(성), 봉화군(성), 울진군(성)	0	17	17	0	14
경남		밀양시(성), 의령군(성), 창녕군(성), 고성군(성), 남해군(성), 하동군(성), 산청군(성), 함양군(성), 거창군(성), 합천군(성)	0	10	10	0	10
전북	익산시	정읍시(성), 남원시(성), 김제시(성), 진안군(성), 무주군(성), 장수군(성), 임실군(성), 순창군(성), 고창군(성), 부안군(성)	1	10	11	0	10
전남	여수시	나주시(성), 담양군(성), 곡성군(성), 구례군(성), 고흥군(성), 보성군(성),	1	17	18	0	16

구분	우려지역	이치키여	소	계	합계	성촉	중복
十七	구덕시역 	위험지역		위험	압계	우려	위험
		화순군(성), 장흥군(성), 강진군(성), 해남군(성), 영암군, 함평군(성), 영광군(성), 장성군(성), 완도군(성), 진도군(성), 신안군(성)					
제주			0	0	0	0	0
		계	12	78	90	1	64

- 인구감소지역의 선정을 인구부문과 소득·재정 부문을 제외한 경우 11개의 추가적인 지역이 선정
- 소득·재정부문을 제외한 경우 총 27개의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며, 전남(7), 경북(4) 부산(3), 전북(3) 등으로 구성
- 반면, 소득·재정부문을 제외한 경우 우려지역 중 16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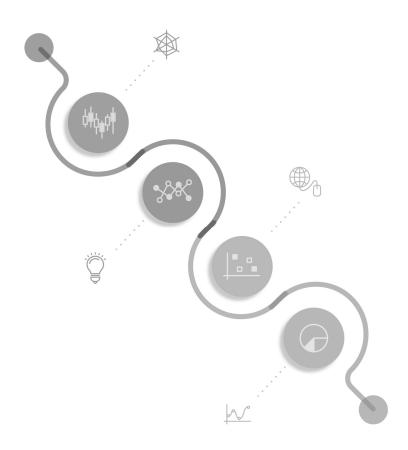
#### <표 4-24> 인구감소지역(6안)

		추가지역				제외지역					
구분	우려지역 5	이취기서	소	계	O 크리스	위험지역	소계				
		위험지역	우려	위험	우려지역	귀염시력	우려	위험			
서울			0	0	노원구(-)		1	0			
부산	중구(+), 서구(+)	동구(+)	2	1	사하구(-)		1	0			
대구	중구(+)		1	0	서구(-)		1	0			
대전			0	0			0	0			
광주	동구(+)		1	0	북구(-)		1	0			
인천	동구(+)		1	0	강화군(-)		1	0			
울산			0	0			0	0			
경기			0	0	동두천시(-)		1	0			
강원	태백시(+)	정선군(+)	1	1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5	0			

	추가지역				제외지역			
구분	0 파기어	이것기에	소계 우려지역 위험지역		소	계		
	우려지역	위험지역	우려	위험	험 양구군(-), 인제군(-) 증평군(-) 오 홍성군(-) 오 통영시(-)	위험지역	우려	위험
충북		단양군(+)	0	1	증평군(-)		1	0
충남		공주시(+), 금산군(+)	0	2	홍성군(-)		1	0
경북		경주시(+), 김천시(+), 영천시(+), 울진군(+)	0	4	울릉군(-)		1	0
경남		창녕군(+), 고성군(+)	0	2	통영시(-)		1	0
전북	익산시(+)	김제시(+), 무주군(+)	1	2			0	0
전남	여수시(+)	나주시(+), 곡성군(+), 화순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1	6	무안군(-)		1	0
제주			0	0			0	0
	소계		8	19	소	계	16	0

# 제5장<sup>\*</sup>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 제2절 정책제언



# 제5장

## 결론 및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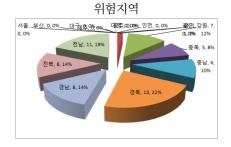
## 제1절 결론

## 1. 인구감소지역 특성

- 인구부문 및 소득·재정부문을 적용한 결과 인구감소 우려 및 위험 지역은 전체 226개 시군구(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외) 중 79개로 34.9%의 시 군구가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전체 인구감소우려지역 중 35%에 해당하는 7개의 인 구감소우려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부산과 대구가 각 2개, 광주, 인천, 경기, 서울이 각 1개의 인구감소우 려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인구감소위험지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 시도별 인구감소지역

우려지역 경복, 경남, 1, 5% 전복, 0, 전복, 1, 19중, 0, 0% 서울, 1, 5% 부산, 2, 10% 대구, 2, 10% 당남, 1, 5% 중국, 1, 5% 경원, 7, 55% 경원, 7, 55% 경원, 7, 55%



- 인구부문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의 도출 결과 전체 226개의 시군구 중 90 개의 시군구가 도출됨
- 인구감소우려지역은 총 12개로 부산(3), 강원(3), 대구(2) 순으로 나타나 자 치구의 인구감소 성향이 반영됨

- 인구감소위험지역은 총 78개로 경북(17), 전북(10), 전남(10) 순으로 3개 도 가 인구감소위험지역 전체의 47.4%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우려지역은 인구변화를 제외한 경제인구비율, 고령화율, 젊은여성 인구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에서 인구감소위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구감소우려지역의 인구변화는 인구감소위험지역보다 다소 큰폭으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인구변화 (%)	경제인구 비율 (%)	고령화율 (%)	젊은여성 인구비율 (%)	인당주민세 (천원)	재정자립도 (%)
우려지역	-14.62	68.43	20.14	11.64	195.30	22.30
위험지역	-14.37	58.23	32.03	8.01	92.02	14.51

<표 5-2> 인구부문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 인구부문과 소득·재정부문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의 도출 결과 전체 226개 의 시군구 중 79개의 시군구가 도출됨
- 인구감소우려지역은 총 20개로 강원(7), 부산(2), 대구(2) 순으로 나타나 자 치구의 인구감소 성향이 반영됨과 동시에 소득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추가됨
- 인구감소위험지역은 총 59개로 경북(13), 전남(11), 경남(8), 전북(8) 순으로 4개 도가 인구감소위험지역 전체의 67.8%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_	인구감소식	구려지역은 모	.든 지표(인구변화,	경제인구비율,	고령화율,	젊은여성
	인구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에서	인구감소위험지	]역보다 성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남				

경제인구 젊은여성 인구변화 인당주민세 고령화육 재정자립도 구분 비율 인구비율 (%) (천원) (%) (%) (%) (%)우려지역 -1.58 67.14 20.60 10.88 73.33 17.01 위험지역 -14.35 57.52 33.00 7.77 67.53 13.50

<표 5-3> 인구부문, 소득·재정부문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 인구부문만 고려한 인구감소지역의 선정과 인구부문 외에 추가적으로 소 득·재정부문을 모두 고려한 인구감소지역을 비교할 경우 소득·재정부문의 고려는 인구감소우려지역에서 인구변화율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짐
- 인구감소우려지역의 경우 소득·재정부문을 고려함으로써 인구변화율이 다소 감소하여 인구부문만을 고려한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경제인구비율, 고령화율, 젊은여성인구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는 보다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구감소위험지역은 소득·재정부문을 고려한 경우에도 인구변화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인구변화 (%)	경제인구 비율 (%)	고령화 <u>율</u> (%)	젊은여성 인구비율 (%)	인당주민세 (천원)	재정자립도 (%)
우려지역	13.04	-1.29	0.46	-0.76	-121.97	-5.29
위험지역	0.02	-0.72	0.97	-0.25	-24.49	-1.01

<표 5-4> 인구감소지역간 특성 비교

## 2. 非인구감소지역과의 비교

- 인구감소지역은 非인구감소지역을 지역의 평균과 비교할 경우 경제인구비율, 젊은여성인구비율은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인구변화,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큰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지표는 인당 주민세로 인구감소지역의 인당주민세는 평균 대비 약 55%인데 반해, 非인 구감소지역의 인당주민세는 평균 대비 약 130%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5>	非인구감소지역과의	트성 비교(6안	인구부문 고려)

구분	인구변화 (%)	경제인구 비율 (%)	고령화율 (%)	젊은여성 인구비율 (%)	인당주민세 (천원)	재정자립도 (%)
인구감소	-14.41	59.59	30.45	8.50	105.79	15.55
非인구감소	19.75	70.75	15.20	13.16	250.69	33.31
평균	6.2	66.3	21.2	11.3	192.4	26.3

- 인구부문 외에 소득·재정부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과 非인 구감소지역을 지역의 평균과 비교할 경우 경제인구비율, 젊은여성인구비율 은 인구부문만을 고려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는 전체 지역 평균에 못미치는 감소성향이 큰 것 으로 나타남
-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인당주민세는 非인구감소지역 평균 대비 약 36%로 소득부문에 대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구부문만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과 추가적으로 소득·재정을 고려한 경우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당주민세 및 재정자립도는 소득·재정부문으로 필터링을 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소득·재정상태가 보다 열악한 정도를 의미함

<표 5-6> 非인구감소지역과의 특성 비교(5안: 인구, 소득·재정부문 고려)

구분	인구변화 (%)	경제인구 비율 (%)	고령화 <u>율</u> (%)	젊은여성 인구비율 (%)	인당주민세 (천원)	재정자립도 (%)
인구감소	-11.12	59.95	29.86	8.56	68.99	14.39
非인구감소	15.43	69.72	16.66	12.78	259.62	32.60
평균	6.2	66.3	21.2	11.3	192.4	26.3

## 제2절 정책제언

#### 1. 기존 지역정책 지정기준 한계 보완

- 기존 지역정책의 지정기준은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의 선별하기 위하여 다수의 지표로 구성된 선정지표안을 적용하였음
- 반면, 유럽연합(EU)은 경제·사회, 인구, 산업, 농업, 도시, 어업등 7개 선정 지표 부문별 유형, 프랑스는 인구, 경제, 산업, 기반시설(SOC)등 4개 유형, 영국은 인구, 경제, 산업등 3개 유형, 독일은 경제, 기반시설(SOC)의 2개 유형, 일본은 인구와 행·재정의 2개 유형, 미국은 인구, 경제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최소화된 기준을 적용
- 국내의 지역 특성, 선정지표체계의 명료성을 고려한 지정기준의 체계 구축 이 필요
- 따라서, 지역의 인구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인구변화, 경제 및 재정에 대한 최소화된 지표의 적용이 필요
- 지역 특성과 개별법의 지향 목표에만 부합하는 선정지표체계의 활용
- 기존 지역정책에서 고려된 신활력지역(인구밀도, 연평균인구변화, 주민세, 재정력지수), 오지지역(인구밀도, 연평균인구변화, 주민세)는 개별법을 근거로 추진함으로써 각 특성에 맞게 지표를 선정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중첩되는 결과가 도출
- 또한, 공통지표와 특성지표의 활용으로 지역 선정의 주관적인 측면이 적용됨
- 특히, 기존 개촉지구의 특성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경제부문의 승용차등록비율 지표, 사회(보건·복지)부문의 의사비율과 노령화지수 지표, 행·재정부문의 재정자립도 지표, 지역발전 잠재성부문의 도시적토지이용비 율 등에 대한 고려는 분석목표로 고려되는 지역의 선정에 난해함만 가중하 는 역할 수행
- 지역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량화 방법의 구축 및 지속적인 활용 필요

- 단기적인 사업 운영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 운영 및 평가를 위해서는 명확한 방법에 의해 구축된 산식의 명료성이 요구됨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동일 지표의 적용이 필요하며, 일몰 제가 적용된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에서의 제외를 통해 지표 결과의 일치성 확보가 요구됨
- O 대표성 지표의 개발 필요
- 유럽연합(EU)는 인구와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지표로 인구밀도와 1인당 GDP, 영국은 인구와 경제,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지표로 인구밀도, 노동력 실업률, 노동참여율, 주민실업률, 제조업의존도 지표, 독일은 경제와 기반시설(SOC)부문을 대표하는 지표로 현재실업률, 2-3년후실업률 전망, 현재1인 당소득, 인프라수준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인구와 행·재정을 대표하는 지표로 인구감소율, 재정력지수 지표를 활용
- 반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명확한 기준 하에 대표성 있는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
- O 인구감소지역 선정을 위한 지표 설정 가이드라인 마련
- 명확한 인구감소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대표성 지표, 객관적 지표, 통계적 검증 지표, 명료한 지표의 설정이 필요
- 명확한 선정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대표 인구감소지역의 선정 후 지역 특성에 대한 사례조사가 병행되어져야함
- 더불어, 유형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표 적용을 통해 지표 적용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

##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필요

○ 인구감소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인구비율, 젊은여성인구비율, 소득·재 정 능력에 반해, 고령화율과 인구감소율은 높아 잠재적으로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가용노동력과 재원이 부족한 실정

- 낮은 경제인구비율은 현 상태에서의 생산 부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부가가치유발의 선순환 고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함
- 낮은 젊은여성인구비율은 향후 가용노동력의 확보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현재의 낮은 생산과 더불어 미래의 생산저감 효과를 유발시키 는 촉매제로 작용함
- 또한, 낮은 소득·재정 여건은 지역의 소비를 위축시키며, 지역사업을 유지 하는데 한계로 작용함
- 인구감소지역은 시도별로 차등화되어 분류되지만, 낙후지역과의 중복되어 나타남으로서 기존 정책의 원활한 운영 및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 인구감소지역은 지역별로 차등화되어 나타나지만, 인구감소지역 선정 지표 를 지역별로 고려할 경우 지역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남
- 따라서, 기존 지역발전정책에서 나타난 ① 지역선정, ② 지원책 적용, ③ 정 책효과측정의 전형적인 적용을 ① 지원근거 마련, ② 지역선정, ③ 지역유 형화, ④ 유형화별 지원, ⑤ 유형화별 정책효과 측정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
- 지역의 미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되는 노동력, 자본에 대한 근원적인 부족이 표출됨
- 향후 도래될 고령중심사회로의 전환은 가용노동력의 상대적인 감소를 촉발 시키며 이를 통해 지역의 생산성은 부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출생률의 감소를 통한 자연적 인구증가의 감소는 고령인을 부양하는 의존도를 가중시키는 역할 수행
- 또한,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낮은 자연적 인구 증가는 지속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낮은 소득·재정 상태를 유발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산업기반
- 인구감소지역의 낮은 소득·재정 상태는 미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의 부족에 기인

-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의 낮은 소득·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소득 유발 산업 입지 미비 등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일자리 공급 정책 수립 요구
-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한 자연적인 증가를 통한 인구 증가 정책 외에 단기적인 사회적 인구 유입 장치의 마련 필요
- 사회적 인구증가를 촉발시킬 수 있는 정주여건개선, 교육,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혜택의 공급을 통한 거주민의 만족도 향상 제고 노력 필요
- 또한, 여성인구의 비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주거 및 복지 시스템의 도입, 가 사 및 육아 보조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통한 지역의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
- 전반적으로 인구의 감소는 노동공급감소, 소비위축을 통해 잠재 성장력 악화와 낮은 성장률을 견인
- 지역 부가가치의 향상 및 지역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유도 및 노동의 확보가 필요
- 반면, 인구감소지역의 특징은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낮은 소득 및 재정구조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귀결됨
- 이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저감시키며, 고용이 둔화되어 종국에는 순차적으로 지역의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써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방안의 구축이 필요

## 3. 정책 제언

- □ 상하수도, 도로포장, 보호구역 정비 등 인프라 중심의 지역정책 추진에서 생활편의중심의 지역정책 추진 필요
  - 2008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개정에 따라 종래의 '낙후지역' 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균특법제2조에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 "성장촉진지역기",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특수상황지역8)"을 규정

- 성장촉진지역은 접근교통망(도로), 소득기반조성(지역특화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상하수도 등)에 소관부처별 국비지원
- 1개 시·군에 대하여 500억 원 내외의 기반시설 건설 지원(국비 100%)
-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5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중소기업) 등 세제혜택 제공
- 특수상황지역의 지원은 생활기반 구축, 지역소득 증대 및 경관 개선, 지역 역량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반면,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성장중심의 개발정책 외에 연 성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 하드웨어중심의 인프라 조성 중심의 기존 낙후지역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 하여 친주민 정주환경조성 및 일자리 공급으로 인구증가 유인작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증대 환경 조성
  - 지역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보다는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음
    - 일본 과소지역의 경우, 도로 등 인프라 투자를 줄이고 고령자 복지, 산업경 제에 대한 투자 확대
  - 지역간 격차 외에 지역내 격차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 책 추진이 필요
  - 동일한 낙후지역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지역의 발전정도, 인구, 산업, 재정, 생활여건 등에서 차이가 존재
  - 지역의 여건과 특성, 개발수요를 고려한 지역특성화 정책 처방 추진

<sup>7)</sup>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지수, 지역접근성에 따라 선정한 70개 지역

<sup>8) 「</sup>도서개발촉진법」상 372개 개발대상도서 가운데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184개 도서를 제 외한 188개의 도서(19개 시군)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15개 시군

- □ 인구감소지역 내 일반지역과 낙후지역 간 특성
  - 인구감소를 처방하기에 앞서 낙후지역과 아닌 지역 간의 생활여건 격차를 분석하여 인구감소 원인을 파악
  - 두 집단 간의 생활여건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행복지표 사용
  - 생활여건은 주민참여, 생활인프라, 주택, 교통, 산업,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보건·복지 이상 10대 부문 40개 지표로 구성
  - 두 집단 간 부문별 지표의 평균값 차이를 검정한 결과 <표 42>와 같음
  - 일반지역(A)는 인구감소지역 5안의 79개 중 낙후지역을 제외한 지역
  - 낙후지역(B)는 성장촉진지역(70개), 특수상황지역(34개) 중 공통 지역을 제 외하 지역
  - 일반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와 산업·경제, 환경 부문이 낙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특징을 보임
  - 특히 경제활동인구는 많지만 사업체가 증가하지 않음과 동시에 고용 및 취업률이 낮음
  - 이는 지역산업기반 약화, 일자리 부족 등 경제적 쇠퇴로 인한 인구감소가 발생함을 시사
  - 한편, 낙후지역은 생활인프라, 주택, 교통, 교육, 보건·복지 등 정주여건을 구성하는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
  - 이는 주택노후, 낮은 상·하수도 보급, 교육여건, 의료 등 기반시설의 노후 및 공급부족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발생함을 의미

<표 5-7> 인구감소자	역별 생확여건	격차 부석결과
---------------	---------	---------

부문	지표	일반지역(A)	낙후지역(B)	평균 차(A-B)
주민참여	시민참여율(%)	74.62	76.15	-1.52***
	상수도 보급률(%)	96.48	91.44	5.03***
생활	하수도 보급률(%)	83.60	57.76	25.84***
인프라	1인당 도시 및 근린 공원 면적(천㎡)	0.04	0.05	-0.01

부문	지표	일반지역(A)	낙후지역(B)	평균 차(A-B)
	도시가스 보급률(%)	0.41	0.06	0.35***
	유통시설 개수(개소,만명당)	5.48	5.08	0.40
	유통시설 면적(백㎡,만명당)	43,445.92	29,998.73	13,447.19
	노후주택비율(%)	16.70	30.59	-13.89***
주택	지가변 <del>동률</del> (%,만명당)	1.25	1.66	-0.40***
	1인당 주거면적(m²)	71.21	77.48	-6.27
교통	도로포장률(%)	78.64	78.15	0.49***
Tr. 8	도로밀도(k㎡)	0.025	0.007	0.018***
	경제인구(만명)	103,412.64	31,902.31	71,510.33***
산업	고 <del>용률</del> (%)	0.59	0.67	-0.09***
	사업체수증가율 (%)	0.02	0.03	-0.01***
	재정자주도(%)	13.89	8.06	5.83***
경제	취업률(명)	0.40	0.49	-0.09***
	1인당 GRDP(백만원)	17.43	19.57	-2.14
	진학률(%)	0.73	0.75	-0.03***
70	유치원 취원율(%)	20.00	19.91	0.08
교육	교원 1인당 유치원 학생수(명)	11.84	9.93	1.91***
	사교육시설수(계,만명당)	191.88	50.90	140.98***
	공공도서관 좌석수(백개)	1,091.96	454.42	637.54***
문화	공공체육시설수(만명당)	2.72	3.00	-0.28
	문화기반시설수(만명당)	8.76	6.69	2.07*
	일산화탄소(십만KG)	2,205,232.92	1,270,826.50	934,406.42**
	황산화물(십만KG)	1,605,970.83	546,389.13	1,059,581.70*
환경	질소산화물(십만KG)	4,041,511.60	2,123,034.07	1,918,477.53
	1일 폐수발생량(m²)	0.24	0.25	-0.01
	폐기물 재활용률(%)	72.31	213.63	-141.32
	감염병 발생자수(명)	4.00	2.69	1.31
	사망률(백만명당)	752.10	1,177.17	-425.08
	자살률(%)	38.23	39.48	-1.25
	국공립보육시설수(개소,만명당)	6.76	2.13	4.63**
	노인여가복지시설수	100.57	256.02	15/ 1/***
보건복지	(개소,만명당)	199.56	356.02	-156.46***
	장애인 복지지설수(개소,만명당)	3.23	2.16	1.07
	사회복지시설수(개소,만명당)	1.96	0.87	1.09*
	병상수(인구 천명당,만명당)	11.97	11.81	0.16
	의료인수(명,만명당)	1,347.64	329.44	1,018.20 ***
	의료시설수(명,만명당)	163.36	66.04	97.32***

주) \*\*\*: 0.01이하, \*\*: 0.05이하, \*: 0.1이하

- 인구감소우려 및 위험지역을 그 외 지역과 비교한 결과 주택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서비스의 부족현상이 발생
- 인구감소우려지역은 총 40개 지표 중 23개 지표에서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위험지역은 총 40개 지표 중 20개로 인구감소우려지역보다 서비스 공급 취약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구감소위험지역은 취약한 서비스 공급의 절대수는 인구감소우려지역 보다 적으나, 부족한 크기는 인구감소우려지역보다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우려 및 위험지역의 환경부문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우려 및 위험지역의 대기오염은 일반지역에 비해 양호하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주택부문의 노후주택비율은 상대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일반지역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의 질은 떨어지는 반면, 지가변동률의 상승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냄
-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운영의 원동력 및 지자체 행정서비스 공급이 취약해 인구감소지역이 자체적인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일반지역에 비해 경제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근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재정자주도가 일반지역에 비해 취약하여 지자체의 자체 서비스 공 급을 위한 근원이 낮음
- 반면, 인구감소지역의 고용률은 일반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수의 절대적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남

<표 5-8> 인구감소지역 및 일반지역간 생활여건 격차 분석결과

нп	ਤ <u>ੀ</u> ਹ		인구감소지역				
부문	지표	우려지역	차이	위험지역	차이	지역	
주민참여	시민참여율(%)	74.40	-1.01*	76.04	0.63**	75.41	
, 22 ,	상수도 보급률(%)	95.21	-2.81	92.23	-5.78***	98.02	
	하수도 보급률(%)	79.66	-9.12*	61.49	-27.29***	88.78	
생활	1인당 도시 및 근린 공원 면적(천㎡)	0.04	0.01	0.05	0.01***	0.03	
인프라	도시가스 보급률(%)	0.43	-0.28***	0.08	-0.62***	0.71	
	유통시설 개수 (개소,만명당)	0.83	0.4	0.81	0.38***	0.43	
	유통시설 면적 (백㎡,만명당)	55.93	16.62	52.37	13.06**	39.31	
	노후주택비율(%)	17.01	5.43***	28.94	17.36***	11.58	
주택	지가변 <del>동률(</del> %,만명당)	0.22	0.1	0.33	0.21***	0.12	
	1인당 주거면적(m²)	65.59	5.4	78.14	17.96***	60.18	
교통	도로포장률(%)	80.32	-5.76**	77.84	-8.24***	86.08	
亚	도로밀도(k㎡)	0.03	-0.04***	0.01	05 0.01*** 08 -0.62*** 81 0.38*** .37 13.06** .94 17.36*** .33 0.21*** .14 17.96*** .84 -8.24*** 01 -0.06*** 89 -18*** 66 0.09*** 03 0.01** -4.79*** 75 0.03*** .49 -1.91***	0.06	
	경제인구(만명)	10.13	-11.76***	3.89	-18***	21.89	
산업	고 <del>용률(</del> %)	0.60	0.02	0.66	0.09***	0.58	
	사업체수증가율 (%)	0.02	-0.01**	0.03	0.01**	0.03	
	재정자주도(%)	13.95	-13.6***	8.64	-18.91***	27.55	
경제	취업률(명)	0.39	-0.05**	0.49	0.04***	0.44	
	1인당 GRDP(백만원)	17.34	-7.08***	19.63	-4.79***	24.42	
	진학률(%)	0.74	0.02	0.75	0.03***	0.72	
	유치원 취원율(%)	21.21	-0.18	19.49	-1.91***	21.39	
교육	교원 1인당 유치원 학생수(명)	12.23	-0.73**	10.05	-2.9***	12.95	
	사교육시설수(계,만명당)	11.56	-3.83***	7.64	-7.75***	15.39	
	공공도서관 좌석수(백개)	9.89	-8.21***	5.43	-12.67***	18.10	
문화	공공체육시설수(만명당)	0.44	0.14	0.55	0.25***	0.30	
	문화기반시설수(만명당)	3.94	3.3**	2.83	2.19***	0.64	

нп	-l n		인구감	소지역		일반
부문	지표	우려지역	차이	위험지역	차이	지역
	일산화탄소(십만KG)	19.08	-19.34***	14.44	-23.98***	38.42
	황산화물(십만KG)	12.68	-10.61**	7.44	-15.85***	23.28
환경	질소산화물(십만KG)	26.06	-30.71***	27.57	-29.2***	56.77
	1일 폐수발생량(m²)	0.24	0.01	0.25	0.01	0.24
	폐기물 재활용률(%)	69.01	-0.63	198.12	128.48	69.64
	감염병 발생자수(명)	3.55	-2.1*	2.86	-2.79***	5.65
	사망률(백만명당)	73.20	14.88***	114.09	55.78***	58.31
	자살 <del>률(</del> %)	35.16	5.73**	40.57	11.14***	29.43
	국공립보육시설수 (개소,만명당)	0.53	0.08	0.40	-0.05	0.45
	노인여가복지시설수 (개소,만명당)	47.72	31.19	54.51	37.99***	16.53
보건복지	장애인 복지지설수 (개소,만명당)	0.28	0.05	0.42	0.19	0.23
	사회복지시설수 (개소,만명당)	0.17	-0.05	0.14	-0.08***	0.23
	병상수 (인구 천명당,만명당)	1.37	0.47**	1.83	0.93***	0.91
	의료인수(명,만명당)	75.75	-27.17***	50.01	-52.91***	102.92
	의료시설수(명,만명당)	10.43	-2.53***	10.39	-2.56***	12.96

주) \*\*\*: 0.01이하, \*\*: 0.05이하, \*: 0.1이하

- □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공간 개선 필요
  - 생활중심지를 거점으로 생활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중심적 기 반시설을 조성
  - 非인구감소지역 거주 인구가 향유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기능을 인구감소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장래 인구가 집적할 수 있는 유인으로 활용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개발지향적이 아닌 연성개발을 적용

한 지속성장 유도하여 개별 지역의 특성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자원화 실시

-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육, 문화, 보건·복지 등 생활서비스 제공 기관의 주요 기능을 확대 및 통합
-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특성의 유형화를 통해 필수서비스 및 선택 서비스의 선정 및 개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서비스 공급
- 인구감소지역간 상이한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 신규 공급시설간의 활용방안간 차별적인 접근 도모
- 대중교통의 접근성, 문화시설의 질적 수준, 정주환경이 인구유입에 긍정적 인 역할을 수행 특성을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에 대 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만족도 극대화 도모
-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 등 문화 및 의료서비스 격차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을 통하여 지리적 괴리감 및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주민들이 원격으로 교육, 영화, 음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가 사랑방'을 마련하고 주요 질병의 조기발견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 진단 서비스 도입

## □ 저출산·고령화 시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인구감소지역 중 낙후지역이 아닌 지역은 산업·경제부문이 취약하므로 일 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
- 인구감소지역의 고용률, 사업체수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비해 열등한 점을 고려하여, 신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도모
- 더불어, 일자리공급과 함께 자족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의 서비스 공급 필요
- 단기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일자리 공급책 마련, 장기적으로 향후 일자리의 자생적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설립(일자리 상생센터(가칭))을 통해 일자리 교육 및 교육 이수자를 활용한 내리교육 실천

- 노동자 교육 강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고령자 일자리 확보 등을 통해 노동력 감소를 극복
- 퇴직 고령자 및 귀농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인구 특성에 맞게 후 세대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보조
- 시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을 활용해 고령 및 비숙련 노동자 의 생산성 향상
- 지역의 전통 및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강화
-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특산물 상품개발 → 브 랜드화 → 판로개척 및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 ☐ 산업 및 생활환경 관련 조세특례·규제 완화

- 인구감소지역에 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이전 및 현지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 개편
-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약 84%인 66개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소득세 및 법인 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 나머지 13개 일반지역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감면률을 개편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
- 기업의 투자유치와 기반시설 조성, 교육 및 보육 등에 관련한 규제개선
- 원활한 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규제(산업입지법,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특례를 적용
- 기존 대학교 입학 특별전형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학교 졸업자를 추가 선발하고, 진학 시 거주 지원
- 보육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인구감소 전 지역에 동등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1~2개의 특정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과감한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 【부록】요인별 기초지자체 순위

(단위 : %, 천원)

순위	인구변화	고령화율	경제인구비율	2039여성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1	경기 화성시	전남 고흥군	울산 남구	서울 관악구	서울 중구	서울 강남구
	(203.2)	(42.58)	(77.03)	(17.91)	(5271.09)	(70.8)
2	경기 용인시	경북 의성군	서울 관악구	서울 마포구	서울 종로구	서울 <del>중구</del>
	(161.14)	(41.62)	(76.27)	(17.31)	(1963.46)	(69.4)
3	경기 광주시	경남 남해군	인천 계양구	서울 광진구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133.18)	(41.08)	(76.19)	(17)	(1416.03)	(68.93)
4	경기 파주시	경북 군위군	서울 광진구	서울 강남구	서울 영등포구	경기 성남시
	(124.92)	(40.85)	(76.13)	(16.98)	(1017.01)	(63.8)
5	경기 김포시	경남 합천군	울산 동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123.69)	(40.02)	(76.01)	(16.62)	(896.94)	(61.97)
6	경기 오산시	전남 보성군	부산 사상구	서울 서초구	부산 강서구	경기 화성시
	(118.25)	(39.33)	(75.72)	(16.17)	(776.57)	(60.4)
7	대전 유성구	경남 의령군	경기 안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시
	(114.47)	(39.15)	(75.7)	(16.14)	(714.3)	(59.57)
8	경남 창원시	경북 예천군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부산 중구	서울 종로구
	(110.06)	(38.6)	(75.68)	(16.12)	(638.75)	(59.43)
9	부산 기장군	전남 곡성군	경기 부천시	서울 강서구	울산 북구	경기 광주시
	(102.67)	(38.52)	(75.55)	(15.93)	(627.41)	(55.93)
10	경기 남양주시	전남 함평군	울산 중구	서울 영등포구	인천 중구	인천 <del>중구</del>
	(87.53)	(37.99)	(75.44)	(15.88)	(621.23)	(53.83)
11	경기 양주시	경북 영양군	서울 금천구	경북 구미시	서울 용산구	경기 안양시
	(82.02)	(37.86)	(75.15)	(15.81)	(572.1)	(53.73)
12	충남 아산시	경남 산청군	서울 송파구	서울 성 <del>동구</del>	경기 화성시	경기 시흥시
	(63.44)	(37.85)	(74.92)	(15.72)	(568.48)	(53.33)
13	광주 광산구	전북 임실군	서울 강동구	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경기 고양시
	(60.51)	(37.8)	(74.88)	(15.61)	(502.19)	(52.43)
14	울산 북구	경북 영덕군	부산 <del>북구</del>	서울 용산구	부산 남구	경기 김포시
	(59.24)	(37.8)	(74.76)	(15.44)	(491.83)	(52.27)
15	경남 양산시	경북 청 <del>송군</del>	경기 시흥시	경기 수원시	경북 구미시	서울 송파구
	(58.99)	(37.13)	(74.66)	(15.36)	(487.24)	(51.9)

순위	인구변화	고령화율	경제인구비율	2039여성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16	경남 김해시	충남 청양군	경기 안양시	충남 천안시	대구 <del>중구</del>	경기 하남시
	(58.7)	(37.09)	(74.62)	(15.09)	(437.19)	(51.63)
17	인천 <del>중구</del>	경북 청도군	서울 중랑구	서울 성 <del>북구</del>	강원 정선군	서울 용산구
	(57.63)	(37.08)	(74.54)	(15)	(417.85)	(51.5)
18	충남 계룡시	경북 봉화군	경기 수원시	서울 서대문구	경기 이천시	경기 안산시
	(54.05)	(36.83)	(74.41)	(14.98)	(401.03)	(50.47)
19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울주군	부산 강서구
	(51.71)	(36.64)	(74.39)	(14.95)	(382.05)	(50.03)
20	인천 서구	전북 진안군	인천 부평구	서울 강동구	충북 진천군	서울 영등포구
	(48.3)	(36.4)	(74.38)	(14.9)	(379.49)	(48.3)
21	충남 천안시	전북 순창군	서울 양천구	경기 광명시	울산 <del>동구</del>	경기 과천시
	(47.26)	(36.27)	(74.34)	(14.9)	(379.14)	(48)
22	경남 거제시	충남 서천군	인천 연수구	서울 동대 <del>문구</del>	경남 거제시	경기 광명시
	(45.91)	(36.15)	(74.33)	(14.87)	(372.54)	(47.7)
23	부산 강서구	전남 진도군	서울 강서구	경기 성남시	울산 남구	경기 의왕시
	(38.84)	(36.06)	(74.14)	(14.82)	(339)	(46.8)
24	경기 안성시	경남 함양군	경북 구미시	경기 부천시	경기 과천시	경기 군포시
	(36.84)	(35.9)	(73.99)	(14.82)	(327.77)	(46.63)
25	충남 당진시	전남 구례군	대구 서구	인천 계양구	부산 <del>동구</del>	울산 울주군
	(35.51)	(35.51)	(73.99)	(14.81)	(326.34)	(45.9)
26	울산 울주군	충북 보은군	울산 북구	서울 중구	서울 마포구	경기 오산시
	(34.81)	(35.46)	(73.97)	(14.81)	(316.38)	(45.47)
27	경기 의왕시	전남 장흥군	대전 서구	경기 군포시	전남 광양시	충남 아산시
	(34.75)	(35.37)	(73.86)	(14.8)	(315.22)	(45.23)
28	경기 양평군	전남 강진군	서울 성 <del>동구</del>	대전 서구	서울 금천구	경기 파주시
	(32.86)	(35.25)	(73.85)	(14.8)	(313.64)	(45.17)
29	경기 동두천시	전북 장수군	경기 성남시	서울 중랑구	경기 성남시	경기 평택시
	(31.1)	(35.13)	(73.72)	(14.67)	(307.58)	(44.73)
30	경기 고양시	경남 하 <del>동군</del>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	경기 용인시	충남 천안시
	(30.97)	(35.05)	(73.72)	(14.62)	(291.39)	(44.47)
31	인천 남동구	전북 무주군	경기 구리시	인천 서구	전북 완주군	서울 성동구
	(30.92)	(34.79)	(73.67)	(14.61)	(283.51)	(44.37)
32	경기 시흥시	충북 괴산군	경남 창원시	인천 부평구	충남 당진시	경기 부천시
	(30.12)	(34.65)	(73.64)	(14.59)	(283.37)	(44.07)

순위	인구변화	고령화율	경제인구비율	2039여성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33	경기 평택시	전북 고창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전남 영암군	경남 거제시
33	(28.83)	(34.47)	(73.62)	(14.58)	(280.32)	(43.67)
34	대구 달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영등포구	충남 아산시	충북 음성군	경기 이천시
J <del>-</del>	(28.64)	(33.9)	(73.6)	(14.58)	(271.62)	(43.57)
35	경기 하남시	전남 완도군	서울 동작구	서울 은평구	충남 서산시	서울 마포구
	(28.45)	(33.84)	(73.56)	(14.58)	(266.33)	(43.2)
36	경기 수원시	인천 강화군	부산 사하구	경기 화성시	전남 여수시	경기 구리시
50	(27.8)	(33.23)	(73.43)	(14.51)	(250.35)	(43)
37	경기 안산시	전남 담양군	서울 구로구	경기 안양시	대전 대덕구	경남 창원시
	(26.87)	(33.1)	(73.4)	(14.38)	(246.92)	(42.33)
38	경북 칠곡군	전북 부안군	대전 대덕구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남 양산시
50	(25.83)	(33.09)	(73.3)	(14.25)	(246.14)	(42.23)
39	경북 구미시	전남 해남군	경기 의왕시	서울 종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25.67)	(32.97)	(73.25)	(14.21)	(241.31)	(42.03)
40	강원 원주시	전북 김제시	서울 마포구	서울 금천구	광주 동구	경북 구미시
	(24.97)	(32.6)	(73.23)	(14.2)	(228.94)	(41.47)
41	경기 의정부시		서울 서초구	광주 서구	경기 평택시	인천 서구
	(23.29)	(32.02)	(73.06)	(14.11)	(226.59)	(41.43)
42	제주 제주시	전남 장성군	경기 군포시	울산 동구	서울 송파구	인천 연수구
	(22.01)	(31.83)	(72.99)	(14.1)	(223.82)	(40.6)
43	경북 경산시	충북 영동군	경기 광명시	인천 연수구	서울 성동구	경기 안성시
1.5	(21.68)	(31.78)	(72.8)	(14.09)	(215.18)	(38.87)
44	인천 연수구	경북 성주군	부산 동래구	경기 용인시	경북 울진군	경기 남양주시
	(21.24)	(31.47)	(72.76)	(14.09)	(210.59)	(38.73)
45	충북 청주시	경남 창녕군	서울 동대문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성시	경남 김해시
	(20.38)	(31.17)	(72.76)	(14.08)	(202.25)	(38.5)
46	전남 무안군	경남 고성군	부산 금정구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	대구 달성군
-10	(19.01)	(30.9)	(72.73)	(14.05)	(201.71)	(38.37)
47	충남 서산시	충남 금산군	서울 노원구	경기 구리시	경남 창원시	경기 여주시
	(15.28)	(30.45)	(72.72)	(14.02)	(199.79)	(37.47)
48	경기 이천시	전남 영광군	서울 도봉구	경기 의왕시	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70	(14.2)	(30.32)	(72.69)	(13.98)	(198.1)	(36.83)
49	충북 진천군	경북 울진군	경기 하남시	경북 칠곡군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72	(14.09)	(29.92)	(72.64)	(13.97)	(197.39)	(36.8)

순위	인구변화	고령화율	경제인구비율	2039여성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50	서울 강서구	전남 나주시	대전 유성구	충북 청주시	경남 함안군	인천 남 <del>동</del> 구
	(13.49)	(29.88)	(72.58)	(13.94)	(197.33)	(36.27)
51	전북 완주군	충남 예산군	서울 중구	광주 북구	인천 옹진군	울산 북구
	(12.85)	(29.82)	(72.42)	(13.87)	(196.86)	(36.13)
52	강원 춘천시	충남 태안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제시	충북 청주시	서울 강동구
	(12.84)	(29.81)	(72.41)	(13.83)	(194.22)	(35.4)
53	전남 광양시	경남 거창군	인천 남구	경기 김포시	충남 금산군	전남 광양시
	(12.53)	(29.64)	(72.41)	(13.82)	(189.62)	(35.37)
54	경기 가평군	경북 고령군	광주 북구	경기 고양시	부산 기장군	대전 유성구
	(12.5)	(29.42)	(72.39)	(13.81)	(182.19)	(34.83)
55	광주 서구	경북 문경시	충남 천안시	서울 강북구	광주 광산구	서울 금천구
	(12.05)	(29.41)	(72.38)	(13.8)	(180.4)	(34.8)
56	서울 서초구	충북 단양군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부산 부산진구	충북 청주시
	(12.02)	(29.22)	(72.38)	(13.79)	(179.46)	(34.77)
57	경기 구리시	강원 양양군	부산 부산진구	서울 노원구	인천 <del>동구</del>	서울 서대문구
	(11.68)	(29.2)	(72.38)	(13.76)	(179.31)	(34.43)
58	충북 음성군	충북 옥천군	대구 북구	서울 양천구	경남 양산시	서울 동작구
	(11.25)	(28.99)	(72.37)	(13.72)	(178.44)	(34.37)
59	충북 증평군	강원 횡성군	경기 광주시	인천 남구	부산 해운대구	제주 서귀포시
	(10.83)	(28.93)	(72.13)	(13.66)	(177.67)	(33.67)
60	경기 부천시	전북 남원시	부산 해운대구	서울 도봉구	광주 서구	제주 제주시
	(10.65)	(28.67)	(72.13)	(13.65)	(177.67)	(33.67)
61	경기 여주시	전북 정읍시	부산 연제구	부산 기장군	인천 연수구	경기 양주시
	(10.49)	(28.21)	(72.13)	(13.62)	(174.63)	(33.33)
62	대구 북구	강원 영월군	서울 성북구	경기 이천시	대구 수성구	대구 중구
	(10.14)	(28.09)	(72.03)	(13.62)	(169.03)	(32.73)
63	경남 함안군	경북 영천시	서울 은평구	울산 남구	경기 의왕시	부산 해운대구
	(9.04)	(27.95)	(72)	(13.61)	(168.98)	(32.73)
64	경기 포천시	강원 고성군	경북 포항시	부산 수영구	경기 안산시	서울 동대문구
	(8.53)	(27.68)	(71.94)	(13.57)	(163.96)	(32.73)
65	강원 화천군	전남 화순군	서울 서대 <del>문구</del>	경기 남양주시	경기 시흥시	경기 의정부시
	(8.44)	(27.43)	(71.93)	(13.5)	(163.07)	(32.43)
66	경기 군포시	전남 영암군	광주 서구	경기 파주시	전남 영광군	서울 광진구
	(7.94)	(27.38)	(71.89)	(13.48)	(161.51)	(32.4)

순위	인구변화	고령화율	경제인구비율	2039여성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67	전북 전주시	경남 밀양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
	(7.5)	(26.72)	(71.86)	(13.48)	(160.57)	(32.33)
68	서울 구로구	충남 홍성군	서울 종로구	경남 김해시	전북 군산시	서울 양천구
	(6.79)	(26.62)	(71.85)	(13.43)	(159.28)	(32.13)
69	경기 성남시	충남 논산시	서울 강북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파주시	충남 당진시
	(6.28)	(26.38)	(71.82)	(13.41)	(158.06)	(31.7)
70	서울 은평구	강원 평창군	서울 용산구	경남 양산시	경기 하남시	전북 전주시
	(6.01)	(25.94)	(71.81)	(13.41)	(157.41)	(31.2)
71	대구 달서구	인천 옹진군	경기 오산시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	전남 여수시
	(5.62)	(25.94)	(71.81)	(13.4)	(156.51)	(30.77)
72	전남 순천시	경기 연천군	경기 과천시	부산 사상구	서울 서대 <del>문구</del>	충북 진천군
	(5.22)	(25.88)	(71.68)	(13.31)	(154.57)	(30.73)
73	울산 <del>중구</del>	경북 영주시	경남 거제시	경기 평택시	경남 사천시	전북 완주군
	(5.19)	(25.59)	(71.55)	(13.3)	(153.01)	(30.4)
74	부산 해운대구	강원 정선군	경남 양산시	전북 전주시	인천 남 <del>동구</del>	서울 구로구
	(4.95)	(25.49)	(71.47)	(13.29)	(152.95)	(30.03)
75	대전 서구	경기 가평군	부산 수영구	경기 하남시	서울 구로구	경남 진주시
	(4.93)	(25.26)	(71.47)	(13.28)	(152.37)	(29.97)
76	울산 남구	충남 보령시	대구 수성구	대구 북구	부산 사상구	서울 관악구
	(4.82)	(25.12)	(71.39)	(13.21)	(148.8)	(29.8)
77	인천 강화군	강원 홍천군	충북 청주시	광주 남구	경남 김해시	강원 태백시
	(4.57)	(24.78)	(71.37)	(13.21)	(146.08)	(29.17)
78	인천 부평구	충남 공주시	부산 남구	대전 <del>동구</del>	전남 나주시	부산 중구
	(4.41)	(24.75)	(71.31)	(13.18)	(139.48)	(28.8)
79	대구 동구	경기 양평군	대구 달성군	경남 창원시	충남 공주시	경기 포천시
	(4.26)	(24.55)	(70.7)	(13.14)	(139.4)	(28.37)
80	서울 강남구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시	대구 <del>중구</del>	경기 광주시	충북 음성군
	(4.06)	(24.44)	(70.59)	(13.07)	(139.11)	(28)
81	경기 안양시	경북 안동시	경기 평택시	부산 사하구	제주 제주시	대구 수성구
	(3.84)	(24.23)	(70.57)	(13.05)	(137.39)	(27.9)
82	강원 양구군	경남 함안군	울산 울주군	부산 북구	경북 김천시	서울 강서구
	(3.66)	(23.89)	(70.51)	(13.02)	(136.38)	(27.77)
83	경기 광명시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부산 연제구	부산 연제구	충남 서산시
	(2.93)	(23.84)	(70.51)	(13.01)	(134.4)	(27.73)

순위	인구변화	고령화율	경제인구비율	2039여성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84	경남 통영시	경북 울릉군	대구 남구	경북 경산시	경기 여주시	경기 가평군
	(2.52)	(23.84)	(70.4)	(13)	(133.9)	(27.37)
85	경북 포항시	강원 삼척시	경북 경산시	대전 대덕구	전북 전주시	서울 성북구
	(2.32)	(23.81)	(70.37)	(12.99)	(132.61)	(27.23)
86	경남 진주시	전남 무안군	광주 광산구	부산 해운대구	경북 고령군	강원 원주시
	(2.29)	(23.62)	(70.31)	(12.98)	(131.76)	(27.2)
87	부산 북구	부산 동구	경기 남양주시	대구 남구	경기 김포시	경북 경산시
	(1.79)	(23.3)	(70.29)	(12.98)	(131.65)	(27.17)
88	강원 횡성군	부산 서구	대전 <del>동구</del>	부산 강서구	경기 군포시	강원 춘천시
	(1.63)	(22.31)	(70.24)	(12.95)	(131.43)	(27.17)
89	전북 군산시	강원 철원군	광주 남구	대전 <del>중구</del>	부산 금정구	인천 <del>동구</del>
	(1.44)	(22.24)	(70.23)	(12.89)	(127.98)	(27.17)
90	인천 계양구	부산 중구	충남 계룡시	부산 남구	경북 경산시	전북 군산시
	(1.41)	(22.22)	(70.17)	(12.89)	(126.75)	(27.07)
91	제주 서귀포시	강원 화천군	대구 <del>동구</del>	인천 <del>중구</del>	서울 양천구	부산 부산진구
	(0.92)	(22.03)	(70.14)	(12.88)	(126.63)	(27.03)
92	서울 양천구	대구 중구	강원 원주시	경기 과천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0.91)	(21.99)	(70.03)	(12.85)	(124.87)	(26.93)
93	경북 울릉군	광주 동구	대전 중구	부산 동래구	경기 포천시	부산 연제구
	(0.22)	(21.89)	(69.93)	(12.8)	(124.79)	(26.2)
94	충남 홍성군	부산 영도구	경기 김포시	울산 중구	전북 김제시	서울 중랑구
	(0.2)	(21.78)	(69.72)	(12.77)	(122.61)	(25.93)
95	서울 마포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중구	대구 달성군	서울 광진구	부산 남구
	(0.17)	(21.47)	(69.71)	(12.75)	(121.39)	(25.77)
96	대구 수성구	경남 사천시	경기 이천시	강원 원주시	경북 칠곡군	경북 경주시
	(0.08)	(21.35)	(69.46)	(12.71)	(120.99)	(25.6)
97	경남 사천시	경북 경주시	경기 용인시	부산 금정구	인천 서구	부산 수영구
	(-0.17)	(21.22)	(69.43)	(12.66)	(120.36)	(25.47)
98	서울 송파구	강원 양구군	인천 <del>중구</del>	전남 목포시	대구 달서구	부산 금정구
	(-0.25)	(21)	(69.31)	(12.65)	(119.37)	(25.47)
99	대전 중구	강원 인제군	경남 진주시	대구 <del>동구</del>	충북 충주시	강원 정선군
	(-0.29)	(20.85)	(69.25)	(12.58)	(119.31)	(25.37)
100	서울 성 <del>북구</del>	충북 음성군	경기 포천시	광주 동구	경북 영천시	서울 은평구
	(-0.65)	(20.64)	(69.21)	(12.53)	(118.92)	(25.23)

순위	인구변화	고령화율	경제인구비율	2039여성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101	강원 인제군	경기 여주시	경북 칠곡군	제주 제주시	서울 동대문구	경남 함안군
101	(-0.87)	(20.61)	(69.21)	(12.49)	(116.25)	(25.13)
102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전남 장성군	서울 도봉구
102	(-1.12)	(20.15)	(69.12)	(12.39)	(115.68)	(25.1)
103	전남 목포시	대구 남구	경기 화성시	경기 양주시	전북 무주군	부산 사상구
103	(-1.76)	(20.13)	(69.09)	(12.36)	(115.53)	(25.07)
104	부산 수영구	충북 제천시	전남 목포시	인천 동구	경남 창녕군	인천 부평구
	(-1.96)	(20.04)	(69.07)	(12.35)	(111.88)	(24.5)
105	서울 관악구	충북 진천군	부산 강서구	강원 춘천시	서울 강동구	광주 서구
	(-1.99)	(19.89)	(69)	(12.28)	(111.82)	(24.2)
106	인천 남구	강원 태백시	경기 파주시		제주 서귀포시	. —
	(-2.29)	(19.89)	(68.92)	(12.21)	(111.52)	(24.03)
107	충북 충주시	충남 당진시	부산 영도구	전남 광양시	충남 태안군	부산 동래구
	(-2.32)	(19.83)	(68.86)	(12.2)	(109.46)	(24)
108	서울 동작구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	충남 계룡시	부산 서구 (100.21)	경북 칠곡군
	(-2.78)	(19.37)	(68.83)	(12.11)	(109.31)	(23.7)
109	서울 동대문구		부산 서구 ((9.7)	경남 진주시	서울 동작구	인천 남구 (22.47)
	(-3.04)	(19.34)	(68.7)	(12.08)	(108.8)	(23.47)
110	강원 홍천군	인천 동구 (10.1)	경남 통영시	울산 울주군	전남 곡성군	경기 양평군
	(-3.17)	(19.1)	(68.6)	(12.06)	(108.53)	(23.33)
111	서울 용산구	부산 수영구	강원 속초시 (69.42)	전남 순천시	충북 단양군 (107.20)	전남 화순군
	(-3.3)	(18.29)	(68.43)	(12.01)	(107.29)	(23.07)
112	대전 동구	전북 익산시 (18.24)	전남 여수시 (68.24)	대구 서구 (11.96)	경남 고성군 (107.27)	전남 순천시 (23.07)
	(-3.33)	` ′	` /	` ′	` ′	` ′
113	부산 남구 (-3.65)	강원 동해시 (18.12)	대구 <del>중구</del> (68.23)	충북 증평군 (11.0)	대전 <del>중구</del> (106.62)	전남 목포시 (22.73)
	` ′	` ′	` /	(11.9)	` ′	
114	경북 고령군 (-4.27)	강원 속초시 (18.11)	경북 <del>울릉</del> 군 (68.13)	대구 수성구 (11.88)	서울 강서구 (106.18)	인천 계양구 (22.6)
	서울 도봉구	경기 동두천시	(06.13) 부산 동구	경북 포항시	부산 사하구	(22.0) 경기 연천군
115	(-4.53)	(18.05)	수산 중구 (68.12)	(11.81)	무산 사이구 (104.75)	경기 연선군 (22.1)
	광주 남구	(16.03) 강원 춘천시	중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강원 원주시	(22.1) 경북 김천시
116	(-4.55)	경면 군신시 (17.96)	(68.08)	선독 군선시 (11.77)	(102.56)	경독 검진시 (22.07)
	충남 태안군	경기 포천시	강원 춘천시	부산 중구	전북 임실군	
117	(-4.81)	(17.92)	경된 군전시 (68.08)	구신 중구 (11.69)	선목 급설군 (102.08)	(22)
L	()	(1,1,2)	(00.00)	(11.07)	(102.00)	(-2)

순위	인구변화	고령화율	경제인구비율	2039여성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118	서울 강동구	전남 여수시	인천 동구	전북 익산시	경기 광명시	광주 광산구
110	(-4.96)	(17.86)	(68.06)	(11.64)	(102.06)	(21.77)
119	인천 동구	서울 종로구	제주 제주시	경남 통영시	경기 고양시	경남 통영시
117	(-5.04)	(17.85)	(68.03)	(11.62)	(101.61)	(21.73)
120	광주 북구	서울 중구	전북 군산시	충남 당진시	충북 증평군	대전 서구
120	(-5.11)	(17.59)	(67.91)	(11.57)	(101.02)	(21.73)
121	서울 강북구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부산 서구	강원 춘천시	대구 북구
	(-5.28)	(17.19)	(67.84)	(11.38)	(100.96)	(21.53)
122	강원 강릉시	충북 증평군	강원 동해시	충남 서산시	인천 부평구	경남 사천시
	(-5.44)	(17.17)	(67.81)	(11.26)	(100.77)	(21)
123	경북 김천시	대구 동구	경기 안성시	전남 여수시	서울 성북구	부산 사하구
	(-5.46)	(17.12)	(67.77)	(11.25)	(100.12)	(20.97)
124	서울 중구	경기 안성시	충북 충주시	경기 여주시	강원 삼척시	전북 익산시
	(-5.75)	(16.93)	(67.71)	(11)	(99.82)	(20.67)
125	경북 안동시	서울 강북구	광주 동구	충북 충주시	부산 수영구	강원 강릉시
	(-5.76)	(16.92)	(67.67)	(10.96)	(99.64)	(20.53)
126	울산 동구	부산 남구	경기 동두천시	부산 동구	전북 남원시	경남 밀양시
	(-5.81)	(16.72)	(67.55)	(10.95)	(98.75)	(20.43)
127	충북 제천시	서울 용산구	충북 제천시	강원 강릉시	강원 강릉시	강원 속초시
	(-5.89)	(16.7)	(67.47)	(10.9)	(98.25)	(20.23)
128	경남 거창군	부산 부산진구	충북 증평군 ((7.25)	경남 사천시	부산 동래구	충남 보령시
	(-5.95)	(16.64)	(67.35)	(10.83)	(97.61)	(19.97)
129	강원 속초시	부산 금정구	부산 기장군 (67.22)	강원 동해시	경기 가평군 (07.28)	경북 문경시 (10.92)
	(-5.96)	(16.62)	(67.23)	(10.8)	(97.28)	(19.83)
130	부산 연제구	경남 통영시	강원 태백시 (67.22)	부산 영도구	전북 정읍시	경기 동두천시
	(-6.05)	(16.6)	(67.22)	(10.8)	(96.83)	(19.63)
131	강원 평창군 (-6.15)	서울 서대문구 (16.59)	강원 강릉시 (67.21)	강원 속초시 (10.78)	경기 오산시 (96.06)	서울 노원구 (19.6)
	, ,	` ′	` ′	` ′		` ′
132	서울 영등포구 (-6.15)	부산 강서구 (16.43)	경북 경주시 (66.81)	충북 진천군 (10.69)	경기 양평군 (95.31)	울산 <del>중구</del> (19.47)
	서울 노원구	(10.43) 경남 진주시	경기 여주시	경기 포천시	경기 부천시	대전 대덕구
133	시출 도원구 (-6.48)	(16.37)	(66.22)	경기 포전시 (10.67)	경기 구선시 (95.01)	대선 대덕구     (19.43)
	강원 양양군	대구 서구	(60.22)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55.01) 경북 영주시	(12.43) 충북 제천시
134	(-6.85)	(16.37)	중국 급성군 (66.17)	선국 완두군 (10.57)	경국 영구시 (94.73)	중국 세선시 (19.33)
	(-0.03)	(10.57)	(00.17)	(10.57)	(77.13)	(17.33)

순위	인구변화	고령화율	경제인구비율	2039여성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135	전북 익산시	대전 중구	충북 진천군	충북 제천시	경남 진주시	경북 영천시
133	(-7.34)	(16.35)	(65.97)	(10.44)	(94)	(19.2)
136	서울 광진구	대전 동구	강원 양구군	강원 태백시	경기 양주시	충북 단양군
130	(-7.34)	(16.09)	(65.87)	(10.42)	(92.71)	(19.2)
137	강원 동해시	부산 연제구	강원 인제군	제주 서귀포시	광주 북구	충북 충주시
137	(-7.49)	(16.01)	(65.78)	(10.41)	(92.7)	(19.17)
138	전남 영암군	전남 순천시	강원 삼척시	경북 경주시	충남 홍성군	경북 영주시
130	(-7.67)	(15.97)	(65.65)	(10.39)	(92.28)	(19.07)
139	부산 동래구	인천 중구	충남 서산시	경북 안동시	경기 구리시	충남 홍성군
	(-7.78)	(15.94)	(65.16)	(10.36)	(91.59)	(19)
140	경남 산청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 옹진군	전남 무안군	충남 보령시	강원 삼척시
1.0	(-7.85)	(15.93)	(65.12)	(10.33)	(91.31)	(18.83)
141	경북 경주시	광주 남구	강원 화천군	강원 인제군	경북 성주군	강원 동해시
	(-8.21)	(15.91)	(65.07)	(10.32)	(90.48)	(18.83)
142	강원 철원군	경북 경산시	제주 서귀포시	충북 음성군	충북 옥천군	충남 태안군
	(-8.3)	(15.73)	(64.97)	(10.3)	(90.06)	(18.73)
143	경남 고성군	부산 기장군	충남 당진시	강원 삼척시	강원 평창군	대구 동구
	(-8.42)	(15.58)	(64.92)	(10.2)	(90.03)	(18.7)
144	경남 함양군	부산 동래구	경남 사천시	강원 양구군	충남 예산군	강원 횡성군
	(-8.72)	(15.35)	(64.58)	(10.16)	(89.05)	(18.67)
145	전남 여수시	인천 남구	강원 정선군	경북 김천시	광주 남구	강원 영월군
	(-8.88)	(15.29)	(64.39)	(10.12)	(87.82)	(18.57)
146	서울 중랑구	제주 제주시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대구 동구	대전 중구
	(-9.17)	(15.28)	(64.32)	(9.89)	(87.44)	(18.5)
147	전북 순창군	서울 도봉구	충남 공주시	경남 함안군	전남 순천시	대구 서구
	(-9.25)	(15.26)	(64.07)	(9.86)	(87.29)	(18.4)
148	경북 성주군	서울 은평구	강원 홍천군	강원 철원군	대구 북구	부산 동구 (10.27)
	(-9.25)	(15.24)	(63.99)	(9.84)	(86.55)	(18.37)
149	충남 보령시	서울 성북구	경북 김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화순군	충남 공주시
	(-9.56)	(15.14)	(63.92)	(9.83)	(86.26)	(17.97)
150	경남 창녕군	강원 원주시	경기 양평군	충남 논산시	전북 진안군	충남 금산군
	(-9.56)	(15)	(63.89)	(9.58)	(84.94)	(17.97)
151	충남 논산시	경북 칠곡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충북 제천시 (04.05)	인천 옹진군
	(-9.85)	(14.97)	(63.75)	(9.51)	(84.85)	(17.9)

순위	인구변화	고령화율	경제인구비율	2039여성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152	전남 나주시	전남 목포시	강원 고성군	경기 양평군	강원 동해시	전남 나주시
	(-10.21)	(14.75)	(63.62)	(9.38)	(84.56)	(17.8)
153	부산 부산진구	서울 동작구	강원 평창군	전남 화순군	충남 계룡시	전남 영암군
	(-10.22)	(14.64)	(63.59)	(9.38)	(84.4)	(17.63)
154	충북 영동군	서울 영등포구	경남 함안군	경기 연천군	부산 영도구	강원 홍천군
	(-10.31)	(14.63)	(63.33)	(9.32)	(83.65)	(17.13)
155	경남 의령군	경기 양주시	경북 안동시	경북 울릉군	전북 부안군	충북 증평군
	(-10.38)	(14.44)	(63.32)	(9.3)	(82.14)	(16.73)
156	충북 괴산군	부산 해운대구	경남 밀양시	전남 나주시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10.39)	(14.25)	(63.19)	(9.26)	(82.14)	(16.57)
157	충북 옥천군	서울 마포구	충남 보령시	전남 영암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옥천군
	(-10.77)	(14.24)	(63.01)	(9.24)	(81.3)	(16.3)
158	경남 밀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영주시	충남 보령시	경남 밀양시	경남 의령군
	(-10.81)	(14.2)	(62.94)	(9.15)	(81.3)	(16.23)
159	서울 금천구	경기 이천시	경기 연천군	경기 가평군	전북 고창군	광주 동구
	(-11.24)	(14.17)	(62.62)	(9.14)	(81.18)	(16.17)
160	부산 사하구	서울 성동구	강원 영월군	전북 정읍시	전북 장수군	충남 논산시
	(-11.46)	(14.17)	(62.48)	(9.07)	(80.93)	(16.07)
161	충남 금산군	서울 중랑구	경북 영천시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경북 <del>울릉</del> 군
	(-11.47)	(14.16)	(62.39)	(9.05)	(78.94)	(15.97)
162	강원 삼척시	경기 파주시	충남 논산시	강원 정선군	울산 중구	대구 남구
	(-11.5)	(14.09)	(62.15)	(9.01)	(78.82)	(15.97)
163	전북 무주군	부산 사하구	전북 완주군	경북 영주시	경북 봉화군	강원 양구군
	(-11.5)	(14.09)	(61.82)	(8.94)	(78.75)	(15.9)
164	대전 대덕구	경기 과천시	강원 횡성군	전북 남원시	강원 영월군	전북 무주군
	(-11.62)	(13.96)	(61.64)	(8.89)	(78.31)	(15.9)
165	전남 담양군	대구 수성구	전남 무안군	경북 영천시	전남 목포시	경북 울진군
	(-11.64)	(13.93)	(61.58)	(8.87)	(76.94)	(15.63)
166	경남 하동군	전북 전주시	충북 단양군	경남 밀양시	경북 안동시	광주 북구
	(-11.74)	(13.87)	(61.44)	(8.83)	(76.52)	(15.6)
167	전남 화순군	서울 금천구	강원 양양군	전남 영광군	전북 순창군	부산 <del>북구</del>
	(-11.83)	(13.84)	(61.22)	(8.61)	(75.97)	(15.47)
168	경기 연천군	경기 의정부시	충남 홍성군	경북 문경시	충남 부여군	전남 장성군
	(-11.91)	(13.83)	(61.14)	(8.6)	(75.74)	(15.37)

순위	인구변화	고령화율	경제인구비율	2039여성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169	경북 문경시	충남 아산시	경북 고령군	강원 평창군	전남 담양군	충북 영동군
107	(-12.45)	(13.75)	(60.97)	(8.56)	(75.44)	(15.33)
170	서울 성동구	울산 울주군	경북 성주군	경남 거창군	경남 통영시	광주 남구
170	(-12.68)	(13.59)	(60.68)	(8.54)	(75.15)	(15.3)
171	강원 고성군	경기 하남시	충북 옥천군	충북 옥천군	대구 서구	경남 고성군
1,1	(-12.9)	(13.56)	(60.62)	(8.44)	(74.57)	(15.1)
172	경북 영천시	서울 노원구	충남 예산군	전남 장성군	충북 보은군	경북 성주군
	(-13.35)	(13.55)	(60.33)	(8.44)	(74.25)	(14.9)
173	전북 진안군	서울 관악구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강원 태백시	경북 고령군
	(-13.63)	(13.52)	(60.28)	(8.43)	(74.16)	(14.87)
174	대구 중구	대구 달성군	전남 화순군	충남 예산군	충남 서천군	경남 창녕군
	(-13.69)	(13.48)	(60.09)	(8.37)	(73.05)	(14.8)
175	경북 청도군	서울 구로구	경북 문경시	경북 울진군	경북 군위군	대전 동구
	(-13.75)	(13.43)	(60.04)	(8.29)	(72.54)	(14.67)
176	경북 영주시	경기 평택시	전북 정읍시	강원 고성군	경기 남양주시	충남 청양군
	(-13.85)	(13.22)	(59.94)	(8.28)	(72.35)	(14.5)
177	전남 장성군	광주 북구 (12.05)	경남 창녕군	경북 고령군	충남 논산시	경남 남해군
	(-14.05)	(13.05)	(59.74)	(8.26)	(71.81)	(14.43)
178	경남 합천군	전남 광양시	전남 나주시	전북 김제시	강원 인제군	전북 진안군
	(-14.16)	(13.02)	(59.68)	(8.24)	(70.62)	(14.13)
179	전북 남원시	서울 강서구	전남 영암군	전남 강진군	강원 홍천군	충남 예산군
	(-14.18)	(12.91)	(59.48)	(8.21)	(69.9)	(14.1)
180	충남 예산군 (14.18)	경기 김포시 (12.84)	경북 울진군 (59.14)	전남 해남군 (8.16)	충남 청양군 (69.66)	부산 서구 (14.03)
	(-14.18)	` ′	` ′	` ′	` ′	` ′
181	부산 금정구 (-14.24)	부산 사상구 (12.83)	전북 남원시 (59.07)	충북 영동군 (8.12)	경남 하 <del>동군</del> (69.64)	인천 강화군 (13.93)
	` ′	` ′	` ′	, ,	` ′	` ′
182	경북 상주시 (-14.34)	부산 북구 (12.79)	경남 고성군 (59.07)	경남 고성군 (8.12)	경남 의령군 (68.14)	충북 괴산군 (13.9)
	중남 공주시	(12.77) 충북 청주시	충남 금산군	(8.12) 강원 양양군	경기 연천군	전북 고창군
183	중립 중무시 (-14.54)	(12.67)	(59.03)	(8.11)	경기 원선군 (67.79)	선숙 고상군 (13.83)
	서울 서대문구	` ′	경남 거창군	(6.11) 충남 금산군	전남 무안군	전남 무안군
184	시물 시대 <del>문구</del> (-14.85)	(12.64)	(58.98)	(8.06)	(67.54)	선담 구인군 (13.8)
	전남 장흥군	경기 남양주시	` ′	인천 옹진군	대구 남구	경남 하동군
185	(-15.33)	(12.61)	(58.67)	(8.02)	(67.53)	(13.77)
	(13.55)	(12.01)	(30.07)	(0.02)	(07.55)	(13.77)

순위	인구변화	고령화율	경제인구비율	2039여성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186	전남 구례군	경기 성남시	전남 영광군	강원 횡성군	경남 산청군	경북 안동시
	(-15.44)	(12.46)	(58.58)	(8.01)	(67.16)	(13.77)
187	전남 신안군	광주 서구	경북 상주시	충남 태안군	인천 남구	강원 화천군
	(-15.56)	(12.42)	(58.23)	(7.99)	(66.97)	(13.7)
188	전북 고창군	대전 대덕구	전남 담양군	전북 순창군	부산 북구	전북 임실군
	(-15.78)	(12.41)	(58.21)	(7.9)	(65.71)	(13.47)
189	강원 영월군	서울 서초구	인천 강화군	강원 영월군	강원 속초시	강원 평창군
	(-15.86)	(12.36)	(58.08)	(7.88)	(64.99)	(13.43)
190	전북 임실군	서울 강동구	충북 괴산군	경남 창녕군	인천 강화군	경북 상주시
	(-16.17)	(12.33)	(57.82)	(7.83)	(63.06)	(13.37)
191	충남 청양군	대구 북구	전북 김제시	경북 성주군	경북 청송군	경남 거창군
	(-16.5)	(12.31)	(57.43)	(7.78)	(61.61)	(13.17)
192	경남 남해군	경남 양산시	전북 부안군	전북 부안군	경북 청도군	경북 영덕군
	(-16.83)	(12.29)	(57.32)	(7.77)	(61.56)	(13.13)
193	강원 태백시	서울 광진구	전남 장성군	경북 상주시	경기 의정부시	부산 영도구
	(-16.86)	(12.26)	(57.22)	(7.75)	(60.07)	(13.1)
194	대구 남구	경기 용인시	충남 부여군	전남 장흥군	서울 관악구	전북 정읍시
	(-17.11)	(12.26)	(56.93)	(7.59)	(59.91)	(13.03)
195	서울 종로구	인천 부평구	경남 하동군	전북 무주군	강원 화천군	경북 청도군
	(-17.18)	(12.16)	(56.35)	(7.55)	(59.51)	(12.83)
196	전남 강진군	경기 광주시	전남 신안군	전남 완도군	경북 울릉군	경남 함양군
	(-17.26)	(12.07)	(56.25)	(7.55)	(58.82)	(12.77)
197	경북 영양군	경기 의왕시	경북 청도군	충북 단양군	강원 고성군	전남 영광군
	(-17.39)	(11.92)	(56.2)	(7.48)	(58.41)	(12.43)
198	충북 보은군	경남 창원시	전남 해남군	전북 고창군	경기 동두천시	경남 산청군
	(-17.48)	(11.72)	(56.07)	(7.44)	(57.57)	(12.4)
199	경북 봉화군	서울 강남구	전북 고창군	전북 장수군	대전 <del>동구</del>	경남 합천군
	(-17.55)	(11.72)	(55.98)	(7.4)	(57.46)	(12.17)
200	전북 장수군	서울 양천구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	경북 문경시	전북 부안군
	(-17.65)	(11.63)	(55.85)	(7.39)	(57.4)	(12.17)
201	전남 완도군	경기 구리시	경북 청송군	인천 강화군	충북 영동군	경북 의성군
	(-17.85)	(11.57)	(55.79)	(7.38)	(56.16)	(12.13)
202	경북 울진군	경기 광명시	전남 완도군	충남 부여군	경북 예천군	강원 고성군
	(-18.41)	(11.48)	(55.7)	(7.3)	(55.55)	(12.13)

순위	인구변화	고령화율	경제인구비율	2039여성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203	부산 사상구	경기 안양시	충남 서천군	전남 진도군	서울 노원구	강원 양양군
	(-19.01)	(11.45)	(55.15)	(7.27)	(50.91)	(12.1)
204	전북 김제시	서울 송파구	전북 무주군	전남 구례군	경북 상주시	충남 서천군
	(-19.13)	(11.41)	(55.08)	(7.27)	(50.72)	(12.07)
205	경북 청송군	경기 군포시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함평군	전북 장수군
	(-19.15)	(11.23)	(54.88)	(7.19)	(50.37)	(12.03)
206	충남 부여군	대구 달서구	전남 장흥군	전북 임실군	경남 거창군	전북 김제시
	(-19.26)	(11.13)	(54.88)	(7.14)	(50.36)	(11.77)
207	광주 동구	인천 남동구	전남 구례군	충남 서천군	경북 영덕군	전남 진도군
	(-19.37)	(11.12)	(54.85)	(7.12)	(49.09)	(11.53)
208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경북 봉화군	경남 하동군	강원 양구군	전남 완도군
	(-19.38)	(11.08)	(54.69)	(7.08)	(48.52)	(11.43)
209	전남 함평군	경기 부천시	충남 청양군	경남 함양군	전남 해남군	충북 보은군
	(-19.5)	(10.94)	(54.48)	(7.05)	(48.5)	(11.37)
210	전남 진도군	대전 서구	경북 영덕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함양군	강원 인제군
	(-19.57)	(10.91)	(54.31)	(7.03)	(47.64)	(11.33)
211	경북 영덕군	충남 천안시	경남 함양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영양군	강원 철원군
	(-19.9)	(10.9)	(54.28)	(7.02)	(47.5)	(11.27)
212	전북 정읍시	충남 계룡시 (10.72)	전남 강진군	경북 예천군	인천 계양구	전남 고흥군
	(-19.92)	(10.72)	(54.23)	(6.82)	(47.36)	(11.23)
213	경북 군위군	경기 화성시 (10.25)	경북 영양군 (54.21)	충북 보은군	경북 의성군 (45.06)	충남 부여군
	(-20.1)	(10.25)	(54.21)	(6.8)	(45.96)	(11.03)
214	충남 서천군 (-20.22)	경남 김해시 (9.89)	경남 산청군 (54.03)	전남 함평군 (6.79)	서울 강 <del>북구</del> (45.73)	전북 순창군 (10.97)
		` ′	` ′	` ′		` ′
215	전남 영광군 (-20.25)	인천 연수구 (9.85)	전북 진안군 (53.97)	충남 청양군 (6.75)	서울 도 <del>봉구</del> (45.68)	전남 보성군 (10.57)
	(-20.23) 전남 곡성군	경남 거제시	전북 순창군	(6.73) 충북 괴산군	(45.08) 경남 남해군	(10.57) 경북 예천군
216	(-20.48)	(9.81)	(53.78)	(6.74)	(45.64)	경독 예신군 ( (10.57)
217	부산 중구	경기 수원시	전남 진도군	경북 영덕군	강원 철원군	경북 군위군
	수간 중구 (-20.77)	(9.81)	(53.77)	(6.73)	경면 설련군 (45.21)	(10.47)
218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북 군위군	경북 청도군	경남 합천군	경북 청송군
	선국 구인군 (-20.91)	(9.77)	(53.62)	(6.68)	(44.99)	(10.3)
219	충북 단양군	인천 서구	전북 임실군	경북 봉화군	서울 은평구	전남 장흥군
	(-21.37)	(9.29)	(53.45)	(6.58)	(44.69)	(10.23)
	()	(- :/	()	()	( ,,	( )

순위	인구변화	고령화율	경제인구비율	2039여성비율	인당주민세	재정자립도
220	전남 보성군 (-21.86)	경기 안산시 (9.25)	전남 함평군 (53.34)	경북 영양군 (6.48)	전남 보성군 (43.46)	경북 영양군 (10.17)
221	강원 정선군	광주 광산구	경북 예천군	경남 합천군	서울 중랑구	전남 곡성군
	(-21.86)	(9.14)	(53.06)	(6.47)	(42.73)	(10.17)
222	경북 예천군	경기 시흥시	전남 곡성군	경남 산청군	전남 구례군	경북 봉화군
	(-21.97)	(8.84)	(52.92)	(6.46)	(42.51)	(10.07)
223	부산 서구	대전 유성구	경남 의령군	경북 청송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24.22)	(8.71)	(52.87)	(6.35)	(42.05)	(10)
224	경북 의성군	울산 남구	경남 합천군	전남 신안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24.26)	(8.7)	(52.4)	(6.33)	(41.64)	(9.73)
225	전남 고흥군	경북 구미시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전남 완도군	전남 구례군
	(-26.37)	(8.62)	(52.33)	(6.3)	(39.27)	(9.6)
226	부산 <del>동구</del>	경기 오산시	경남 남해군	경북 군위군	전남 고흥군	전북 남원시
	(-26.55)	(8.35)	(51.6)	(6.08)	(35.85)	(9.57)
227	대구 서구	울산 동구	전남 보성군	전남 고흥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27.37)	(8.31)	(51.58)	(5.99)	(35.62)	(8.73)
228	부산 영도구	울산 북구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전남 신안군	전남 강진군
	(-28.68)	(7.47)	(49.83)	(5.89)	(31.98)	(8.53)